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인도 편 -

2017. 12.

---

연구총괄 신상화 부연구위원

연구자 김다량 관세사  
김미정 연구원

# 목 차

제1편 개관 .....	1
I. 일반 개황 .....	1
II. 경제 개황 .....	4
1. 주요 경제지표 .....	4
2. 對세계 수출입 동향 .....	6
3. 외국인투자 동향 .....	8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	12
1. 한-인도 수출입 동향 .....	12
2. 한-인도 CEPA .....	14
가. 개요 .....	14
나.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	14
다. 한-인도 CEPA 활용 추이 .....	15
IV.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18
제2편 통관제도 .....	21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 법령 .....	21
1. 통관행정 조직 .....	21
가. 통관행정 조직 개요 .....	21
나.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CBEC)의 조직 .....	25
다.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CBEC)의 기능 .....	28
라. 인도 세관공무원 관련 규정 .....	28

2. 통관 관계 법령 .....	30
<b>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b>	<b>31</b>
1. 개요 .....	31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32
가. 자진신고 및 납부 .....	32
나. 잠정 가격 신고 .....	33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	35
가. 추가관세(AD or CVD)와 특별추가관세(SAD) .....	36
나. 기타 세금 및 수수료 .....	37
다. 2017년 변경된 통합간접세 .....	37
<b>III. 관세평가제도 .....</b>	<b>41</b>
1. 개요 .....	41
2. 관세평가방법 .....	42
가. 일반적인 관세평가방법 .....	42
나. 세관의 관세가격 적용 .....	44
3. 특수 관계자간 거래 .....	45
가. 특수 관계의 정의 .....	45
나. 세관의 특수 관계자간 거래 조사 .....	46
<b>IV. 관세율 및 품목분류제도 .....</b>	<b>48</b>
1. 관세율제도 .....	48
가. 개요 .....	48
나. 관세율 분포 .....	49
다. 양허세율과 최종적용세율 .....	50
2. 품목분류제도 .....	54
가. 일반물품의 품목분류 .....	54
나. 특수한 물품의 품목분류 .....	56
다. 품목분류번호의 조회 .....	60

<b>V. 감면 및 환급</b> .....	<b>63</b>
1. 관세의 감면제도 .....	63
가. 개요 .....	63
나. 관세감세제도 .....	64
다. 관세면세제도 .....	65
라. 대외무역정책에 따른 관세지원제도 .....	70
2. 관세의 환급제도 .....	71
가. 관세의 환급 .....	72
나. 관세환급의 절차 .....	73
다. 관세환급의 이자 및 회수 .....	75
라. 관세환급의 제한 .....	77
<b>VI. 원산지제도</b> .....	<b>78</b>
1. 개요 .....	78
2. 특혜원산지제도 .....	79
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81
나. 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제도(GSTP) .....	83
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제도 .....	84
라. 한국-인도 CEPA 원산지제도 .....	86
3. 비특혜원산지제도 .....	92
4. 원산지 사후 검증 시스템 .....	94
<b>VII. 보세제도</b> .....	<b>96</b>
1. 개요 .....	96
2. 보세창고 제도 .....	97
가. 개요 .....	97
나. 영업용 보세창고 .....	97
다. 자가용 보세창고 .....	98
라. 보세창고의 장치 담보 .....	99
마.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	100
바. 기타 장치규정 .....	102

<b>VIII. 수입규제</b> .....	<b>105</b>
1. 개요 .....	105
가. 관세장벽 .....	106
나. 무역구제 .....	107
다. 비관세장벽 .....	112
라.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127
2.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	130
가. 개요 .....	130
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131
다. 對韓 덤핑방지조치 현황 .....	131
라. 한국산 농산물의 수입요건 .....	134
<b>IX.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구제제도</b> .....	<b>135</b>
1. 개요 .....	135
2. 사전심사제도 .....	136
가. 개요 .....	136
나. 신청자격 및 담당기관 .....	137
다. 신청서의 형식과 방식 .....	137
라. 신청서 접수 절차 .....	138
3. 사후구제제도 .....	140
가. 이의신청 .....	141
나. 심판청구 .....	144
다. 행정소송 .....	147
<b>X. 벌칙</b> .....	<b>149</b>
1. 개요 .....	149
2. 관세형벌의 종류 .....	151
가. 벌금형 .....	151
나. 몰수형 .....	154
다. 징역형 등 .....	158
3. 관세형벌의 집행 .....	161
가. 개요 .....	161

나. 관세형벌의 집행 .....	162
<b>XI. AEO 제도 .....</b>	<b>164</b>
1. 개요 .....	164
2. AEO 공인기준 및 등급 .....	165
가. 기본요건 .....	165
나. 공인기준 .....	166
다. 공인등급 .....	170
3. AEO 공인혜택 .....	171
가. 수출자와 수입자 .....	171
나. 그 외의 국제물류체인 종사자 .....	173
4. AEO 공인신청절차 .....	173
가. 공인신청 .....	174
나. 신청서 반환 또는 거절 .....	174
다. 신청서 처리과정 .....	175
라. 세관의 사전인증평가 .....	175
마. AEO 공인 획득 .....	177
5. AEO 공인 사후심사 .....	179
가. AEO 공인수준 유지 .....	179
나. AEO 공인 유효기간 .....	179
다. AEO 공인자격정지 .....	180
라. AEO 공인자격취소 및 이의제기 .....	180
6. AEO 상호인정협정(MRA) .....	181
<b>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b>	<b>183</b>
<b>I. 수입통관제도 .....</b>	<b>185</b>
1. 개요 .....	185
2. 수입신고절차 .....	187
가. 수입신고서 작성 .....	187
나. 자진신고(Self-assessment) .....	189
다. 물품검사 .....	191
라. 담보의 제공 .....	192

마. 관세납부 .....	193
바. 수입신고서 수정 .....	193
3. 위험관리시스템 .....	194
가. 개요 .....	194
나. 세부 내용 .....	195
<b>II. 수출통관제도 .....</b>	<b>198</b>
1. 개요 .....	198
2. 수출통관절차 .....	199
가. 수출신고절차 .....	199
나. 물품검사 .....	200
다. 컨테이너 적입 .....	202
라. 수출허용(Let Export) .....	203
마. 수출신고서 수정 .....	203
바. 환급신청 .....	204
3. 기타 수출통관제도 .....	205
가. 수출관세와 수출세 적용품목 .....	205
나. 최소수출가격 .....	206
 참고문헌 .....	 208
 부록 1. 인도 지역별 사업환경 순위 .....	 211
2. 관세면세 대상 의약품 .....	213
3. EPCG(APPENDIX-5A) .....	215
4. EPCG(APPENDIX-5B) .....	216
5. DFIA 신청서 양식 .....	217
6. 우편으로 수출된 물품의 관세환급 양식 .....	227
7.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목록 .....	228
8. 인도의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양식 .....	247
9. 인도의 수입금지 품목 .....	248
10. AEO 공인기준 중 안전(보안)기준 상세 .....	251

# 표 목차

## 제1편

〈표 1-Ⅱ-1〉 인도 주요 경제지표	5
〈표 1-Ⅱ-2〉 최근 5년간 인도의 對세계 수출입 추이	6
〈표 1-Ⅱ-3〉 2016년 인도의 수출입 상위 10개국 교역량	7
〈표 1-Ⅱ-4〉 인도의 FDI 규제완화 주요 내용	10
〈표 1-Ⅲ-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입 추이	13
〈표 1-Ⅲ-2〉 2016년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입 품목	13
〈표 1-Ⅲ-3〉 인도의 對한·중·일 실질 수입관세율 비교	16
〈표 1-Ⅲ-4〉 CEPA 수혜·비수혜 품목 對인도 수출(인도의 對한국 수입)	17
〈표 1-Ⅳ-1〉 인도의 주요 자유무역협정 현황(2017년 4월 기준)	19

## 제2편

〈표 2-Ⅰ-1〉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조직개편 내용	23
〈표 2-Ⅰ-2〉 관세 및 연방소비세 항소위원을 두고 있는 지역	24
〈표 2-Ⅰ-3〉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각 부서의 기능	26
〈표 2-Ⅱ-1〉 인도의 통합간접세 체계 개정 전·후 비교	38
〈표 2-Ⅱ-2〉 인도의 통합간접세(GST)가 부과되는 5가지 품목군	39
〈표 2-Ⅳ-1〉 2010~2011년과 2014~2015년의 인도의 관세율 구조	49
〈표 2-Ⅳ-2〉 2010~2011년과 2014~2015년 인도의 양허세율 비교	51
〈표 2-Ⅳ-3〉 2014~2015년 인도의 양허세율과 최종적용세율의 비교	53
〈표 2-Ⅳ-4〉 2016~2017년 인도의 98류 관세율	59
〈표 2-Ⅳ-5〉 인도의 스마트폰 수입 품목분류번호 조회	60

〈표 2-V-1〉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면세 대상 .....	66
〈표 2-V-2〉 공식관보에 의한 관세면세 대상 .....	69
〈표 2-V-3〉 관세환급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	74
〈표 2-VI-1〉 특혜원산지제도에 해당하는 개별 무역협정 .....	79
〈표 2-VI-2〉 對인도 GSP 공여국 현황 .....	82
〈표 2-VI-3〉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83
〈표 2-VI-4〉 GSTP 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84
〈표 2-VI-5〉 한-인도 CEPA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 .....	89
〈표 2-VI-6〉 한-인도 CEPA 원산지 불인정공정 .....	89
〈표 2-VI-7〉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입장 .....	91
〈표 2-VII-1〉 일반적인 보세창고 장치기간 .....	100
〈표 2-VII-2〉 예외적인 보세창고 장치기간 .....	101
〈표 2-VIII-1〉 반덤핑 조사 절차 .....	108
〈표 2-VIII-2〉 최근 10년간 인도의 반덤핑 조사 건수 .....	110
〈표 2-VIII-3〉 상계관세 조사 절차 .....	111
〈표 2-VIII-4〉 셰이프가드 조사 절차 .....	112
〈표 2-VIII-5〉 BIS 의무인증이 적용되는 품목 목록 .....	116
〈표 2-VIII-6〉 BIS 강제인증이 적용되는 전자제품 목록 .....	123
〈표 2-VIII-7〉 BIS 강제인증이 적용되는 특정품목 목록 .....	126
〈표 2-VIII-8〉 공식관보를 통한 수입금지 대상 .....	130
〈표 2-VIII-9〉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131
〈표 2-VIII-10〉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131
〈표 2-VIII-11〉 인도의 對韓 덤핑방지 조치 현황 .....	132
〈표 2-VIII-12〉 한국산 농산물의 수입요건 .....	134
〈표 2-X-1〉 「인도 관세법」상 관세형벌의 종류 .....	150
〈표 2-X-2〉 「인도 관세법」상 벌금형의 종류 .....	151
〈표 2-X-3〉 「인도 관세법」상 몰수형의 종류 .....	154
〈표 2-X-4〉 「인도 관세법」상 징역형·벌금형의 종류 .....	158

〈표 2-X-5〉 「인도 관세법」상 관세형벌의 집행 .....	161
〈표 2-XI-1〉 인도 AEO 공인기준 중 안전 및 보안기준 요약 .....	169
〈표 2-XI-2〉 인도 수출입자의 AEO 등급별 혜택 요약 .....	172

### 제3편

〈표 3-II-1〉 인도의 수출물품 검사 기준 .....	201
〈표 3-II-2〉 인도의 AEO 공인 수출자의 수출물품 검사 기준 .....	201
〈표 3-II-3〉 2014년 인도의 수출관세(duty) 적용품목 .....	206
〈표 3-II-4〉 2016~2017년 인도의 수출세(cess) 적용품목 .....	206
〈표 3-II-5〉 2014년 12월 기준 인도의 최소수출가격 및 적용대상 .....	207

# 그림 목차

## 제1편

[그림 1-I-1] 2011~2016년 연평균 공식환율(INR/USD) 추이 ..... 2

[그림 1-II-1] 인도의 FDI 유입추이 및 증가율 ..... 9

## 제2편

[그림 2-I-1] 2017년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조직도 ..... 22

[그림 2-IV-1] 2014~2015년 인도의 양허세율 분포도 ..... 50

[그림 2-IV-2] 인도 ICEGATE의 스마트폰 수입 품목분류번호 조회화면 ..... 61

[그림 2-IV-3] 우리나라 관세청의 스마트폰 품목분류번호 조회화면  
(인도수출) ..... 62

[그림 2-V-1] CBEC 웹사이트상의 공지(Notifications) 확인 화면 ..... 68

[그림 2-VI-1] 원산지증명서 사후 검증 시스템 ..... 95

[그림 2-VIII-1] 인도 반덤핑관세 제도 운용기관 현황 ..... 108

[그림 2-VIII-2] 인도의 채식주의자 및 비채식주의자 로고 ..... 114

[그림 2-VIII-3] BIS 인증에 따른 ISI 마크 ..... 114

[그림 2-IX-1] 인도의 사후구제제도 절차 ..... 140

[그림 2-XI-1] 인도 AEO 신청과정 요약 ..... 178

### 제3편

[그림 3- I -1] 인도의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	187
[그림 3- I -2] 인도의 위험관리시스템(RMS) 진행 과정 .....	195
[그림 3- I -3] 인도의 위험관리시스템에 따른 서류·현품심사 생략시 수입통관절차 .....	197



## 제1편 개관

### I. 일반 개황<sup>1)</sup>

- 정식 국가 명칭은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으로 남부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파키스탄 사이에 위치함
  - 국토 총면적은 328만 7,263km<sup>2</sup>로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에 달함
  - 7,000km의 해안선은 남서부는 아라비아해, 남동부는 벙골만과 접하고 있음
  - 지형은 갠지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남부의 고지대 평원, 서부의 사막 그리고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으로 구분됨
  - 기후는 남부 지역은 열대 몬순 기후, 북부 지역은 온대 기후와 고산 기후 등 다양한 기후를 보임
  
- 총인구는 2017년 7월 기준 약 12억 8,194만명으로 세계 2위 수준임
  - 인도의 민족은 북방계인 인도·아리아족(72%), 남방계인 드라비다족(25%), 기타 몽골로이드족(3%) 등으로 구성됨
  
- 행정구역은 29개의 주(州, State)와 7개의 연방 직할지(聯邦直轄地, Union Territory)로 구분되며, 수도는 북부에 위치한 뉴델리(New Delhi)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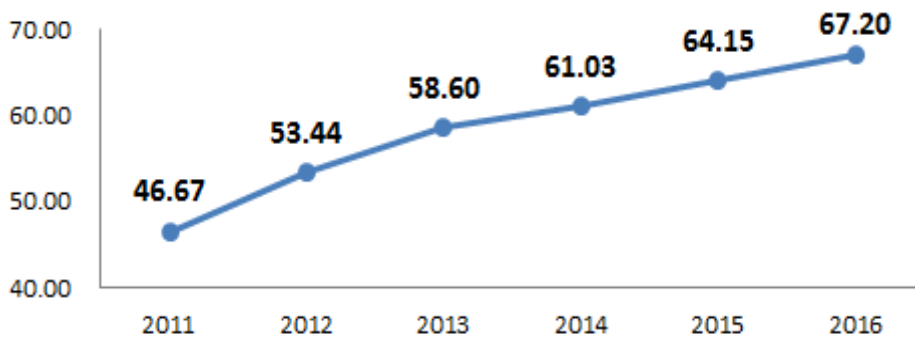
---

1)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n.html>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 12. 27.)

## 2 제1편 개관

- 1956년 제정된 주 재편성법(The States Reorganisation Act)에 따라 모든 주는 언어를 기준으로 구분됨
- 공용어는 영어와 힌두어 이외에도 21개의 지방 공용어가 있음
- 종교는 힌두교(79.8%), 이슬람교(14.2%), 기독교(2.3%), 시크교(1.7%), 기타(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화폐단위는 루피(Rupee, INR)이며, 2011~2016년 기간 중 연평균 공식환율(INR/USD) 추이는 [그림 1- I -1]과 같음<sup>2)</sup>
  - 2011년 46.67 INR/USD 수준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6년 67.20INR/USD 수준을 기록

[그림 1- I -1] 2011~2016년 연평균 공식환율(INR/USD) 추이



자료: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PA.NUS.FCRF>(검색일자: 2017. 12. 27.)

- 정치제도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음<sup>3)</sup>

2)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PA.NUS.FCRF>(검색일자: 2017. 12. 27.)

3)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http://ind.mofa.go.kr/korean/as/ind/policy/situation/index.jsp>(검색일자: 2017. 3. 29.)

- 연방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총리 및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로 구성됨
    -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상·하 양원 및 주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함
  - 각 주마다 주정부와 주 의회가 있으며,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Governor)는 5년의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함
    - 주행정의 실권은 주 지사가 주 의회 다수당 지도자 중에서 지명하는 주 총리(Chief Minister)가 장악함
  - 주 의회는 단원제 또는 양원제이며 주에 따라 정원을 달리함
    - 매 5년마다 주 의회 선거 실시
    - 잠무·카슈미르 주는 매 6년마다 선거 실시
- 인도 정부는 2014년 5월 모디 총리의 취임 이후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부정부패 및 블랙머니<sup>4)</sup> 근절을 위해 소득 자진신고 및 화폐개혁을 단행함<sup>5)</sup>
    - 2016년 11월 9일부터 500루피와 1,000루피 등의 고액권 지폐 사용을 금지함
  - 2017년 7월 1일부터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시행함<sup>6)</sup>
    - 통합간접세는 연방과 주별로 도입된 판매세와 소비세 그리고 상품이 다른 주로 넘어갈 때 부과되는 진입세 등 각종 부가세를 모두 통합한 간접세임
    - 품목군을 세율에 따라 5가지로 나누고 영세율, 5%, 12%, 18%, 28%의 세율을 차등 적용함
- 한편 인도 정부는 5년간의 무역정책 방향을 담은 대외무역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정안을 발표해 오고 있음<sup>7)</sup>
- 동 정책은 재화와 용역의 수출을 증진시키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 목표를 두고 있음<sup>8)</sup>

4) ‘블랙머니’는 그 소유자의 자산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소득세와 기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총칭함

5)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http://ind.mofa.go.kr/korean/as/ind/news/announcements/index.jsp>(검색일자: 2017. 3. 29.)

6)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 통합간접세(GST) 도입 이후 일부 품목 관세조정,” 2017. 7. 7.

7) 2004년(2004~2009), 2009년(2009~2014), 2015년(2015~2020) 총 3차례 발표

8) 인도 상무부, “Minister’s Speech(2015~2020),” p.1

## II. 경제 개황

### 1 주요 경제지표

---

- 인도의 경제규모는 2012년 명목 GDP 1조 8,276억달러에서 2017년 명목 GDP 2조 4,390억달러로 2012~2017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CAGR)<sup>9)</sup> 5.9%를 기록
  - 1인당 명목 GDP는 2017년 1,852.1달러로 2012~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
  - 경제성장률은 2015년 7.6%로 2012~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7년에는 6.7%를 기록
  -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12억 3,300만명에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3억명을 돌파함
  - 소비자물가 증감률은 2012년 10%로 2012~2017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7년에는 3.8%로 동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

---

9)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수년간의 성장률에 대하여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 성장률을 환산한 것

〈표 1-11-1〉 인도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sup>1)</sup>
명목 GDP(십억달러)	1,827.6	1,856.7	2,035.4	2,089.9	2,263.8	2,439.0
1인당 명목 GDP(달러)	1,481.6	1,485.6	1,607.4	1,629.0	1,741.7	1,852.1
경제성장률(%)	5.6	6.6	7.2	7.6	7.1	6.7
인구(백만명)	1,233.6	1,249.8	1,266.3	1,282.9	1,299.8	1,316.9
소비자물가 증감률(%)	10.0	9.4	5.8	4.9	4.5	3.8

주: 1) 추정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7(검색일자: 2017. 10. 20.)

- 2017년 IMF와 OECD 등의 국제금융기구에서는 인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 IMF에 따르면 인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 가운데 하나로 인도경제는 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인도를 세계경제의 ‘Bright Spot’이라고 평가함<sup>10)</sup>
  - OECD에 따르면 인도경제는 2014년 이후 연평균 7.5% 성장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임<sup>11)</sup>
    - 동 보고서에서는 2016/17년 7.0%, 2017/18년 7.3%, 2018/19년 7.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10) IMF, <http://www.imf.org/en/News/Articles/2017/02/21/NA022217-For-India-strong-growth-persists-despite-new-challenges>(검색일자: 2017. 3. 30.)

11) OECD, “OECD Economic Surveys: India 2017,” 2017. 2. 28., p.8

## ② 對세계 수출입 동향

- 2016년 인도의 對세계 수출은 2,666억달러, 수입은 3,566억달러로 총교역량은 6,232억달러에서 900억달러의 對세계 무역적자를 기록
  - 인도의 對세계 수출은 2015년 3,193억달러로 2012~2016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55.7% 증가한 2,659달러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인도의 對세계 수입은 2016년 3,566억달러로 2012~2016년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35.7% 증가한 5,075억달러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인도의 對세계 교역규모는 2014년 7,920억달러로 2012~2016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7,734억달러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인도의 對세계 무역수지는 2012년 -2,416억달러에서 이후 적자 폭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609억달러로 2012~2016년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

〈표 1-11-2〉 최근 5년간 인도의 對세계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2,659	55.7	3,094	16.4	3,181	2.8	3,193	0.4	2,666	-16.5
수입	5,075	35.7	4,414	-13.0	4,739	7.4	3,802	-19.8	3,566	-6.2
교역규모	7,734	42.0	7,508	-2.9	7,920	5.5	6,995	-11.7	6,232	-10.9
무역수지	-2,416	18.8	-1,320	-45.4	-1,559	18.1	-609	-60.9	-900	47.8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its/ItsWholeList.screen>(검색일자: 2017. 12. 4.)

〈표 1-11-3〉 2016년 인도의 수출입 상위 10개국 교역량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	순위	국가명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
1	미국	42,000 (4.1)	1	중국	60,468 (-1.7)
2	아랍에미리트 연방	30,690 (1.4)	2	미국	20,376 (-0.4)
3	중국	13,427 (-73.1)	3	아랍에미리트 연방	19,246 (-5.1)
4	홍콩	13,209 (8.7)	4	사우디아라비아	18,460 (-13.6)
5	영국	8,566 (-3.7)	5	스위스	14,851 (40.1)
6	싱가포르	7,389 (-5.0)	6	한국	12,212 (-6.6)
7	독일	7,177 (2.2)	7	인도네시아	12,184 (-12.1)
8	베트남	5,956 (12.4)	8	이라크	9,976 (-11.8)
9	벨기에	5,408 (-27.9)	9	호주	8,724 (-7.3)
10	방글라데시	5,233 (165.6)	10	홍콩	7,124 (19.5)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istat/its/ItsWholeList.screen>(검색일자: 2017. 12. 4.)

- 2016년 기준 인도의 최대 수출국은 420억달러 규모의 미국임
  - 미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연방, 중국, 홍콩, 영국 싱가포르, 독일, 베트남, 벨기에, 방글라데시 순임
- 또한 2016년 기준 인도의 최대 수입국은 604억 6,800만달러 규모의 중국임
  - 중국에 이어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한국, 인도네시아, 이라크, 호주, 홍콩 순임
  - 한편 122억 1,200만달러 규모의 우리나라는 인도의 제6위 수입국임

### 3 외국인투자 동향

---

- 2017년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인도경제가 양호한 것은 소비·내수 중심의 성장, 큰 폭의 FDI 증가, 정치·경제적 측면의 성장기반 강화 등에 기인<sup>12)</sup>
  - 소비·내수 중심 성장의 경우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고용 및 투자 증가 → 소득 증가 → 내수 증가 등의 선순환이 진행
  - FDI 유입 증가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FDI 유치 노력, 풍부한 인력 및 저임금 등을 바탕으로 FDI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제공
  - 성장기반 강화의 경우 특히 모디 정부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세제, 기업 환경 등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강화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2013년 -3.3%에서 2014년 30.6%, 2015년 36.6%, 2016년 18%의 증가율을 기록<sup>13)</sup>
  - [그림 1-Ⅱ-1]은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추이 및 증가율을 나타냄

---

12) 이재원·김태경, 「최근 인도경제의 호조 배경과 전망: 중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리뷰』, 제2017-7호, 한국은행, 2017. 2. 24., p.1 재인용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지속』, 2017. 5. 4., p.1 재인용

[그림 1-11-1] 인도의 FDI 유입추이 및 증가율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지속』, 2017., pp.1~3

□ 또한 FDI 유입 확대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존재함<sup>14)</sup>

- 인도 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FDI 지분 규제, FDI 정부 승인 요건, 건설부문 FDI 최소투자 기준, 단일소매업 현지 조달 규정 등을 완화함
- 또한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Invest India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 세제 개편, 기업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한 결과 국가경쟁력과 기업환경 순위가 상승함
  -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 2014/15 71위 → 2015/16 55위 → 2016/17 39위
  - 세계은행 기업환경 순위: 2015 134위 → 2016 131위 → 2017 130위

□ 2016년 6월 인도 정부는 항공, 방위산업 그리고 단일 소매업 등의 분야에 걸쳐 FDI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함<sup>15)</sup>

- 일부(Negative list)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승인이 가능
- 항공과 방위산업은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가 49%에서 100%로 확대됨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p.2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FDI 규제 완화 배경 및 평가』, 2016. 6. 30., p.1

- 단일 소매업은 인도 내 생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 하는 현지조달 규제를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도입

**〈표 1-II-4〉 인도의 FDI 규제완화 주요 내용**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방위	외국인투자제한도	49%(정부승인)	100%(49%까지 자동승인, 49% 이상 정부승인)
항공		49%(자동승인)	100%(49%까지 자동승인, 49% 이상 정부승인)
방송통신		100%(49%까지 자동승인, 49% 이상 정부승인)	100%(자동승인)
공항 (브라운필드)		100% (74%까지 자동승인, 74% 이상 정부승인)	100%(자동승인)
제약 (브라운필드)		100%(정부승인)	100%(74%까지 자동승인, 74% 이상 정부승인)
단일소매업		현지조달 규제 (외국인직접투자 51% 초과시 원료 및 제품의 30% 이상 인도 현지조달)	현지조달 규제 3년간 유예, 최첨단 기술의 경우 5년간 유예
기타		가공식품 거래, 민간경호업, 축산업, 지점 설립 등	

주: 제약 및 공항의 그린필드 FDI의 경우에는 현재 100% 자동승인으로 가능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FDI 규제 완화 배경 및 평가』, 2016. 6. 30., p.1

- 또한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25개의 중점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5개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 생명공학, 화학, 건설, 방산, 전자기기, 전기시스템, 식품가공, IT&BPM, 가죽, 미디어&오락, 광산, 석유 및 가스, 제약, 항구, 철도, 재생에너지, 도로, 우주, 섬유 및 의류, 화력발전, 관광, 웰빙
  - 상기 중점 분야별 소개, 관련 정책 등의 자세한 내용은 Make in India 웹사이트 (<http://www.makeinindia.com/>)에서 확인 가능함
- 한편 인도의 FDI 제도는 주(州, State)마다 법과 사업 환경 등에서 차별성을 지닌다는 특색이 있음<sup>16)</sup>

16)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 주정부별 투자유치 경쟁」, 2017. 7. 24.

- 또한 인도 정부는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인도 각 주의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순위<sup>17)</sup>를 매겨 주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순위는 각 주의 외국인투자 및 비즈니스 친화정책의 추진 노력도를 평가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음
  - 주요 순위 평가 기준은 각 주정부가 중앙정부가 제시한 사업개혁실행계획(Business Reform Action Plan)을 얼마나 성취하느냐에 따라 정해짐

---

17) 부록 I

###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 1 한-인도 수출입 동향

---

- 2016년 기준 인도는 우리나라의 제11위 교역대상국이며, 제8위 수출대상국임
  
- 2016년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은 116억달러, 수입은 42억달러로 양국 간 158억 달러의 교역규모에서 74억달러의 對인도 무역흑자를 기록
  - 수출은 2014년 128억달러로 2012~2016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120억달러를 기록
  - 수입은 2012년 69억달러로 2012~2016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9.6% 감소한 42억달러를 기록
  - 교역규모는 2012년 188억달러로 2012~2016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162억달러를 기록
  - 對인도 무역수지는 2012년 50억달러에서 흑자 폭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78억 달러로 2012~2016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

〈표 1-Ⅲ-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19	-5.8	114	-4.6	128	12.4	120	-5.9	116	-3.6
수입	69	-12.3	62	-10.7	53	-14.7	42	-19.6	42	-1.2
교역규모	188	9.6	176	-6.4	181	2.8	162	-10.5	158	-2.5
무역수지	50	-4.0	52	4.0	75	44.2	78	4.0	74	-5.1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에서 각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 5. 11.)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열연강판, 윤활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또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입은 나프타, 알루미늄괴(塊) 및 스크랩, 기타 정밀 화학원료, 합금철, 박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표 1-Ⅲ-2〉 2016년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자동차부품	953	0.7	나프타	972	9.1
합성수지	901	-0.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501	0.9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646	58.6	기타 정밀화학원료	212	3.8
열연강판	469	-0.7	합금철	178	7.3
윤활유	439	0.5	박류	128	-1.4
무선통신기기부품	397	-1.9	의약품	110	3
기타 석유화학제품	376	0.3	면사	110	0.4
아연괴 및 스크랩	353	8.2	아연괴 및 스크랩	98	4.6
집적회로반도체	344	-6.1	자동제어기	78	-0.6
아연도강판	294	2	순면작물	77	-0.8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에서 각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 5. 25.)

## 2 한-인도 CEPA

### 가. 개요

- 우리나라와 인도는 2010년 1월 1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인도 CEPA’)을 발효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인도 CEPA를 통해 신흥거대경제권과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함<sup>18)</sup>
- 한-인도 CEPA 협정문은 서문, 15개 장의 본문 그리고 관련 부속서와 교환 각서 등으로 구성됨<sup>19)</sup>
  - 서문은 협정체결의 기본 정신과 상호 공동의 인식 등을 담고 있음
  - 본문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각 장의 부속서는 양국의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양허, 투자유보 목록, 예외사항 등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담고 있음

### 나.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 2017년 9월 3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상호 시장접근 개선과 교역장벽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sup>20)</sup>
  - 한편 동 협상에서 우리나라 측은 인도가 우리나라의 교역국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냄
  - 그러나 인도 측에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WTO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인도 정부의 재량권이 크지 않음을 설명함

18)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in/>(검색일자: 2017. 5. 28.)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인도 CEPA 이행상황 평가 최종보고서」, 2015. 12., p.13

2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합의 관세철폐 확대 및 원산지기준 완화 적극 추진」, 2017. 9. 23.

-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sup>21)</sup>
  - 對인도 교역 확대를 위한 인도시장 추가개방
    - 인도 측의 양허수준은 약 85%(품목수 기준, 일부감축 포함)로 여타 FTA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여지가 많음<sup>22)</sup>
  -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 애로 해소
    - 엄격한 원산지기준(결합기준)<sup>23)</sup>이 적용되는 품목비중이 74%<sup>24)</sup>에 달해 중소기업의 동 기준 충족과 증명서 발급에 있어 중소기업들의 부담 가중
  - 일-인도 CEPA(2011년 8월 발효)로 인한 경쟁심화
    - 한-인도 CEPA보다 뒤늦게 발효된 일-인도 CEPA의 對일 양허수준이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아<sup>25)</sup> 인도 시장 내 경쟁 격화

#### 다. 한-인도 CEPA 활용 추이<sup>26)</sup>

- 2016년 인도의 對한국 실질 수입관세율은 3.3%로 일본의 3.8%, CEPA 미체결국인 중국의 7.3%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인도의 對한국 실질 수입관세율은 2009년 9.9%에서 2010년 1월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2016년 3.3%로 인하됨
  - 일본의 경우 2009년 11.8%에서 2011년 8월 일-인도 CEPA 체결 이후 2016년 3.8%로 인하됨
  - 중국의 경우 2009년 10.2%에서 2016년 7.3%로 인하되었으나 한국과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임

2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22) 타 FTA 상품양허 수준(품목수): 미/EU/호주/페루 100%, 캐나다 98%, 터키 91%

23) 결합기준: 역내부가가치(RVC) 기준과 세번변경 기준 동시충족

24) 여타 FTA 결합기준 품목 비중: 한-미(1.4%), 한-EU(3.6%), 한-페루(0%)

25) 인도의 10년내 관세철폐 비율(품목수): 對한국 71.5%, 對일본 86.4%

26) 한국무역협회(2016), pp.6~7

〈표 1-III-3〉 인도의 對한·중·일 실질 수입관세율 비교

(단위: 개, 억달러, %)

구분	한국		일본		중국	
	2009	2016	2009	2016	2009	2016
실제 수입품목수	3,284	3,397	3,734	4,027	6,686	7,125
-무관세품목	(103)	(438)	(120)	(503)	(157)	(176)
-관세품목	(3,181)	(2,959)	(3,614)	(3,524)	(6,529)	(6,949)
실제 수입액	73	131	59	96	250	615
-무관세품목	(1)	(46)	(3)	(23)	(28)	(162)
-관세품목	(72)	(85)	(56)	(73)	(221)	(454)
실제 수입품목 평균관세율	11.8	6.8	12.4	6.3	12.5	11.1
실질 관세율	9.9	3.3	11	3.8	10.2	7.3

주: 1. 실제 수입품목수 및 수입액은 2015년 기준

2. 2009년 평균관세율의 한-인도 CEPA 기준세율, 2016년 평균관세율은 한국 2016. 1. 1, 일본 2016. 4. 1. 관세율을 기준

3. 실질관세율은 품목별 관세율을 수입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 2016. 10., p.6

-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후 2010~2015년 기간 중 수혜품목의 對인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8.6%로 비수혜품목의 성장률 6.8%를 1.8% 상회함
  - 수혜품목의 수출은 2010년(1년차) 67억달러에서 2012년(3년차) 138억달러로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6년차)에는 95억달러로 감소
  -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2010년(1년차) 29억달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3년차) 38억달러로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6년차)에는 36억달러로 감소

〈표 1-Ⅲ-4〉 CEPA 수혜·비수혜 품목 對인도 수출(인도의 對한국 수입)

(단위: 억달러, %)

구분	2010년 (1년차)	2011년 (2년차)	2012년 (3년차)	2013년 (4년차)	2014년 (5년차)	2015년(6년차)		2010~ 2015 성장률
						수출액	비중	
수혜	67(16.6)	94(40.0)	138(45.5)	94(-31.6)	112(18.8)	95(-14.8)	72.8	8.6
비수혜	29(18.4)	31(8.9)	38(21.8)	31(-17.5)	35(12.7)	36(1.4)	27.2	6.8
전체	96(17.1)	126(30.8)	175(39.7)	125(-28.6)	147(17.3)	131(-10.9)	100.0	8.1

주: 1. 수혜품목: CEP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별로 인하되는 품목

비수혜품목: 기존 무관세(0%) 품목, 양허제외 품목, 기타 품목

2.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 2016. 10., p.7

## IV.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인도는 2000년대 들어 다양한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을 추진하고 있음<sup>27)</sup>
  - 인도 정부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sup>28)</sup>을 유지하며, 5개년 대외무역정책 (Foreign Trade Policy 2015-2020)과 FTA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
  - 그 결과 스리랑카 등의 남아시아 주변국 및 아세안 등의 지역협력체와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까지 FTA 체결을 확대함
  
- 인도가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①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인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② 인도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앞선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구분됨<sup>29)</sup>
  - ①의 경우 스리랑카, SAFTA, BIMSTEC 등이며, ②의 경우 투자유치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 또는 상대국을 통한 우회 수입을 배제하는 노력도 강화하는 유형으로 싱가포르 등임

---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2014, pp.44~45

28) 1991년 라오(Rao) 전 총리가 본격 추진하였으며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남아 및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진출 확대와 영향력을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

29) 외교부, 『인도개황』, 2015. 5., p.103

- 또한 인도는 일부 국가들과는 FTA를 바로 체결하기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특혜관세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후, 이를 점차 FTA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2단계 접근도 시도하고 있음<sup>30)</sup>
- <표 1-IV-1>은 2017년 4월 기준 WTO에 따른 인도의 주요 자유무역협정 현황을 정리한 것임
  - 8개의 주요 기체결 협정은 인도-스리랑카 FTA, 인도-싱가포르 CECA, 인도-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인도-부탄 FTA, 인도-ASEAN FTA, 인도-한국 CEPA, 인도-일본 CEPA, 인도-말레이시아 CECA 등임
  - 4개 주요 협상 중인 협정은 인도-BIMSTEC FTA, 인도-EFTA FTA, 인도-EU FTA, 인도-SACU FTA 등임

**<표 1-IV-1> 인도의 주요 자유무역협정 현황(2017년 4월 기준)**

기체결 협정(발효)	협상중
인도-스리랑카 FTA (2001.12)(상품분야)	인도-BIMSTEC <sup>2)</sup> FTA 인도-EFTA <sup>3)</sup> FTA 인도-EU FTA 인도-SACU <sup>4)</sup> FTA
인도-싱가포르 CECA (2005.8.) (2008.2.)(개정)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up>1)</sup> (2006.1.)(상품협정) (2011.8.)(아프가니스탄 가입)	
인도-부탄 FTA (2006.7)(상품협정)	
인도-ASEAN FTA (2010.1.)(상품협정) (2015.7.)(서비스·투자협정)	
인도-한국 CEPA (2010.1.)	
인도-일본 CEPA (2011.8.)	
인도-말레이시아 CECA (2011.7.)	

주: 1)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8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들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임

2)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 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부탄, 네팔 등 7개국으로 구성

3)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서유럽 국가 중 유럽연합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

4) SACU(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등 5개국으로 구성

자료: WTO, <http://rtais.wto.org/UI/PublicSearchByMemberResult.aspx?MemberCode=392&lang=1&redirect=1>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 4. 10.)

30) 외교부(2015), p.103

- 한편 인도의 자유무역협정은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포괄적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CECA)은 금융, 서비스, 투자 및 인적 교류 등 폭넓은 경제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용어임
    - 인도-싱가포르 CECA, 인도-말레이시아 CECA 등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의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형태임
    - 인도-한국 CEPA, 인도-일본 CEPA 등

## 제2편 통관제도

###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 법령

#### 1 통관행정 조직

---

##### 가. 통관행정 조직 개요

###### 1)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 인도의 통관행정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은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이하 ‘CBEC’)임<sup>31)</sup>
  - CBEC는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세수국(Department of Revenue)에 속하며, 통관행정을 총괄하는 독립된 행정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세수국은 관세, 연방소비세 및 서비스세 부과와 징수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CBEC는 세수국의 영향권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
  - CBEC의 주요 업무는 관세 및 소비세의 부과와 징수, 마약 및 밀수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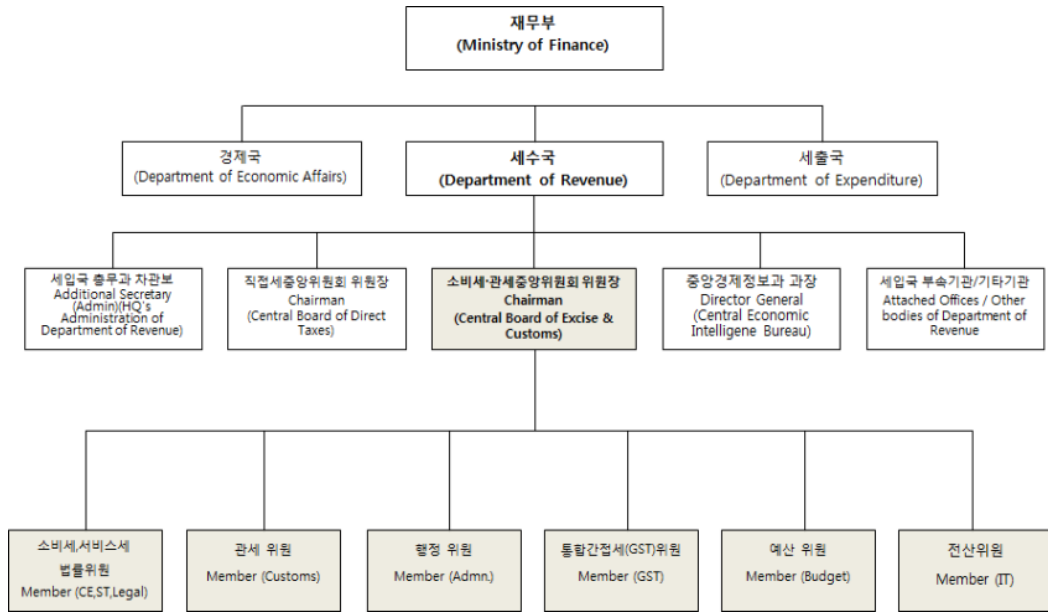
---

31) 인도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htdocs-cbec/whoweare/whoweare>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 4. 10.)

22 제2편 통관제도

- 한편 인도의 통관행정 조직은 CBEC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물품의 소비세, 기타 간접세의 부과와 징수까지도 담당한다는 특색을 지님

[그림 2- I -1] 2017년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조직도



자료: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htdocs-cbec/whoware/whoware>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 4. 12.)

- <표 2- I -1>은 2017년 4월 기준 CBEC의 조직개편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주요 변화 내용은 2016년 4인의 위원(Member)에서 2017년 6인의 위원으로 위원 수가 확대, 개편된 것을 꼽을 수 있음
    - 개편 전 연방소비세,서비스세·IT위원은 개편 후 소비세, 서비스세 법률위원과 전산위원 2인으로 변경됨
    - 관세 관련 위원은 개편 전 관세·법률위원에서 개편 후 관세위원으로 변경됨

〈표 2-1-1〉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조직개편 내용

개편 전 (2016년)		개편 후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위원(Member Administration)</li> <li>- 통합간접세(GST)위원(Member Budget &amp; GST)</li> <li>- 관세·법률위원(Member Customs &amp; Legal)</li> <li>- 연방소비세, 서비스세·IT위원(Member Central Excise, ServiceTax and I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세, 서비스세 법률위원(Member CE, ST, Legal)</li> <li>- 관세위원(Member Customs)</li> <li>- 행정위원(Member Admn.)</li> <li>- 통합간접세(GST)위원(Member GST)</li> <li>- 예산위원(Member Budget)</li> <li>- 전산위원(Member IT)</li> </ul>

자료: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htdocs-cbec/whoware/whoware>  
 (검색일자: 2017. 4. 14.)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인도의 세관

- 인도의 주요 4대 세관은 ① 뭄바이(Mumbai) ② 첸나이(Chennai) ③ 캘커타(Calcutta) ④ 코친(Cochin) 등임<sup>32)</sup>
- 인도 세관은 인도 전역 20개 지역에 관세 및 연방소비세 항소위원을 두고 있음
  - 국제공항 및 세관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지역에는 20명의 세관위원(Customs Commissionerates)을, 대도시 및 산업상 중요한 지역에는 25명의 항소위원(Appellate Commissionerates)을 두고 있음

32) 인도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htdocs-cbec/whoware/fns-subord-offices>  
 -1(검색일자: 2017. 9. 7.)

〈표 2-1-2〉 관세 및 연방소비세 항소위원을 두고 있는 지역

지역	관세(Customs)/연방소비세(Central Excise)
아메다바드(Ahmedabad)	Customs/Central Excise
뭄바이(Mumbai)	Central Excise
뭄바이(Mumbai)	Customs
뿌네(Pune)	Customs/Central Excise
방갈로르(Bangalore)	Customs/Central Excise
코친(Cochin)	Customs/Central Excise
첸나이(Chennai)	Central Excise
첸나이(Chennai)	Customs
트리치(Trichy)	Customs/Central Excise
하이데라바드(Hyderabad)	Customs/Central Excise
캘커타(Calcutta)	Customs
캘커타(Calcutta)	Central Excise
구와하티(Guwahati)	Customs/Central Excise
미루뜨(Meerut)	Customs/Central Excise
알라하바드(Allahabad)	Customs/Central Excise
찬디가르(Chandigarh)	Customs/Central Excise
인도르(Indore)	Customs/Central Excise
델리(Delhi)	Central Excise
델리(Delhi)	Customs
바도다라(Vadodara)	Customs/Central Excise

자료: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htdocs-cbec/whoweare/statewise-comm-r-1st>(검색일자: 2017. 9. 8.)

- 인도 세관은 통관절차의 합리화와 현대화를 목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sup>33)</sup>
  - 한편 인도는 WTO의 일원으로서 개정교토협약, HS, GATT의 기본원칙에 따른 다양한 국제 관세 협약 및 절차를 채택한 바 있음

33)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Customs Manual 2015,” p.1

## 나.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CBEC)의 조직

- CBEC의 하부조직은 세관(Custom Houses), 연방소비세 및 서비스세 위원회(Central Excise and Service Tax Commissionerates), 연방세입관리분석실(the Central Revenues Control Laboratory) 등이 있음<sup>34)</sup>
- 2017년 4월 기준 CBEC는 다음의 14개 부서로 구성됨<sup>35)</sup>
  - 관세·소비세·마약조사 국립학회(National Academy of Customs, Excise & Narcotics)
  - 검사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nspection)
  - 국세 정보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Revenue Intelligence)
  - 탈세 방지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Anti-Evasion)
  - 감시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Vigilance)
  - 서비스세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ervice Tax)
  - 연방세입관리 연구소(Central Revenues Control Laboratory)
  - 조직·관리 부서(Directorate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 통계·정보 부서(Directorate of Statistics and Intelligence)
  - 예방 운영 부서(Directorate of Preventive Operations)
  - 공공부문·홍보 부서(Directorate of Publicity and Public Relations)
  - 평가 부서(Directorate of Valuation)
  - 시스템 부서(Directorate of Systems)
  - 심사 부서(Directorate General of Audit)
- <표 2- I -3>은 CBEC의 각 부서의 기능을 정리한 것임

34) 인도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htdocs-cbec/whoweare/whoweare>(검색일자: 2017. 4. 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35) 인도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htdocs-cbec/whoweare/subord-offices>(검색일자: 2017. 4. 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1-3〉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각 부서의 기능

관련 부서	기능
검사 및 심사, 관세 및 소비세 총국 (Directorate General of Inspection and Audit, Customs and Central Exc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전역의 세관, 중앙소비세 및 마약부서 기체의 작업을 연구</li> <li>• 검사 및 심사를 통해 중요한 결함의 수정을 위한 조치를 제안</li> <li>• 중앙소비세, 세관, 마약 관련 부서와 관련된 기술 및 행정 문제에 대해 재무부와 CBEC에 자문을 제공하는 1차 중앙 기관의 역할 수행</li> </ul>
국제 정보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Revenue Intellig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수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등</li> <li>• 국내외 정보기관 및 집행기관과의 연계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li> <li>• 밀수 관련 현안 평가 및 자문</li> </ul>
탈세 방지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Anti-Eva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소비세의 탈세 관련 정보 수집, 대조 및 보급, 가격 구조의 연구, 중앙소비세 회피에 취약한 물품의 마케팅 패턴 및 품목분류, 소득세 등 기관과의 협조 등</li> <li>• 내부 직원이 연루된 중앙소비세 탈세 사건 조사 집행 및 탈세정보와 적절한 조처에 대한 자문 제공</li> </ul>
관세세·소비세·마약 국립학회 (National Academy of Customs, Excise and Narco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고용을 위한 훈련 제공 및 부처 공무원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 준비</li> <li>• CBEC에서 승인한 훈련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직접 고용목적 훈련과 부처 공무원들을 위한 연구 계획안 작성</li> <li>• UNDP 주변국의 관세 및 소비세 공무원 견학 준비</li> </ul>
조직 및 관리 서비스 관세 및 중앙소비세국(Directorate of Organisation and Management Services Customs and Central Exc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중앙소비세 및 마약부서에 대한 인력 계획을 포함한 관리 서비스 등</li> <li>• 방법 연구, 작업 측정 및 직원 배치와 관련된 기능을 검토</li> </ul>
통계·정보 부서(Directorate of Statistics & Intellig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세 수익 실현 관련 통계 자료 수집, 예산 추계를 예측하기 위해 내각과 CEBC에 자문 제공 등</li> <li>• 간접세에 관한 수입, 체납, 압류, 법원 판결 등에 관한 통계 공보 및 통계 연보 작성을 위한 통계 수집</li> </ul>
예방 운영 부서(Directorate of Preventive Ope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수 지역에 배치된 직원의 효율성 조사 및 평가</li> <li>• 판결, 기소 및 신고자·공무원에 대한 보상의 과정 평가, 몰수품의 폐기 과정 감시</li> <li>• 반밀수 업무에 필요한 직원 훈련, 장비, 차량선박, 토신 또는 기타 자원의 필요성을 계획 및 평가</li> <li>• 조달, 구매, 수리 및 재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li> </ul>

〈표 2-1-3〉의 계속

관련 부서	기능
공공 홍보 부서(Directorate of Publicity and Public Re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및 부서별 매뉴얼의 개정 및 출판</li> <li>• 관세 및 연방소비세의 기술 및 행정 문제에 대한 CBEC의 발급 지침의 통합</li> <li>• 간접세 관련 문제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 집계</li> <li>• 수정 목록 등을 통한 모든 부서별 매뉴얼 업데이트</li> <li>• 브로슈어, 포스터, 라디오, TV 및 언론 매체를 통해 간접세에 대한 대중 교육 목적의 홍보 활동</li> </ul>
연방 세입관리 연구소(Central Revenues Control Labora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샘플 분석, CBEC에 각종 물품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li> </ul>
시스템 부서(Directorate of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W 구비, S/W 개발 및 유지 등을 포함한 관세 및 연방소비세 전산화 프로젝트의 모든 사항</li> </ul>
평가 부서(Directorate of 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 관련 위원회의 지원 및 자문, 관세평가에 근거한 WTO협정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li> <li>• 과거 전례를 통해 국제 거래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DB 구축, 공시 가격정보 또는 공식 출처로부터 얻은 가격정보를 모든 세관에 공지,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평가 지원 등</li> <li>• 세관의 다양한 평가 관행을 모니터링, 주요 가격 패턴을 위원회에 공지, 시정 정책 또는 기타 조치 제안</li> <li>• 해외에 파견된 다른 관세청 및 세관 공무원과의 연락 유지</li> <li>• 다국적기업에 대해 민감한 상품의 국제 가격 동향 연구 (ex: 이전 가격), 위조 및 저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지원</li> </ul>
감시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Vigil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및 연방소비세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감시</li> <li>• 연방수사국, 지방 자치 단체 정보국장 경계 감시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패방지 프로그램이 모든 CBEC 내 부서에 실행되도록 보장</li> </ul>
서비스세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ervice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세의 징수 및 평가 모니터링</li> <li>• 실무현장에서의 서비스세 이행 연구, 세입징수 향상 방법 제안</li> <li>• 법과 절차에 관한 연구 수행</li> <li>• DB 구축</li> <li>• 이사회 내 서비스세 시찰 등</li> </ul>

자료: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htdocs-cbec/whoweare/fns-subord-offices-1>(검색일자: 2017. 9. 11.)

## 다.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CBEC)의 기능

### □ CBEC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sup>36)</sup>

- 관세, 연방소비세 및 서비스세의 부과와 징수
  - 「인도 관세법」(1962) 및 「인도 관세율법」(1975)에 따른 수출입에 대한 관세 징수
- 소비세 대상 물품 제조업자와 서비스 공급업자의 등록과 모니터링
- 신고서와 반송품의 수령 및 철저한 검토
- 밀수의 방지와 관세 및 서비스세의 탈세 대응
- 물품과 운송용구(conveyances)에 대한 국경 통제의 집행
- 수입품과 수출품의 평가, 검사, 통관
- 수출장려책의 이행
- 국제 여행자와 휴대품의 통관수속
-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조치를 통한 분쟁의 해결
- 환불, 관세환급 등의 허가
- 체납 세입의 실현
- 납세의 준수(tax compliance)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 심사

## 라. 인도 세관공무원 관련 규정

### □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세법에서 세관공무원 규정을 두고 있음

- 「인도 관세법」상 제2장 「세관공무원」에 규정되어 있음

### □ 인도 세관공무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음<sup>37)</sup>

- 관세청장(Chief Commissioners of Customs)
- 관세차장(Commissioners of Customs)
- 관세차장(민원)[(Commissioners of Customs(Appeals)]
- 합동 관세국장(Joint Commissioners of Customs)
- 관세부국장(Deputy Commissioners of Customs)

---

36) 인도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htdocs-cbec/whoweare/workallotment>  
(검색일자: 2017. 4. 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37) 「인도 관세법」 제3조

- 관세국장 보좌관 또는 관세부국장(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or Deputy Commissioner of Customs)
  - 관세법의 목적상 임명될 수 있는 기타 등급의 공무원
-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CBEC)는 세관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음<sup>38)</sup>
- 관세청장이나 관세차장, 합동 관세국장 또는 관세국장 보좌관, 관세부국장으로 하여금 관세국장 보좌관 이하의 지위를 가진 세관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세관공무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음<sup>39)</sup>
-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CBEC)에서 부여하는 조건과 제한사항에 지배를 받으며, 관세법에 따라 수여되거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기타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CBEC)의 역할 또는 세관공무원의 기능을 위탁할 수 있음<sup>40)</sup>
- 중앙정부는 공식관보상의 고지를 통하여 기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기능을 중앙정부나 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한편 세관공무원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음<sup>41)</sup>
- CBEC는 품목분류, 관세,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기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지, 제한 또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절차에 관련되는 명령, 지침 및 지시사항을 세관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해당 세관공무원 등은 해당 명령, 지침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 다만 상기 해당 명령, 지침 및 지시사항은 다음의 경우 교부될 수 없음
    - 해당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평가를 진행하거나 특정 사건을 특정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또한 관세차장(Commissioner of Customs)(항소)의 기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의 지시사항을 방해하는 경우

38) 「인도 관세법」 제4조

39) 「인도 관세법」 제5조

40) 「인도 관세법」 제6조

41) 「인도 관세법」 제151A조

## 2 통관 관계 법령

---

- 인도의 통관행정에 관한 주요 법령은 「관세법 1962」와 「관세율표법 1975」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여 관세율표법에 따른 세율로 과세됨
- 관세법은 기본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관세 일반에 대해 규정함
  - 불법 수입과 물품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1962년 제정됨
- 관세율표법은 기본관세 이외의 추가 관세 등에 대해 규정함

##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 1 개요

---

- 인도는 2011년도부터 관세 확정방식을 세관의 부과고지 방식에서 수입자의 자진 신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함
  - 인도는 자진신고 납부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관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50조를 개정하였고 세관신고서(Bill of Entry)와 운송증권(Shipping Bill) 규정을 신설함<sup>42)</sup>
  
- 인도의 자진신고 납부제도는 원칙적인 관세 확정방식으로서 수입자가 스스로 수입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평가 후 납부할 관세를 확정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총 절차를 의미함
  - 예외적인 관세 확정방식으로 수입자가 자진신고를 할 능력이 되지 않아 세관에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잠정 가격을 평가할 수 있음

---

42) WTO, *Trade Policy Review-India*, WT/TPR/S/313, 2015, 4, 28., p.35

- 수입물품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추가관세, 특별추가관세, 교육세 및 착륙료 등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며, 이 중 추가관세와 특별추가관세는 2017년 인도의 부가가치세(GST) 개혁에 따라 연방정부 통합부가가치세(Integrated GST: I-GST)로 편입됨

##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가. 자진신고 및 납부<sup>43)</sup>

- 수입자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물품에 부과할 관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수입자는 정확한 관세평가를 위해 수입신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과 가격 신고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함<sup>44)</sup>
- 담당 세관직원은 수입물품에 대한 자진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물품의 일부를 검사하거나 시험목적으로 샘플을 취득할 수 있음
  - 세관직원은 자진 신고사항의 검증을 위해 수입자 및 대리인에게 물품 계약서, 관세사의 기재사항, 보험증권, 물품 카달로그 또는 관련된 기타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직원이 물품의 검증, 현품검사 등의 방법에 따라 자진 신고사항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진신고는 부인되고 물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재평가(re-assess)할 수 있음
  - 세관의 물품 재평가 구두명령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일 또는 운송증권상 수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함

43) CBEC,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Customs Manual 2015*, [http://www.cbec.gov.in/resources//htdocs-cbec/deptt\\_offcr/cs-manual2015.pdf](http://www.cbec.gov.in/resources//htdocs-cbec/deptt_offcr/cs-manual2015.pdf); jsessionid=1FA6FCA75F9DEEE6300AB3A0614F3954, pp. 44~48 참고하여 작성(검색일자: 2017. 3. 30.)

44) CBEC(2015), p.44

- 세관직원은 재평가 대상이 아닌 물품의 관세평가를 세관직원의 편의에 따라 세관 또는 수입자의 작업장(premise)에서 심사할 수 있음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관세평가는 다음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시행중인 관세율과 관세평가 방법으로 함<sup>45)</sup>
  - 국내소비를 위해 반입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날짜
  - 보세창고에서 통관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날짜
  - 기타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납부일
  -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일 전에 수입신고서가 미리 제출되었더라도 수입신고서는 해당 입항일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입항일
- 관세 환율은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함
- 실제 납부할 관세보다 과다 납부한 수입자는 초과 납부한 관세 및 해당 관세금액에서 발생한 초과이자 환급을 경정 청구할 수 있음<sup>46)</sup>
  - 경정청구의 사유로는 수입신고 정보의 부정확성, 잘못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 수입물품의 과부족, 부적절한 운송료 산출 및 세관직원의 부정확한 평가 등이 있음

#### 나. 잠정 가격 신고<sup>47)</sup>

- 수입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세관이 과세가격에 의문을 갖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세관에 요청하여 또는 세관 자체적으로 수입물품 가격을 잠정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잠정 가격 신고제도라 함
- 세관의 잠정 가격 신고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거래는 다음과 같음<sup>48)</sup>
  - 수입자가 자진 신고납부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세관직원에게 부과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45) 「인도 관세법」 제15조

46) CBEC(2015), p.99

47) CBEC(2015), p.48

48) 「인도 관세법」 제18조

-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에 대해 화학적 또는 기타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수입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출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세관직원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수입자 자진신고시 필요한 문서 또는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세관직원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물품의 잠정 가격 신고를 요청받은 세관직원은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진행함
    - 만약 잠정 가격을 신고할 만한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여 잠정 가격 신고가 정지된 경우 수입자는 1개월 또는 세관직원이 연장한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함
- 
- 잠정관세를 산정한 세관직원은 해당 수입자에게 확정관세와 납부할 잠정관세의 차액만큼 담보를 요구하여야 함
    - 담보금액은 잠정 관세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관직원의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 수입자는 확정관세 또는 재평가한 관세와 잠정관세 사이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 부족액과 부족액 미납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함
    - 이자의 계산은 잠정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족세액의 납부일 까지 기간에 대해 인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함
- 
- 세관직원은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가 확정되거나 세관직원으로부터 재평가가 확정되는 경우 잠정관세와 확정관세와의 차액을 조정해야 함
    - 국내소비를 위해 수입된 물품의 경우 납부한 잠정관세가 확정관세보다 적거나 확정관세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자는 부족세액을 납부하거나 과다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보세창고 장치물품에 대해 납부한 잠정관세가 확정관세보다 적은 경우 세관직원은 수입자에게 초과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 확정관세가 잠정관세보다 작은 경우 세관은 확정관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자에게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야 함

- 만약 기간 내 과다세액의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세관은 3개월이 지난 일자로부터 환급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수입자에게 지급해야 함
- 잠정 가격 신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함
  -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이뤄지는 기계 및 부품 등 또는 대규모 수입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입 등의 경우에도 최종 수입물품을 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잠정 가격 신고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해야 함

###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 추가관세(Additional or countervailing duty: AD or CVD), 특별추가관세 (Special additional duty: SAD), 교육세(Education cess) 및 착륙료(landing charge)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됨<sup>49)</sup>
  - 추가관세(AD)는 2015년 3월 1일 기준 12.5%가 부과됨
    - 단, 석유제품에 대한 종량세 또는 혼합세 적용 시 추가관세의 세율구간은 6~30%임
  - 특별추가관세(SAD)는 4%가 부과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추가관세와 교육세가 산정되며 특별추가관세는 이들을 모두 더한 최종 금액에서 산정됨
- 2017년 인도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별도로 부과하고 있던 각종 간접세를 단일 간접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체제로 통합하였음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추가관세(AD)와 특별추가관세(SAD)는 통합간접세(I-GST)로 편입됨
- 본장에서는 기존의 관세 추가세금의 체계와 신설된 통합간접세제(GST)상 관세의 추가세금을 살펴보도록 함

49) WTO(2015), p.39

### 가. 추가관세(AD or CVD)와 특별추가관세(SAD)<sup>50)</sup>

- 추가관세(Additional duty for customs or countervailing duty: AD or CVD)는 와인·주류·음료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수입물품과 유사한 국내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duty)적 성격으로 부과됨
  - 추가관세는 소비세의 부과목적과 부과방법을 그대로 수입물품에 적용하여 산정됨<sup>51)</sup>
    - 인도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국내 소비세를 대신하여 수입물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함
    - 소비세율이 인도의 국내물품의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된다면 추가관세 역시 수입물품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되어야 함
  - 추가관세는 기본관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2015년 기준 인도의 추가관세는 12.5% 세율로 부과되었음
  
- 특별추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SAD)는 국내물품에 대해 주(State)에서 부과하는 판매세, 주 부가가치세 및 기타 비용 등을 대신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2006년에 도입되었음
  - 특별추가관세는 기본 관세와 추가관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2015년 기준 특별추가관세는 전체 관세품목의 약 90%에 대해 4% 세율로 부과되었음
  
- 2007년 인도 정부는 인도에서 판매된 수입물품에 대해 해당 수입자가 관련 주의 판매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특별추가관세의 환급 가능성을 공표하였음
  - 환급은 면제통지서 또는 특별추가관세 금액만큼 납부할 관세나 추가관세에서 공제함

50) USTR, *Foreign Trade Barriers 2017*, 2016, p.205와 WTO(2015), pp.42~43

51) WTO, *INDIA - ADDITIONAL ANDEXTRA-ADDITIONALDUTIES ON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2008. 10. 30., pp.44~45

## 나. 기타 세금 및 수수료<sup>52)</sup>

- 인도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의 2%에 해당하는 교육세(Education cess)와 1%의 고등 교육세(Higher education cess)를 부과함
- 2015년 3월 1일 기준 일부 수입물품에 국가재난기금세(National calamity fund)을 부과함
  - 담배와 담배제품에 1%에서 45%에 해당하는 종량세 또는 종가세를, 석유와 자동차에 1%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석탄, 갈탄 및 이탄에 청정에너지세 명목으로 200루피/1톤을 부과함
- 수입물품의 양하, 적재 및 핸들링에 소요되는 착륙료(Landing charge)는 수입물품 CIF 가격의 1%가 부과됨<sup>53)</sup>
  - 착륙료는 운송 수단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비율로 부과됨

## 다. 2017년 변경된 통합간접세

- 2014년 모디(Modi) 정부의 출범으로, 인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 노동 및 조세개혁을 추진해 왔음<sup>54)</sup>
  - 인도의 복잡한 조세체계는 행정 비용을 증가시켰고 이는 기업 활동의 저해요소로 꼽혔음
- 2017년 7월 1일, 인도 정부는 조세개혁에 따라 간접세 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납세 협력비용의 축소,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에게 안정적 과세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는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체제를 도입함<sup>55)</sup>
  - 기존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난립하던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통합하였음

52) WTO(2015), p.43

53) WTO(2015), p.36

54) 이용·김신주, 『인도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9. 19., p.3

55) KOTRA, 「인도 통합간접세(GST)도입 이후 일부 품목 관세조정」,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9702>(검색일자: 2017. 8. 31.)

-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던 추가관세(AD or CVD), 특별추가관세(SAD) 및 진입세(octroi) 등이 연방정부 통합간접세(Integrated-GST: IGST)로 대체됨
  - 세금 징수 주체에 따라 통합간접세는 연방정부 간접세(IGST), 중앙정부 간접세(Central-GST: CGST)와 주정부 간접세(State-GST: SGST)로 명칭이 구분됨
  - 한편 다음의 7가지 세금(cesses)은 이번 통합간접세(GST) 제도에 포섭되지 않고 독립적인 세율로 남아 있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 계산시 주의를 요함<sup>56)</sup>
    - ① Education Cess(수입품), ②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ess(수입품), ③ Cess on Crude Petroleum Oil, ④ Road Cess(디젤), ⑤ SAD on Motor Spirit, ⑥ NCCD(담배), ⑦ NCCD(원유)

〈표 2-II-1〉 인도의 통합간접세 체계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과거 간접세	통합간접세
재화	수입	기본관세(BCD)	기존세제 유지
		추가관세(AD or CVD)	
		특별추가관세(SAD)	
		진입세(octroi)	
	주내	소비세(재화생산)	CGST, SGST
		부가가치세(재화공급)	
주간	소비세(재화생산)	IGST	
	연방판매세(재화 주간공급)		
	진입세		
서비스	수입	서비스세	IGST
	주내	서비스세	CGST, SGST
	주간	서비스세	IGST

자료: 관세청, 『2017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2017. 7. 18., p.163

- 인도 정부는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위해 다음 5가지의 품목별로 통합간접세(GST) 세율을 달리 설정함<sup>57)</sup>
  - 품목별로 영세율, 5%, 12%, 18%, 그리고 28%의 세율로 차등 적용됨

56) Kotra 현장·인터뷰, “인도 통합간접세(GST) 도입. 현지 전문가 일문일답,” 2017. 7. 4.,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59659> (검색일자: 2018. 1. 11.)

57) 품목별 GST세율은 GST Council(<http://www.gstcouncil.gov.in/gst-rates>)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은 <표 2-II-2>에 따라 해당 품목별 GST 세율을 적용하여 연방정부 통합간접세(IGST) 세목으로 징수됨
  - 통합간접세(GST) 체제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본관세(Basic Duty), 연방 정부 통합간접세(IGST), 교육세(Education Cess) 그리고 통합간접세 보상세금(GST compensation cess)임
    - 통합간접세 보상세금은 수입물품 중 담배나 고급자동차 등 일부 사치품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임

**<표 2-II-2> 인도의 통합간접세(GST)가 부과되는 5가지 품목군**

(단위: %)

구분	재화	서비스
0		- Health, education - Hotels and lodges with tariff below Rs 1,000
5	- Fish fillet - Apparel below Rs 1000 - Packaged food items - Footwear below Rs 500 - Cream, skimmed milk powder, branded paneer, frozen vegetables, coffee, tea, spices, pizza bread, rusk, sabudana, kerosene, coal, medicines, stent, lifeboats, agarbatti (incense)	- Transport services (Railways, air transport) - Small restaurants
12	- Apparel above Rs 1000 - Frozen meat products, butter, cheese, ghee, dry fruits in packaged form, animal fat, sausage, fruit juices, - Namkeen, Ayurvedic medicines, tooth powder - Ketchup, toppings, instant food mixes - School exercise books, picture books, umbrella - Cutlery, sewing machine, cellphones (smartphones), fertilisers	- Non-AC hotels, business class air ticket - Work Contracts
18	- Footwear costing more than Rs 500 - Bidi Patta, Biscuits, flavoured refined sugar, pasta, cornflakes, pastries and cakes, preserved vegetables, jams, sauces, soups, ice cream, mineral water - Tissues, envelopes, tampons, school bags - Steel products, tractor components, printed circuits, camera, speakers and monitors	- AC hotels that serve liquor - Telecom services - IT services, financial services

〈표 2-11-2〉의 계속

구분	재화	서비스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dis, chewing gum, molasses, chocolate not containing cocoa, waffles and wafers coated with chocolate, pan masala, aerated water</li> <li>- Paint, deodorants, shaving creams, after shave, hair shampoo, dye, sunscreen, wallpaper, ceramic tiles,</li> <li>- Water heater, dishwasher, weighing machine, washing machine, ATM, vending machines, vacuum cleaner, shavers, hair clippers, automobiles, motorcycles, aircraft for personal us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star hotels, race club betting, cinema</li> </ul>

자료: Kotra 현장·인터뷰, “인도 통합간접세(GST) 도입. 현지 전문가 일문일답,” 2017. 7. 4.

### Ⅲ. 관세평가제도

#### 1 개요

---

- ‘관세평가’란 종가세를 적용받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과세가격)에서 일정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GATT 협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인도의 관세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관세법(Customs Act, 1962), 관세평가규정(Customs Valuation (Determination of Value of Imported and Export Goods) Rules, 2007) 및 WTO의 GATT 협정 등이 있음
  
- 그러나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격의 사용은 배제되며 이 경우 「인도 관세법」에서 설정한 후순위 관세평가 방법을 따름
  - 후순위 관세평가방법은 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방법, ②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방법, ③ 수입국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방법, ④ 생산국의 물품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 방법 및 ⑤ 세관의 합리적인 방법 등이 있음
  -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사유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물품의 가격결정방법에 대해서 ① 물품의 판매가 없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③ 가격이 판매에서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닌 경우 등
- 가격의 진실성, 정확성 및 가격결정방법에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세관직원이 수출입물품의 신고가격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 2 관세평가방법<sup>58)</sup>

### 가. 일반적인 관세평가방법

- 인도는 인도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가격을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sup>59)</sup>
  -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 관련이 없어야 하며 오직 가격만이 매매를 위한 고려사항이어야 함
-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할 총금액임
  -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하는 조건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매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포함됨
-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평가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요소(Valuation factors)라 함
- 평가요소 중 아래의 가산요소는 거래가격에 더하여야 함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

58) CBEC(2015), pp.43~47

59) 2007년 10월 개정 전 법조항에서는 아래의 간주가격(deemed value)개념을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삭제됨

-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참조한 가격으로서 일정 조건하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할 가격
- 통상 판매되거나 판매목적으로 설정된 물품의 가격
- 인도 수출을 위해 판매한 물품의 가격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국제가격은 고려대상이 아님

- 관세목적상 해당 물품과 하나로 취급되는 컨테이너(용기) 비용
  - 해당 물품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와 자재비
  -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금액을 수입물품에 비례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 수입물품에 포함되는 재료, 부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도구, 금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이 소비한 재료 등
  - 수입국 이외의 곳에서 착수되고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비용, 개발비용 및 디자인 비용 등
  - 해당 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용
    - 구매자가 수출판매조건으로 해당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 실제지급가격에 해당 로열티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해당 물품의 후속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해당 금액
  - 물품의 선급금
  - 선박의 선적료, 경량화물 또는 부선료를 포함한 수입지까지의 운송비용
  - 운송과 관련된 선적, 하역 및 물품 취급비용
  - 보험료
- 평가요소 중 다음 공제요소는 상업송장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거래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함
- 외상거래에 따른 이자 비용
  - 내륙 운송비, 설치 또는 발기 수수료 등과 같이 수입 후 발생하는 수수료
  - 수입국에서 지불될 관세 및 세금
- 거래가격이 다음의 사유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사용될 수 없음
-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거래가격은 배제되나 다음의 제한은 예외적으로 인정됨
    - 인도의 법률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인 경우
    - 재판매의 지리적 영역을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제한 등

- 수입물품의 판매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 단,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됨
  - 수입 후 재판매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평가요소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수익금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은 배제되나 구매자(수입자)가 다음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됨
    - 특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수입 가격이 세관의 기준가격(test values) 중 어느 하나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 거래가격이 배제된 경우 수입자는 다음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관세평가를 진행함
-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 수입국의 판매 가격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공제가격방법)
  - 생산국의 재료, 제조 및 수익 등 산정된 원가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산정가격방법)
  -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유연성을 추가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폴백방법; fallback)

## 나. 세관의 관세가격 적용

- 인도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이 아닌 정해진 관세가격(Tariff value)을 적용함
- 관세가격은 해당 물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가격 추세(trend)을 기준으로 관세 위원회(Board)에서 결정하여 공식 관보를 통해 공표함
  - 2015년 기준 관세가격을 적용받는 대상은 정제하지 않은 팜유, 정제·표백·탈취한(Refined, bleached and deodorised: RBD) 팜유, 기타 팜유, 정제하지 않은 팜올레인유, 정제·표백·탈취한 팜올레인유, 기타 팜올레인유, 정제하지 않은 대두유, 황동 스크랩 및 양귀비 종자 등이 있음

- 관세가격의 관세율은 2주마다 개정되며 국제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됨<sup>60)</sup>
- 또한 세관이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을 수락하지 않고 세관의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개인 심의를 위한 서면 통지를 요구받음<sup>61)</sup>
- 수입자가 과세가격의 재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수입자는 3차례에 걸쳐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음
  - 첫 번째로 세관장(Commissioner of Customs (Appeal))에게 항소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행정 및 사법부로 구성된 재판소(CESTAT)에 항소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인도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에 항소할 수 있음

### 3 특수 관계자간 거래

#### 가. 특수 관계의 정의

- 특수 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가격은 과세가격결정시 배제되나 구매자가 특수 관계가 가격에 영향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인정됨<sup>62)</sup>
  -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련이 있으나 수입물품의 판매(수출) 상황을 조사한 결과 특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낼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특수 관계가 없이 인도에 수출되는 동종 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에 근접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특수 관계가 없이 인도에 수출되는 공제가격결정방법 또는 산정가격결정방법으로 계산된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어느 하나에 근접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를 특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sup>63)</sup>
  - 서로의 사업에 대한 임원 또는 이사인 경우

60) WTO(2015), p.36

61) CBEC(2015), p.47

62) CBEC(2015), pp.46~47

63) "Customs Valuation Rules, 2007," Article 2, www.cbec.gov.in(검색일자: 2017. 12. 27)

- 서로 사업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동업자인 경우
- 고용주와 고용인 등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 통제 또는 보유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 나. 세관의 특수 관계자간 거래 조사<sup>64)</sup>

- 인도의 관세청 산하의 특별기관인 특별거래조사국(Special valuation branch: SVB)은 특수 관계자간 거래를 조사하는 기관임
  - 특별거래조사국은 인도의 뭍바이, 캘커타, 첸나이 및 델리의 주요 세관에 위치함
- 특별거래조사국(SVB)의 업무는 특수 관계자 간 거래는 해외 수출자(공급자)와 수입자 간의 관계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임
- 특수 관계자 간 거래 물품의 관세평가는 세관에서 일차적으로 잠정 평가함
  - 수입자는 신속한 잠정평가의 마무리를 위해 설문지(questionnaire)를 작성하고 통관 서류목록을 제출해야 함
- 잠정 평가 후 특별거래조사국(SVB)은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영향력에 대한 정도를 수치화한 후 기존 신고가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새로이 계산한 수입 가격의 비율만큼 기존 신고가격을 인상할 것을 권고하는 세관 지시서(SVB order)를 발급함
  - 세관지시서(SVB order)는 3년간 유효함

---

64) CBEC(2015), p.47와 EY, "India-Customs valuation for related-party transactions: key changes in investigation procedure," *Tradewatch*, Volume 15, Issue 1, 2016, 3., p.37

- 수입자는 향후 동일한 판매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관지시서(SVB order)를 연장하고 동 내용을 적용하여야 함
- 세관지시서(SVB order)는 수입통관의 수문장(gatekeeper) 역할을 한다는 특징을 갖는데, 이는 수입자가 특수 관계에 따른 모든 수입 거래에 대해 세관에 일차적으로 추가 관세담보(Extra duty deposits: EDD)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 IV. 관세율 및 품목분류제도

### 1 관세율제도

---

#### 가. 개요

- 2015년 기준 인도의 전체 수입물품의 약 92.7% 정도가 운송·보험료 포함 가격 조건(Cost Insurance Freight: CIF)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종가세를 적용받으며 약 6.1%의 일부 농수산이 종량세를 적용받음<sup>65)</sup>
- 1975년 인도 관세율법에 명시된 법정세율(statutory rate)이 인도의 기본 관세율이나 이는 실제 적용되는 유효세율(effective rate)과 세율 차이가 있음
  - 본장에서 유효세율은 WTO협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양허세율(최혜국대우 관세율; Most favored nation, MFN)을 말함
  - 인도는 법정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관보로 공표하여 관세율을 조정하고, 관세 감면의 적용으로 법정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법정세율과 양허세율 간 차이가 발생함

---

65) WTO, *Trade Policy Review-India*, WT/TPR/S/313, 2015, 4, 28., p.9

-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3월까지이므로, 법정세율의 조정 또한 이에 맞추어 매년 2월 말에 공표됨

### 나. 관세율 분포

- 2014~2015 기간 중 인도의 HS 2012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양허세율(MFN) 적용품목의 개수는 총 11,481개이며 대부분이 종가세 적용품목임
  - 종가세 적용품목은 총 10,476개로 전체에서 91.2%를 차지함
  - 종량세 적용품목은 총 3개이며, 종량세와 종가세를 모두 구성하는 대체관세(alternate rate) 적용 품목은 697개로 이 둘의 합이 전체에서 6.1%를 차지함
  - 무관세 품목은 총 305개이며 전체에서 2.7%를 차지함
- 2014~2015 기간 중 인도의 양허관세 적용비율과 무관세 적용품목은 2010~2011 기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음
  - 양허관세 적용비율은 75.6%에서 74.9%으로, 무관세 적용품목은 3.2%에서 2.7%으로 하락함

〈표 2-IV-1〉 2010~2011년과 2014~2015년의 인도의 관세율 구조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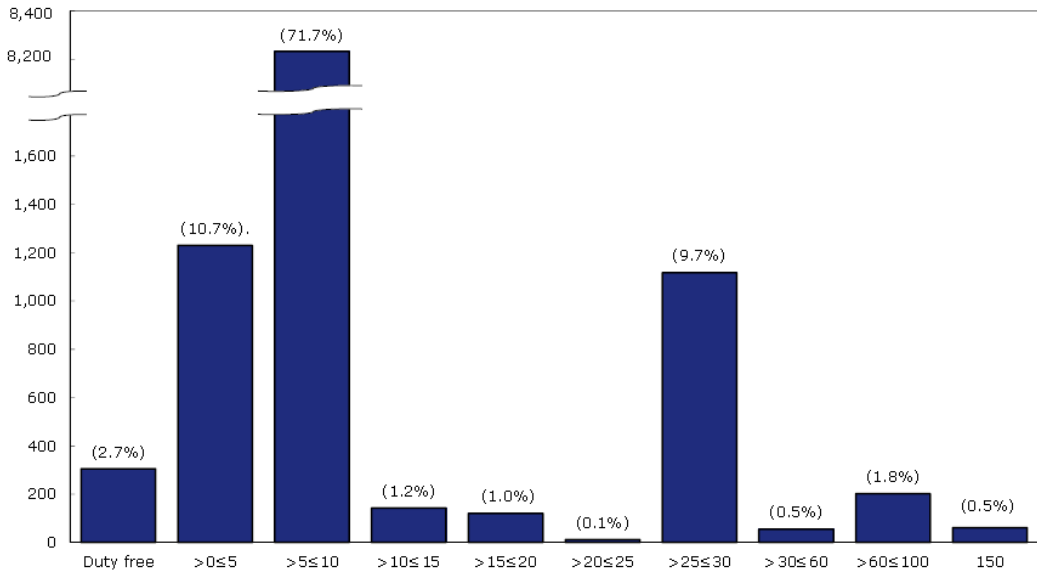
구분	양허세율(MFN effective applied rate)			
	2010~2011		2014~2015	
단순평균 양허세율	12.0		13.0	
WTO 농산품	33.2		36.4	
WTO 비 농산품	8.9		9.5	
양허관세 적용비율 <sup>1)</sup>	75.6		74.9	
구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총관세적용품목	11,328	100	11,481	100
종가세 적용품목	10,277	90.7	10,476	91.2
무관세품목	361	3.2	305	2.7
종량세품목	5	6.1	3	6.1
대체관세율품목	685		697	

주: 1) 전체 수입물품에서 양허관세를 적용한 품목의 비율  
 자료: WTO(2015), p.39

- 관세율 적용 범위는 0%에서 150%까지이며 관세적용품목의 대부분인 약 72%가 5%에서 10% 사이의 관세율이 적용됨
- 관세적용품목의 약 14.5%가 1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 받으며 주로 주류·음료 등 약 0.5%의 품목이 150%의 관세율을 적용 받음

[그림 2-Ⅳ-1] 2014~2015년 인도의 양허세율 분포도

(단위: 개수, 관세율)



주: ( ) 안은 전체 관세적용품목 개수 중 점유율을 나타냄  
 자료: WTO(2015), p.40

## 다. 양허세율과 최종적용세율

### 1) 양허세율의 연도별 비교

- <표 2-Ⅳ-2>을 보면 2014~2015 기간 중 양허세율 단순평균값은 13%이며, 이는 2010~2011 기간의 12%와 거의 동일한 수준임
- 농산품의 관세율은 33.2%에서 36.4%로, 비농산품의 관세율은 8.9%에서 9.5%으로 증가함

- 농산품 양허세율 단순평균값의 상승분은 곡류와 그 조제품, 채유용 종자와 지방 및 설탕과 제과제품 등의 관세율 상승에 기인함
- 농산품 중 음료, 주류 및 담배(77.5%)와 커피 및 차(74.8%)의 관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
- 비농산품 양허세율 단순평균값의 상승분은 운송수단의 관세율 상승에 기인함
  - 운송수단은 기간 중 약 21.5%에서 32.1%로 약 10% 상승함
  - 광물 및 금속(7.1%에서 7.4%) 직물(9.6%에서 10%), 그리고 전자기기(6.7%에서 7%)에서도 각각 관세율이 소폭 상승함

〈표 2-IV-2〉 2010~2011년과 2014~2015년 인도의 양허세율 비교

(단위: %)

구분	2010~2011 양허세율(MFN)			2014~2015 양허세율(MFN)		
	품목개수	평균	세율범위	품목개수	평균	세율범위
<b>총합계</b>	<b>11,328</b>	<b>12.0</b>	<b>0~150</b>	<b>11,481</b>	<b>13.0</b>	<b>0~150</b>
HS 01~24	1,433	35.1	0~150	1,609	37.7	0~150
HS 25~97	9,895	8.6	0~70	9,872	9.0	0~100
<b>농산품</b>	<b>1,431</b>	<b>33.2</b>	<b>0~150</b>	<b>1,496</b>	<b>36.4</b>	<b>0~150</b>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06	30.8	5~100	124	30.4	5~100
낙농품	32	34.4	30~60	33	34.2	30~60
과일, 채소 및 비식용 식물	355	27.6	0~100	376	29.0	0~100
커피와 차	75	74.7	17.5~100	75	74.8	30~100
곡물 및 곡물 조제품	137	30.4	0~90	142	40.9	0~150
채유용 종자, 지방 및 관련 조제품	196	18.5	0~100	208	33.2	0~100
설탕과 제과 제품	38	33.4	10~60	41	35.4	10~60
음료, 주류 및 담배	123	78.7	7.5~150	126	77.5	5~150
면(목화)	11	5.5	0~30	11	2.7	0~30
기타 농산품	358	25.1	0~70	360	25.2	0~70

〈표 2-IV-2〉의 계속

(단위: %)

구분	2010~2011 양허세율(MFN)			2014~2015 양허세율(MFN)		
	품목개수	평균	세율범위	품목개수	평균	세율범위
비농산품	9,897	8.9	0~70	9,985	9.5	0~100
어류 및 어류 조제품	176	29.5	5~30	287	29.6	0~30
광물 및 금속	1,912	7.1	0~10	1,920	7.4	0~15
화학조제품 및 사진용품	2,471	8.1	0~10	2,452	8.2	0~10
목재, 펄프, 제지 및 가구	495	9.2	0~10	500	9.2	0~10
직물	1,555	9.6	5~10	1,522	10.0	5~10
의류	397	10.0	10~10	396	10.0	10~10
가죽, 고무, 신발 및 여행용품	322	10.2	0~70	329	10.3	0~70
비전자 기계	1,094	7.1	0~10	1,094	7.0	0~10
전자 기기	537	6.7	0~10	541	7.0	0~10
운송수단	244	21.5	0~60	244	32.1	0~100
기타 비농산품 제품	676	8.6	0~10	681	8.8	0~10
석유	18	8.2	0~10	19	4.6	0~10

자료: WTO(2015), pp.43~44

## 2) 양허세율과 최종적용세율 간 비교

- 2015년 기준 인도의 최종적용세율<sup>66)</sup>은 28.3%으로, 양허세율 단순평균값인 13%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음
  - 농산품의 경우 36.4%에서 46.1%로, 비농산물은 9.5%에서 25.6%으로 최종적용세율의 값이 현저히 높음
  - 가장 높은 최종적용세율의 품목은 음료·주류 및 담배(99.4%), 커피와 차(88%) 및 운송장비(58.9%) 등임

66)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까지 모두 합산한 양허세율의 최종 평균적용세율

〈표 2-Ⅳ-3〉 2014~2015년 인도의 양허세율과 최종적용세율의 비교

(단위: %)

구분		양허세율(MFN)		최종적용세율 <sup>1)</sup>	
품목	품목개수	평균	세율범위	평균	세율범위
<b>총합계</b>	<b>11,481</b>	<b>13.0</b>	<b>0~150</b>	<b>28.3</b>	<b>0~537.5</b>
HS 01~24	1,609	37.7	0~150	46.2	0~537.5
HS 25~97	9,872	9.0	0~100	25.3	0~186.1
<b>농산품</b>	<b>1,496</b>	<b>36.4</b>	<b>0~150</b>	<b>46.1</b>	<b>0~537.5</b>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24	30.4	5~100	36.3	9.4~124
낙농품	33	34.2	30~60	39.6	30.9~68.3
과일, 채소 및 비식용 식물	376	29.0	0~100	36.8	0~111.1
커피와 차	75	74.8	30~100	88.0	36.1~111.1
곡물 및 곡물 조제품	142	40.9	0~150	52.1	0~191.2
채유용 종자, 지방 및 관련 조제품	208	33.2	0~100	39.3	0~115.4
설탕과 제과 제품	41	35.4	10~60	56.0	14.7~88.8
음료, 주류 및 담배	126	77.5	5~150	99.4	22.9~537.5
면(목화)	11	2.7	0~30	3.3	0~36.1
기타 농산품	360	25.2	0~70	33.9	0~79
<b>비농산품</b>	<b>9,985</b>	<b>9.5</b>	<b>0~100</b>	<b>25.6</b>	<b>0~186.1</b>
어류 및 어류 조제품	287	29.6	0~30	35.1	0~44.5
광물 및 금속	1,920	7.4	0~15	23.1	0~31.2
화학조제품 및 사진용품	2,452	8.2	0~10	25.6	0~28.9
목재, 펄프, 제지 및 가구	500	9.2	0~10	22.7	0~28.9
식물	1,522	10.0	5~10	25.7	9.4~28.9
의류	396	10.0	10~10	28.6	21.8~28.9
가죽, 고무, 신발 및 여행용품	329	10.3	0~70	27.0	10.3~79

〈표 2-Ⅳ-3〉의 계속

(단위: %)

구분		양허세율(MFN)		최종적용세율 <sup>1)</sup>	
품목	품목개수	평균	세율범위	평균	세율범위
비전자기계	1,094	7.0	0~10	22.2	9.4~28.9
전자기기	541	7.0	0~10	22.8	6~28.9
운송수단	244	32.1	0~100	58.9	0~186.1
기타 비농산품 제품	681	8.8	0~10	24.3	0~28.9
<b>석유</b>	<b>19</b>	<b>4.6</b>	<b>0~10</b>	<b>11.4</b>	<b>0~26.2</b>

주: 1) 최종적용세율은 양허세율(유효세율), 추가관세, 특별추가관세, 교육세 및 착륙료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함

〈표 2-Ⅳ-3〉의 계산은 종량세 항목을 제외하고 일부 항목을 종가세율로 대체한 요율을 포함함  
자료: WTO(2015), pp.43~44

## 2 품목분류제도

### 가. 일반물품의 품목분류<sup>67)</sup>

- 무관세 물품을 포함한 모든 수출입물품은 관세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적절한 품목분류는 필수적임
- 현재 인도의 수출입물품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와 1975년 인도 관세율법에 따른 품목분류 2가지로 구분됨
  - 인도는 WCO의 HS 협약에서 규정하는 부규정, 주규정, 소호주 규정, 4단위와 6단위 호의 이름 및 관세율표 해석에 대한 일반 통칙(Gener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Import Tariff: GIR)을 준수하여야 함
  - 인도 관세율법에 따른 품목분류는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과 기타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인도관세율(Indian Customs Tariff) 또는 관세율 일정(Tariff Schedule)이라고도 부름

67) CBEC(2015), pp.37~38

- 인도의 관세율표는 21개의 부(Sections)와 98개의 표제목(Chapters)으로 구성되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HS CODE는 8자리로 구성됨
  - 인도는 HS CODE를 통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등 특정 통계 코드를 표시하고 무역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8자리까지 확장하여 사용 중임
    - WCO 회원국은 규정에 따라 HS Code 6자리를 세계 공통으로 쓰며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 코드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인도의 품목분류 방법은 일반 통칙(GIR)의 법정 의미(statutory definition)와 HS 해설서에서 제공하는 일반지침에 따름
  - 일반 통칙과 지침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물품의 공통 의미(common parlance)를 참고하여 분류함
  
- 품목분류시 용어의 해석은 무역의 의의(trade meaning)에 따라야 함
  - 단, 품목분류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적 용어(technical dictionaries)를 참고할 수도 있음
    - 기술용어를 참고시 일반적인 사전의미(the common dictionary meaning of technical words)는 단지 물품의 기능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품목분류시 이를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함
  
- 인도는 모든 물품에 대해 1975년 인도 관세율법에 표기된 관세율을 부과함
  - 양허세율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관세법에 따라 관세면세가 되는 물품은 공식 관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관세율을 부과함
  - 수출관세율은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한해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
  - 관세율에 'nil'이라고 표기된 물품은 무세(free)라는 뜻임
  
- 관세청은 모든 인도 전역의 수출입 물품에 균일적인 품목분류를 위해 회보 성격의 관세통지(Tariff Advices)를 발행함
  - 관세통지는 관세청장 또는 관련 집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의결함
  
- 물품의 수출입 통관 통제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 규정 품목분류(Import policy classification: ITC)에 따라 통관 허용 가능성을 관리함
  - 수입 규정 품목분류(ITC)는 물품을 HS CODE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하지만 숫자 코드를 8단위가 아닌 10단위로 목록화 함

## 나. 특수한 물품의 품목분류<sup>68)</sup>

- 인도는 수입 계획에 따라 수입된 물품,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 편의목적상 ‘98류’라는 특정 표제를 제공하여 일괄 분류함
  - 해당 물품들은 다른 HS Code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98류로 우선 분류됨
  - 수입 목적에 따라 물품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으므로 관세평가가 수월해지고 신속 통관을 도모할 수 있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1) 수입계획에 따른 플랜트·프로젝트

- 인도의 1975년 관세율법상 ‘9801’호는 프로젝트 수입 계획(Project import scheme)에 따라 수입되는 자본재, 기계 등 관련물품을 일괄 분류하고 균일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해당 자본재 등을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른 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분류와 관세평가를 단순화 하여 신속 통관을 도모해 수입계획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임
- ‘9801’호에 분류되는 프로젝트의 종류는 발전 프로젝트, 광산 프로젝트 및 유류/광물 탐사 프로젝트 등이 있음
  - 원자재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산업플랜트 등 역시 9801호에 분류 가능함
  - 그러나 호텔, 병원, 사진 스튜디오, 사진 필름 가공 실험실, 사진 복사 스튜디오, 세탁소, 차고 및 일반 산업공장은 해당되지 않음
- ‘9801’호에 분류되는 프로젝트 물품의 대상은 기계류 등과 예비 부품 등이며 해당 물품은 프로젝트의 초기 설치 또는 실질적 확장을 위해 수입되어야 함
  - 기계류에는 원동기, 기기, 도구, 가전제품, 제어 장비, 전송 장비, 보조 장비,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필요한 장비, 테스트 및 품질 관리 장비 등이 있음

---

68) CBEC(2015), pp.39~42

- 부품은 예비 부품과 부분품, 해당 품목의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물품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소모품(consumables up to 10% of the assessable value of goods) 등이 있음
  - ‘실질적 확장’의 기준은 프로젝트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단위(unit)의 설치 비중이 전체 대비 25%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함
- 프로젝트 수입계획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 물품공급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sup>69)</sup>
    - 프로젝트 수입계획이 세관에 등록되면 해당 물품에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프로젝트 계약 등록번호(Project contract registration number)가 지정되어 수입자에게 전달됨
    - 수입자는 관세청의 모든 통지와 서신에 대하여 해당 등록번호를 참조하여야 함
  - 프로젝트 계약 등록번호 생성 후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프로젝트 수입계획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신고서에 해당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수입신고서를 전달받은 프로젝트 수입부서(the Project import group)는 수입 신고서상의 물품명세, 가격, 수량 등의 내용을 등록된 프로젝트 수입 계약서의 내용과 상호 비교해야 함
    - 이후 각각의 수입계약에 대한 수입물품의 명세와 가격에 대해 기록한 뒤 목록화하여 보관해야 함
  - 상호비교를 완료한 프로젝트 수입부서는 임시통관 및 잠정 평가된 관세 부과를 위해 수입자 또는 관세사에게 해당 수입신고서를 다시 전달함
  - 수입자는 임시 통관이 최종 허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관세의 재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sup>70)</sup>
    - 계정 조정표(a reconciliation statement) 또는 수입된 기계류 등의 설명, 수량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69) Project Import Regulations, 1986 (PIR)의 4 및 5 규정에 의함

70) Project Import Regulations, 1986 (PIR)의 7 규정에 의함

- 수입한 기계류의 각 설비의 설치를 증명하는 공인 엔지니어의 인증서
- 청구서, 청구서 및 최종 지불 증서의 사본(계약 완료시 거래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경우에 해당)
- 세관 또는 관련기관은 프로젝트 수입 계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이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함
  - 프로젝트 계약의 가치가 1,000만루피(Rs.1 crore)를 초과한다면 공장 현장 검증을 수행하며 이외의 경우 현장검증은 선택적으로 수행됨
- 프로젝트 수입계획에 따른 물품의 확정관세 재평가는 일반적으로 확정관세 재평가를 위한 서류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됨
  - 수입자가 계정 조정표와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현장검증 기준에 해당한다면 6개월 이내에, 이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확정관세의 재평가가 이루어짐

## 2) 실험실용 물품, 여행자 휴대품, 개인 우편물품 및 선상 물품

- 화학적으로 정의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유기·무기화학품으로써 실험실용 물품은 관세율표 제‘9802’호에 분류함<sup>71)</sup>
  - 해당 물품은 500g 또는 5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물품의 순도, 표시 또는 기타 특징을 참조하여 실험실용 화학물품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세관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은 관세율표 제‘9803’호에 분류함
  - 단 휴대품 중 자동차, 알코올 음료 및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입된 물품은 이 호에 적용되지 않음
  - 또한 해당 휴대품이 수입 승인물품 또는 통관이 필요한 물품 등이라면 9803호로 분류되지 않으며 별도로 품목분류 하여야 함
- 우편이나 항공으로 수입된 개인용 우편물품은 관세율표 제‘9804’호에 분류함

71)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Tariff 2016-17, Chapter 98」, <http://www.cbec.gov.in/htdocs-cbec/customs/cst1617-300616/cst1617-3006-idx>(검색일자: 2017. 9. 11.)

- 9804호에는 마약과 의약품이 분류되는 소호와 개인 우편물이 분류되는 소호로 구분됨
    - 따라서 개인 우편물은 수입가능성에 대해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Policy: FTP)을 적용받음
  - 단 휴대품 중 자동차, 알코올 음료 및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입된 물품은 이 호에 적용되지 않음
  - 또한 해당 휴대품이 수입 승인물품 또는 통관이 필요한 물품 등이라면 9803호로 분류되지 않으며 별도로 품목분류 하여야 함
- 선박 또는 항공기 내 상점에서 판매하는 선상물품은 관세율표 제‘9805’호에 분류함

〈표 2-IV-4〉 2016~2017년 인도의 98류 관세율

(단위: %)

HS Code	품목	단위	관세율	
			기본범위	특혜범위
<b>9801</b>	<b>수입계획에 따른 플랜트 및 프로젝트</b>			
9801.0011	산업플랜트	kg	10	-
9801.0012	용수로(irrigation) 플랜트	kg	10	-
9801.0013	파워(power) 프로젝트	kg	10	-
9801.0014	광산 프로젝트	kg	10	-
9801.0015	석유 및 기타 광물 탐사 프로젝트	kg	10	-
9801.0019	기타 프로젝트	kg	10	-
9801.0020 <sup>1)</sup>	플랜트 구성요소(완성품 여부 불문)또는 원재료	kg	10	-
9801.0030 <sup>2)</sup>	예비 부품 또는 원재료	kg	10	-
<b>9802.0000</b>	<b>실험실용 화학용품</b>	kg	10	-
<b>9803.0000</b>	<b>여행자·승무원 휴대품</b>	kg	100	-
<b>9804</b>	<b>개인용 휴대품(우편 또는 항공수입)</b>			
9804.1000	의약품(dugs and medicines)	kg	35	-
9804.9000	기타	kg	35	-
<b>9805</b>	<b>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상 상점의 물품</b>			
9805.1000	보관중인 육류, 생선, 채소, 유제품, 수프, 라드(lard), 신선한 과일	kg	10	-
9805.9000	기타 소모품(연료, 윤활유, 알코올 음료 및 담배 제품 제외)	kg	10	-

주: 1) 9801.0011~14 품목의 초기 설치 또는 실질적인 확장에 필요한 물품일 것  
 2) 9801.0011~14 품목의 유지·보수를 위한 반제품 또는 소모품 등을 포함함  
 자료: CBEC, 「Tariff 2016-17, Chapter 98」, <http://www.cbec.gov.in/htdocs-cbec/customs/cst1617-300616/cst1617-3006-idx>(검색일자: 2017. 9. 11.)

### 다. 품목분류번호의 조회

- 인도의 품목분류는 인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율 법령집을 통해, 또는 인도의 EDI 통관시스템인 ICEGATE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음
  - 관세율표 법령집에서 각 부, 류, 호의 규정과 Hs code 8단위에 대한 법정 관세율을 류(Chapter)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sup>72)</sup>
  - ICEGATE 에 접속하여 'Trade Guide on imports'를 클릭하면 HS code를 입력하도록 페이지가 전환되며 HS code 또는 품목명(Description)을 입력시 관련 관세, 통합부가가치세(IGST), 적용법령 및 수입시 필요한 서류 등의 정보가 나타남
- 인도에서 스마트폰(HS 8517.12-90)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표 2-Ⅳ-5>로 정리함
  - 스마트폰의 수입 과세가격을 10만루피로 가정함
  - 법정세율의 면제통지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가정함

**<표 2-Ⅳ-5> 인도의 스마트폰 수입 품목분류번호 조회**

(단위: %, 루피)

관세항목	법정세율	유효세율	관세총액
법정관세	10	10	10,000
교육세	2	2	222
고등교육세	1	1	111
국가재난기금세(NCCD)	1	1	1,100
통합부가가치세	28	28	31,201
총관세	42,634	-	42,634

자료: ICEGATE, <https://www.icegate.gov.in/Webappl>(검색일자: 2017. 8. 30.)

72) CBEC, 「Tariff 2016-17」, <http://www.cbec.gov.in/htdocs-cbec/customs/cst1617-300616/cst1617-3006-idx>(검색일자: 2017. 8. 30.)

[그림 2-IV-2] 인도 ICEGATE의 스마트폰 수입 품목분류번호 조회화면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Department of Revenu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Customs Tariff Head :85171290 Country of Origin : Structure of Duty for selected Tariff

Description for CTH :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HEADING 8443, 8525, 8527 OR 8528: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Other

Customs Duty	Rate of Duty (Tariff)%	Spec Duty	Unit	Notification -Sno	Rate of Duty (Effective) %	Spec Duty	Unit	Duty Amount
Basic Customs Duty	10			Select Exemption Notn. (if any) ▼	10			10000
Education Cess	2			Select Exemption Notn. (if any) ▼	2			222
Secondary and Higher Edu. Cess	1				1			111
Other Duties								
Additional Duty Of customs	0			Select Exemption Notn. (if any) ▼	0			0
Additional CVD	0			Select Exemption Notn. (if any) ▼	0			0
National Calamity Contingent Duty (NCCD)	1				1			1100
GST Duty								
Antidumping Duty				Enter Antidumping Duty if applicable				
Safeguard Duty				Enter Safeguard Duty if applicable				
Countervailing Duty				Enter Countervailing Duty if applicable				
IGST Levy	28			001/2017-IV147 Select Exemption Notn. (if any) ▼	28			31201
Compensation Cess	0			Select Exemption Notn. (if any) ▼	0			0
Duty Calculator								
Total Duty	42.634				42.634			42634
Sample calculation for Assessable value Rs. 100000	42634			Enter your Assessable value and press Enter	42634			
Enter your Assessable value in INR				100000	42634			-> Show Duty Bifurcation

**GST Duty Calculations :** Antidump/Safeguard/Tariff Duty are not considered for IGST duty calculation. For IGST Duty ,these duties may be added if applicable

**Compulsory compliance Requirements (CCRs)** : \*\* CVD ON RSP WHICH INCLUDES ALL COSTS/TAXES/CHARGES/COMPONENTS AS PER INCLUSIVE DEFINITION UNDER NTF 49/2008 & SEC. 4(A) OF C.EX. ACT, 1944. ENSURE ASSESSMENT/RE-ASSESSMENT WHERE DECLARED RSP IS LOWER THAN THE ASSESSABLE VALUE. MULTICHANNEL GSM/CDMA RECEIVERS, TRANSMITTERS & TRANSCEIVERS OF TWO OR MORE FREQUENCIES SIMULTANEOUSLY RESTRICTED. \* TABLET COMPUTERS CLASSIFIABLE UNDER 847130 \* MOBILE PHONES WITHOUT PROPER IMEI/MEID/ESN NOS. PROHIBITED \* BLUETOOTH WIRELESS HEADSETS FOR PHONES CLASSIFIABLE UNDER 8517.62 \* ENSURE DOT LICENCE FOR SATELLITE PHONES \* ( PEN DRIVE, KEYCHAIN DRIVES, KEY DRIVES, USB STICKS, FLASH STICKS, JUMP STICKS, USB KEYS OR MEMORY KEYS)ORIGINATED/EXPORTED FROM PR CHINA & CHINESE TAIPEI ATTRACT ADD\*NOTE NO. 22/2015-CUS(ADD) DT 22-5-15(VALID TILL 22-5-2020) \*(AUTHORITY):-NTF 49/08-C.EX. (N.T) DT. 24/12/08 \*ITC HS \*GEN NOTE 16 OF POLICY \*CBEC CIR 20/13-CUS. DT. 14.05.13 \*CBEC CIR 36/13-CUS DT. 05.09.13 \*TELEGRAPHY (SEC 4)/WIRELESS ACT/RULES \* \*

**Preferential rate of duty for import of specified goods** : Preferential rate of Duty may be applicable for imports from refer Notification Dated

SWIFT PGA filing	PGA Cd	PGA Name	Info Cd	Info Desc	QFR Cd	QFR Desc	REQ	Man Opt

자료: ICEGATE, <https://www.icegate.gov.in/Webappl/?pageID=2-13>(검색일자: 2017. 8. 30.)

-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의 관세율표와 해설집을 국문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 중임
  - 관세법령 포털에 접속하여 메뉴 상단의 '세계HS'를 클릭 후 왼쪽 메뉴에서 '관세율표'를 클릭하여 인도를 찾음
    - 한국부터 미국, EU 등을 포함하여 총 27개국의 관세율표 규정을 국문, 영문, 일본 및 불문으로 제공함
  - 예를 들어, 최초 상단 메뉴에서 '세계 HS'를 기준값으로 설정한 뒤, 인도의 스마트폰 품목분류번호(8517.12-90)를 입력하고 도출된 결과값 중 '해외관세율'을 클릭하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가의 스마트폰(8517.1290)의 분류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한-인도 CEPA협정에 따라 한국산 스마트폰의 관세율은 0%로 나타남

[그림 2-IV-3] 우리나라 관세청의 스마트폰 품목분류번호 조회화면(인도수출)

The screenshot shows the CLIP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the text '통합검색' (Integrated Search) and a search box. Below the search bar is a navigation menu with tabs for '법령' (Laws), '관세정보' (Customs Information), '세계HS' (World HS),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편의기능' (Convenience Functions), '새소식' (New News),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and '전체메뉴' (All Menu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세계HS' (World HS) and '외국관세율상세(UI-ULS-0201-008Q)'. On the right side, there are navigation links: 'Home >', '세계HS >', 'HS정보 >', and '관세율표'.

The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in a table format. The search criteria are: '부 제16부 기계 > 유 해설서 > 유 85류 전기기 > 유 해설서 > 유 8517호 전 > 유 해설서' and '검색 8517.12-90'. The table shows the following details:

국가	인도	해당년도	2016년
품목번호	8517.12-90	단위(종량/수량)	u / 단위표기
국문	--- 기타		
영문	--- Other		
원문	--- Other		
간이정역판급	해당사항 없음		
관세	기본세율 : Free 특혜 : -		

At the bottom of the table, there is a note: '※ 각 국의 관세율표의 세율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과는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세법령 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1001>(검색일자: 2017. 8. 30.)

## V. 감면 및 환급

### 1 관세의 감면제도

---

#### 가. 개요

##### 1) 관세감면제도의 목적

- 인도의 관세감면제도는 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15-2020)에 맞춰 운영되고 있음
- 인도 정부에 따르면 관세감면제도는 수출품의 투입물에 대한 면세 수입과 조달을 허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sup>73)</sup>
  - 특히 수출기업 및 중점 분야에 대해 각종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함
  - 이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의 부담에 따라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73) 인도 상무부, “ANNUAL REPORT 2016-17,” p.34

## 2) 관세감면제도의 구분

- 인도의 관세감면제도는 수입물품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일부 면제하는 감세제도와 전부 면제하는 면세제도로 구분됨
- 관세감세제도는 관세법에 규정된 감세제도로 운영되며, 관세면세제도는 관세법에 규정된 면세제도와 공식관보를 통한 면세제도로 구분되어 운영됨
- 한편 대외무역정책에 따른 관세지원제도로서 수출 촉진용 자본재 관세감면제도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이하 'EPCG')와 수출 목적 자본재 관세면세제도(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이하 'DFIA')를 두고 있음
  - EPCG 제도를 통해 관세감면을 신청한 제조 기업 또는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 시 수입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DFIA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의 면세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에만 적용되며 일부 품목에만 해당됨

## 나. 관세감세제도

- 관세감세제도는 수입물품에 대해 ①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② 멸실되거나 파괴되거나 유기된 물품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입관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1)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sup>74)</sup>
  - 수입물품이 인도에 양륙하는 도중 또는 이전에 손상되거나 변질된 경우
  - 장치물품 이외의 수입물품이 인도에 양륙한 이후이지만 신고납부 이전에 수입자(그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태만 또는 채무불이행 이외의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

---

74) 「인도 관세법」 제22조 제1항

- 국내소비를 위하여 통관되기 전에 소유자, 그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태만 또는 채무불이행 이외의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장치물품의 경우
- 변질 또는 손상되기 전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이 가지는 가격과 동일한 비율로 변질 또는 손상되기 전의 물품에 부과되어야 함<sup>75)</sup>
- 한편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가격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함<sup>76)</sup>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 공매나 경쟁입찰 또는 소유자 동의를 있는 기타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의 총수익을 해당 물품의 가격으로 봄

## 2) 멸실되거나 파괴되거나 유기된 물품

- 멸실되거나 파괴되거나 유기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sup>77)</sup>
  -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13조<sup>78)</sup>를 침해하지 않고 국내소비를 위한 통관 전에 멸실(도난으로 인한 결과 이외) 또는 파괴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 다. 관세면세제도

- 관세면세제도는 ① 관세법에 규정된 면세제도 ② 공식관보를 통한 면세의 공지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식관보를 통한 면세의 공지제도는 「관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중앙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운영됨

75) 「인도 관세법」 제22조 제2항

76) 「인도 관세법」 제22조 제3항

77) 「인도 관세법」 제23조 제1항

78) 수입물품의 양륙 이후 담당 공무원이 국내소비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통관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물품이 도난된 경우에는 도난된 이후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이 반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1) 관세법에 규정된 면세제도

□ <표 2-V-1>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면세 대상을 여섯 가지로 정리한 것임

**<표 2-V-1>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면세 대상**

관세면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버려진 물품, 파손된 물품</li> <li>② 멸실, 파괴, 유기된 물품</li> <li>③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li> <li>④ 재수출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li> <li>⑤ 수하물 규정에 따른 면세 물품</li> <li>⑥ 중앙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li> </ul>

자료: 저자 작성

- 버려진 물품, 파손된 물품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다음에 유의해야 함<sup>79)</sup>
  - 담당 공무원이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됨
  
- 멸실되거나 파괴되거나 유기된 물품은 다음에 따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음<sup>80)</sup>
  - 해당 수입물품의 소유자는 국내소비를 위한 물품의 통관 명령 또는 보세창고에 대한 물품의 장치 허가 명령 이전에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수하물 규정에 따른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로 반입할 수 있음<sup>81)</sup>
  - 재무부에서 통보한 수하물 규정에 따라 제한 규정 및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 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15-2020)에 따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다음 품목의 샘플<sup>82)</sup>
    - 채소 종자, 벌(bees), 신약을 제외한 샘플

79) 「인도 관세법」 제21조

80) 「인도 관세법」 제23조 제2항

81) 「인도 관세법」 제79조 및 인도 상무부, “FOREIGN TRADE POLICY[2015-2020],” pp.40~41

82) 인도 상무부, “HANDBOOK OF PROCEDURES[2015-2020]” 2.65, p.50

- 2,000루피(CIF) 미만의 차(tea)
  - 최대 30만루피의 샘플
  - 해외 입국 수출업자가 수출에 필요한 도면, 패턴, 라벨, 가격표, 단추, 벨트, 장식품을 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
-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83)</sup>
- 관세환급, 환급청구, 담보 수출 또는 수출 인센티브를 받은 물품이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경우
  - 인도에서 제조된 물품 또는 수리, 재처리, 정제, 재포장 등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재수입된 물품
  - 이전에 수입되었지만 개조, 수리, 보증 기간 내 무상 수리 등을 위해 재수입된 개인의 재산
- 재수출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84)</sup>
- 통관 이후 결함이 발견된 수입품 등
  - 특정 프로젝트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기계류 등
- 한편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식관보상의 고지를 통하여 특정 종류의 물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음<sup>85)</sup>
  - 또한 각각의 경우 특별명령을 통하여 해당 명령에 대한 이례적인 성격의 상황을 명시하여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sup>86)</sup>
  - 한편 관세액이 100루피(INR)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음
- 상기 규정에 따라 승인된 관세면제는 해당 물품에 과세되는 관세가 법정관세를 초과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짐

83) 인도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Customs Manual 2015,” p.123

84) 인도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Customs Manual 2015,” p.124

85) 「인도 관세법」 제25조 제1항

86) 「인도 관세법」 제25조 제2항

## 2) 면세의 공지 제도

- 인도는 공식관보를 통한 면세의 공지(Notification) 제도<sup>87)</sup>를 운영하고 있음
  - 동 제도에서는 특정 재화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세 또는 무조건 면세를 부여함
  - 한편 공식관보를 통한 면세의 공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면세의 공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그림 2-V-1]의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사이트(<http://www.cbec.gov.in/Customs-Notifications>)에서 면세의 공지를 확인 가능함
  - 각각의 공지는 PDF 파일로 볼 수 있으며 영문본과 힌디어본으로 구성됨

[그림 2-V-1] CBEC 웹사이트상의 공지(Notification) 확인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CBEC website's 'Notifications' page. The header includes the CBEC logo and name, along with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table of notifications with columns for Notification No. & Date of Issue, English, Hindi, and Subject. The table lists several notifications from 2017, including those related to customs amendments and exemptions.

Notification No. & Date of Issue	English	हिन्दी	Subject
76/2017-Cus.dt. 15-09-2017	View (122 KB)	देखें (812 KB)	Seeks to amend certain customs notifications in pursuance to change made in Budget 2017-18.
75/2017-Cus.dt. 13-09-2017	View (147 KB)	देखें (290 KB)	seeks to exempt goods imported for organising FIFA under 17, world cup, 2017.
74/2017-Cus.dt. 07-09-2017	View (159 KB)	देखें (249 KB)	seeks to further amend notification No.50/2017-Customs dated the 30th June, 2017, so as to reduce the BCD on raw sugar[1701] upto a quantity of 3 lakh MT from 50% to 25% subject to the Tariff Rate Quota Allocation Certificate or license, as the case may be, issued by DGFT.
73/2017-Cus.dt. 18-08-2017	View (254 KB)	देखें (323 KB)	Seeks to further amend notification no. 60/2011-customs dated 14th July 2011 to give effect to renewed MoU on India-Bangladesh border haats.

자료: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Customs-Notifications>  
(검색일자: 2017. 9. 22.)

87) 「연방소비세법」 제5A(1)

- <표 2-V-2>는 2017년 7월 기준 공식관보에 의한 관세면세 대상 공지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 모든 공지는 수시로 게시되고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적용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함

**<표 2-V-2> 공식관보에 의한 관세면세 대상**

근거법령	대상 물품
중양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sup>1)</sup> (「관세법」 제25조 제1항)	특정 제약회사가 운영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Patient Assistance Programm)에 공급되는 물품(부록 II)
	수출 간주(Deemed Export Schemes) 물품 - 특별경제구역(SEZ)/수출전문기업(EOU)/ 전자하드웨어 기술파크(EHTP)/소프트웨어파크(STP)/바이오테크놀로지파크(BTP) 제도에서의 수입관세
	표본, 모형, 벽 그림(wall picture), 도표(Diagram) 등 제3706호 <sup>2)</sup> 또는 제8523호 <sup>3)</sup> 에 해당하는 영화, 음악, 게임 S/W 등
	미지급 우편물의 재수입
	제작 후 100년 넘은 골동품(미술 작품, 서적 등)
	수출용 완제품 또는 완제품 포장을 위해 수입된 - 외국 원산지의 태그(Tag) 또는 라벨(label) 또는 - 인쇄된 가방(printed bag)
	인도 항공사용 원료, 인도 공군 항공기용 연료 인도 항공사용 케이터링 장비 등
	부통령용 물품(생필품, 주류, 담배, 자동차 등) 외교관용 물품
	국방 및 경찰 관련 물품의 수입 - 단, 휴대용 금속 탐지기, 우편 폭탄 탐지기 등 제외
	엔진 및 항공기 부품의 재수입 - 해외에서 고장난 후 재수입된 엔진 및 특정 부품 - 인도 기업이 외국회사에 대여한 엔진 및 특정 부품
	인도 선수가 획득한 우승컵, 트로피, 메달 등 중등 및 고등 교육 관련 물품 등

주: 1) 각 공식관보상의 고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름  
 2)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에 한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자료: 저자 작성

## 라. 대외무역정책에 따른 관세지원제도

- 인도는 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15-2020)에 따른 다음의 두 가지 관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수출 목적 자본재 관세감면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이하 'EPCG')
  - 수출 목적 자본재 관세면세제도(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이하 'DFIA')
- 상기 관세지원제도의 목적은 수출 목적 자본재에 대한 수입관세의 감면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함

### 1) 수출 목적 자본재 관세감면제도(EPCG)<sup>88)</sup>

- EPCG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수출의무(Export Obligation)를 준수하는 수출기업에 대하여 자본재의 수입관세를 낮춰주는 제도임
  - 동 제도에 따라 관세감면을 신청한 수출기업은 허가권을 발급 받아야 함
    - 허가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수입에 한함
    - 허가권의 갱신, 중고(Second Hand) 자본재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음
  - 수출의무는 수출 관련 자본재의 수입시 감면받은 수입관세의 6배의 해당되는 수출을 상기 허가권 발급일로부터 6년 이내에 이행해야 함
- EPCG의 신청 대상은 인도의 수출 제조업자, 지원 제조업체와 연계된 수출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됨
  - 지원 제조업체는 EPCG의 허가로 수입·조달된 자본재가 소유지의 구역·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를 말함
- EPCG의 신청방법은 인도 상무부 무역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 필요서류는 인도 상무부 "(APPENDICES AND AAYAT NIRYAT FORMS) OF FTP 2015-2020"에서 APPENDIX-5A 및 APPENDIX-5B를 참고<sup>89)</sup>

88) CBEC(2015), pp.97~99

89) 부록 III, IV

## 2) 수출 목적 자본재 관세면세제도(DFIA)<sup>90)</sup>

- DFIA는 수출기업에 대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면세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Output Norms, 이하 'SION')에 해당하는 품목에만 적용됨
    -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었더라도 SION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SION에 해당하는 품목 목록은 인도 상무부 사이트(<http://dgft.delhi.nic.in/>)에서 확인 가능함
- DFIA는 수입 원재료 대비 최소 20%의 부가가치가 요구됨<sup>91)</sup>
- DFIA의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당국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 필요서류는 인도 상무부의 정해진 양식을 따라야 함<sup>92)</sup>
- 한편 DFIA에 따른 수출은 상기 온라인 신청 및 파일번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2 관세의 환급제도

---

- 관세환급제도(Duty Drawback Scheme)는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임
- 「인도 관세법」상 환급제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됨
  - 관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수출에 허용되는 환급
  -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에 대한 환급으로 구분됨

90) CBEC(2015), pp.83~86

91) 인도 상무부, "ANNUAL REPORT 2016-17," p.34

92) 부록 V

## 가. 관세의 환급

### 1) 관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수출에 허용되는 환급<sup>93)</sup>

- 관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수출에 허용되는 환급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임<sup>94)</sup>
  - 수출을 위하여 반출되는 경우 또는 담당 공무원이 수출을 위한 물품의 적재 및 통관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 수하물로 수출되고 담당 공무원이 수출을 위한 물품의 통관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 우편으로 반출되고 담당 공무원이 수출을 위한 물품의 통관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 물품은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이 완료되어야 함
  - 다만 특정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추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출자의 신청은 물품의 수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수수료 지불 등의 조건으로 수출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 물품의 수입 이후 사용된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률은 사용기간과 감가상각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며, 중앙정부가 공식관보상에 고시함<sup>95)</sup>
- 물품은 관세율이 산출된 날짜에 수출된 것으로 보며, 임시로 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경우 임시관세의 납부일을 관세납부일로 봄<sup>96)</sup>

### 2)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에 대한 환급<sup>97)</sup>

-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에 대한 환급대상은 인도에서 제조·가공·공정 작업에 사용된 모든 수입 원자재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임

---

93) 「인도 관세법」 제74조 및 CBEC(2015), p.131

94) 「인도 관세법」 제74조 제1항

95) 「인도 관세법」 제74조 제2항

96) 「인도 관세법」 제74조 제4항

97) 「인도 관세법」 제75조 및 CBEC(2015), p.131

- 수출을 위한 물품의 적재 및 통관 허가에 따라 반출된 물품
- 우편으로 수출된 상품<sup>98)</sup>
- 동 제도의 환급률은 AIR(All Industry Rates, 이하 ‘AIR’)과 Brand Rate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AIR은 매년 수량 및 관세 등의 발생률 평가에 기초한 평균 비율로 환급계획표(Drawback Schedule) 형태로 공지됨
    - AIR은 인도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http://www.cbec.gov.in/htdocs-cbec/customs/dbk-schedule/dbk-idx>)에서 확인 가능함
  - Brand Rate은 수출품의 제조 단위에 관할권을 가진 중앙소비국(Commissionerate of Central Excise)에 의해 결정됨
- 동 제도의 환급 청구 절차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자선하증권에 따른 수출은 선하증권 자체가 관세환급의 청구로 처리됨
  - 환급 청구는 관세환급 규칙에 규정된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완료되며,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될 수 있음
  - 수출품의 수출가격이 해당 물품의 제조나 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의 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허용하지 않음
- 한편 다음의 경우 중앙정부는 공식관보상에 고시하여 수출된 물품에 포함된 재료가 수입 원자재인 것으로 봄<sup>99)</sup>
  - 인도로 수입된 특정 재료의 물량이 인도에서 제조·가공·공정 작업에 사용되어 국외로 수출된 유사한 재료의 총량보다 많을 경우

## 나. 관세환급의 절차

-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세나 이자 납부일로부터 1년 만료 전에 해당 환급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 및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sup>100)</sup>

98) The Customs, Central Excise Duties and Service Tax Drawback(Amendment) Rules, 제11조

99) 「인도 관세법」 제75조 제1A항

100) 「인도 관세법」 제27조 제1항

- 다만 이의 제기(Appeal)에 따라 납부된 관세나 이자의 경우 1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환급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에는 환급신청서 및 각각의 관세환급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가 있음
  - 환급신청서는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사이트([http://www.cbec.gov.in/htdocs-cbec/customs/forms\\_pdf/forms\\_idx\\_final](http://www.cbec.gov.in/htdocs-cbec/customs/forms_pdf/forms_idx_final))에서 확인 가능함
  - <표 2-V-3>는 관세환급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를 정리한 것임

**<표 2-V-3> 관세환급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구분	관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수출에 허용되는 환급<제74조>	수출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에 대한 환급<제75조>
1	적하송장 사본	적하송장 사본
2	통관증명서(Bill of Entry)	은행확인이 완료된 인보이스
3	수입물품의 상업송장	선하증권
4	수입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서류	CIF/CNF 조건에 따른 운송 및 보험 증빙서류
5	재수출물품에 대한 인도중앙은행(RBI)의 허가증	물품검사서
6	수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본선수취증
7	선하증권 사본	L/C 조건일 경우 계약서 사본
8		관세환급액이 명세된 worksheet
9		관세환급 일정표에 맞는 Declaration

자료: Re-export of imported goods(Drawback of Customs duties) Rules, 1995.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환급청구는 수출 통관 후 EDI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접수되며 환급 담당자에 의해 선착순으로 처리됨<sup>101)</sup>

101) CBEC(2015), p.32

- 신청자는 서비스센터 내 문의 창구를 통해 선하증권의 상태와 환급요청에 대한 허가 상태를 확인 가능함
- 만약 신청자가 서비스센터로부터 문의 또는 결함 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적절한 회신을 해야 함
  - 해당 회신이 입력되어야만 EDI 시스템으로 처리될 수 있음
- 관세환급으로 결정된 금액이 과소환급된 경우 수출자는 결정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충 청구를 할 수 있음
  - 다만 3개월의 기간은 조건 및 지불금액에 따라 18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 한편 우편으로 수출된 물품의 관세환급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음<sup>102)</sup>
  - 수하인의 주소를 기재한 외부 포장에는 굵은 글씨로 'DRAWBACK EXPORT'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함
  - 수출자는 해당 소포와 양식(부록 VI)을 작성하여 관할 우체국에 제출해야 함
  - 우체국으로부터 세관담당자가 상기 청구 서식을 수령한 날을 수출자가 환급을 청구 한날로 간주함
  - 또한 상기 청구 양식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15일 이내에 관련 통지를 받아야 하며, 수출자는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관세환급의 이자 및 회수

- 청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환급액이 해당 환급 지급에 대한 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름<sup>103)</sup>
  - 해당 청구인에게 상기 1개월의 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해당 환급액이 지급되는 날까지 정해진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함
- 청구인에게 잘못 환급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름<sup>104)</sup>

102) Re-export of imported goods (Drawback of Customs duties) Rules, 1995, Article3

103) 「인도 관세법」 제75A조 제1항

104) 「인도 관세법」 제75A조 제2항

- 청구인은 요구된 날로부터 2개월 기간 이내에 환금액 이외에 정해진 이율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함
  - 이때 이자액은 해당 환급의 지급일로부터 해당 환급의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출됨
-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환급에 대한 이자의 처리는 다음과 같음<sup>105)</sup>
- 해당 신청인에게 해당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만료 직후부터 해당 관세의 환급일까지 지급되어야 함
  - 이때 연이율 5% 이상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공식관보상의 고지를 통하여 정해놓은 이율에 따름
- 부과되지 않은 관세, 부족하게 부과된 관세, 잘못된 환급 회수의 처리는 다음과 같음<sup>106)</sup>
- 상기 회수의 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공모나 고의의 허위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 이외의 이유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부과되었거나 잘못 환급된 경우
    -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분 납부되었거나 잘못 환급된 경우
  -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다음에 따라야 함
    - 1년 이내에 상기 관세나 이자가 부과되는 사람에게 그가 통지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를 전달해야 함
  - 상기 관세나 이자가 부과되는 자는 다음에 따라야 함
    - 해당 관세에 대한 본인의 확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관세에 기반하여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분 납부된 이자를 납부해야 함
    - 또한 이자와 함께 관세를 납부하였거나 이자를 납부한 사람은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납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105) 「인도 관세법」 제27A조

106) 「인도 관세법」 제28조

## 라. 관세환급의 제한

- 관세환급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을 금지하고 있음<sup>107)</sup>
  - 시장 가격이 환급액보다 낮은 물품
  - 환급액이 50루피보다 적은 물품
  - 중앙정부가 특정 종류의 수출물품이 인도로 밀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식관보상에 고지한 물품<sup>108)</sup>
    - 다만 고지에 명시된 제한 또는 조건의 적용을 받으며 허용할 수 있음
  - 수출품의 가치가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가치보다 낮은 경우<sup>109)</sup>
    - 필요한 경우 수입 원재료의 가치에 대한 최소 가치(minimum value)의 추가는 정부에 의해 규정될 수 있음
  
- 한편 관세환급액은 수출품의 시장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sup>110)</sup>

---

107) 「인도 관세법」 제76조 제1항

108) 「인도 관세법」 제76조 제2항

109) CBEC(2015), p.133

110) CBEC(2015), p.133

## VI. 원산지제도

### 1 개요

---

- 인도는 별도의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인도의 원산지제도는 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제도(Preferential Rules of Origin)와 비특혜원산지제도(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로 구분됨
  - 특혜원산지제도는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됨
    - 자유무역협정(FTA),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등의 다자 및 개별 무역협정이 해당됨
  - 비특혜원산지제도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있어서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됨
  
-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며, 인도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에서 발급 가능함

-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동 기관에서 운영하는 원산지증명서 사후 검증 시스템(Post Verification System)을 통해 확인 가능함
- 한편 인도 정부는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2018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통합한 단일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임
  - 현행 제도는 대외무역국, 수출검사위원회, 수출촉진위원회, 인도수출협회, 국가 및 도시 수준의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서 각종 구비서류의 발급이 필요함
  - 단일 온라인 플랫폼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 특혜원산지제도

- <표 2-VI-1>은 인도의 특혜원산지제도에 해당하는 15개 다자 및 개별 무역협정을 정리한 것임<sup>111)</sup>
  - 이 중 GSP와 GSTP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협정은 FTA, CEPA 등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또는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의 형태로 구성됨

**<표 2-VI-1> 특혜원산지제도에 해당하는 개별 무역협정**

구분	비고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제도(GSTP)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 회원국: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
-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 회원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

111)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http://www.eicindia.gov.in/Services/Compliance/compliance.aspx>

〈표 2-VI-1〉의 계속

구분	비고
- 남아시아협력연합(SAARC)	- 회원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 7개국
- 인도-스리랑카 FTA	
-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 인도-태국 FTA	
- 인도-싱가포르 CECA	
- 인도-칠레 PTA	
- 인도-Mercosur PTA	
- 인도-한국 CEPA	
- 인도-ASEAN FTA	
- 인도-말레이시아 CECA	
- 인도-일본 CEPA	

자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Preferential Tariff Schemes - An Overview*

-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 간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과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둘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상기 15개 협정 중 다음의 4개 협정을 살펴봄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개도국간 특혜관세제도(GSTP)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 한-인도 CEPA

### 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sup>112)</sup>

-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제도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국 등이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우대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임<sup>113)</sup>
  - GSP는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총회에서 정식 발효
  - GSP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도입
  - GSP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장려하고 산업을 육성하며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있음
  
- 인도는 GSP 수혜대상국이며 GSP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인도의 수출자 입장에서는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수입관세 혜택은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
    - 다만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GSP 공여국에서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음
  
- 2017년 12월 기준 인도는 36개 국가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음
  - 한편 상기 국가 이외에도 카자흐스탄(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우크라이나(Ukraine) 등의 국가들이 인도에 대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함
  
- <표 2-VI-2>는 인도에 대하여 GSP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현황을 정리한 것임
  - 유럽(EU)의 경우 28개 회원국 중 24개 회원국이 참여

112)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Preferential Tariff Schemes - An Overview*, pp.5~7

113) 정재호·이명현, 『특혜관세제도 확대의 경제적 효과 연구』, 2015. 12., p.78

〈표 2-VI-2〉 對인도 GSP 공여국 현황

구분	비고
호주(Australia)	
캐나다(Canada)	
일본(Japan)	
뉴질랜드(New Zealand)	
노르웨이(Norway)	
스위스(Switzerland)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벨라루스(Republic of Belarus)	
불가리아(Republic of Bulgaria)	
러시아(Russian Federation)	
터키(Turkey)	
유럽(EU)	Austria, Czech Republic, Belgium, Estonia, Denmark, Cyprus, Finland, Latvia, France, Lithuania, Germany, Hungary, Greece, Malta, Ireland, Poland, Italy, Slovenia, Luxembourg, Slovakia, Netherlands, Spain, Portugal, Sweden

자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Preferential Tariff Schemes - An Overview*, p.6

-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여국이 특혜대상 품목에 대하여 설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며, GSP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됨
- 〈표 2-VI-3〉은 인도의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정리한 것임
  - 해당 품목에 따라 발급기관이 상이함

〈표 2-VI-3〉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발급기관	해당 품목
인도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인도 전역 수출 검사 기관	모든 물품
인도 대외무역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지역 사무소	모든 물품
인도 개발구 위원회(Development Commissioner) : Santa Cruz (Bombay), Cochin, Madras, Falta, Visakhapatnam, Kandla, Noida	각 수출가공구(EPZ) 내 수출전용기업(EOU)에서 제조된 모든 물품
인도 수공업예품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ssioner) : 14개 지역 사무소	수공업예품
인도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12개 지역 사무소	해산물
인도 섬유 위원회(Textiles Committee) : 28개 지역 사무소	섬유 제품
인도 중앙 실크 위원회(Central Silk Board) : 8개 지역 사무소	실크 제품
인도 코이어 위원회(Coira Board) : 코치(Kochi)	코이어(Coira) <sup>1)</sup> 제품
인도 담배 위원회(Tobacco Board) : 쿤투루(Guntur)	담배 제품
인도 향신료 위원회(Spices Board) : 코치(Kochi)	향신료 및 캐슈넛

주: 1) 코코넛에서 추출된 섬유

자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Preferential Tariff Schemes - An Overview*, p.7

## 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sup>114)</sup>

-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이하 'GSTP')  
 제도는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제도임
  - GSTP는 1988년 4월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정식 발효
  - GSTP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교역의 촉진과 경제협력 발전에 있음
  - 인도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4개국이 GSTP 협정국가에 속함

114)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Preferential Tariff Schemes - An Overview*, pp.8~11

- GSTP 협정국과 양허대상 품목의 세부사항은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사이트([http://unctad.org/en/Docs/itcdtab1\\_en.pdf](http://unctad.org/en/Docs/itcdtab1_en.pdf))에서 확인 가능함
- GSTP의 주요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완전생산기준
    -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
  - 부가가치기준<sup>115)</sup>
    -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50% 이상
  - 역내부가가치 누적기준
    -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60% 이상
- <표 2-VI-4>는 인도의 GST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정리한 것임
  - 동 제도에서는 담배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수출검사위원회에서 발급

**<표 2-VI-4> GST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해당기관	해당 물품
인도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인도 전역 수출 검사 기관	모든 물품
인도 담배 위원회(Tobacco Board) : 쿤투루(Guntur)	담배 제품

자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Preferential Tariff Schemes - An Overview*, p.11

### 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제도<sup>116)</sup>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하 'APTA')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 간에 체결된 특혜무역협정임

115) 다만 국가별로 기준가격 및 수입 원자재 사용가득율이 상이함. 예를 들면 캐나다는 공장도가격의 40% 미만의 수입원재료 사용을 허용,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본선인도가격의 50% 미만의 수입 원자재 사용을 허용함

116)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http://www.eicindia.gov.in/Knowledge-Repository/Certification/APTA.aspx>(검색일자: 2017. 8. 25.)

- 1976년 방콕협정으로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간의 무역확대를 통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2006년 9월 1일 APTA로 개정되어 발효
- APTA는 FTA 특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산지 입증은 APTA 협정문 제8조와 부속서(Annex II)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함

### 1) 공동원산지기준

- APTA는 공동원산지규정을 적용하며 주요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완전생산품
    -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55% 이하, 최빈국 완화기준 65% 이하
  - 역내부가가치 누적기준
    -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60% 이상, 최빈국 완화기준 50% 이상
  - 직접운송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상 원산지규정의 운송조건을 충족하고,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

### 2) 원산지증명서

- 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지정한 당국 (이하 '발행당국')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sup>117)</sup>
  - 각 참가국은 발행당국의 이름과 주소 및 원산지증명서에 이서할 공인 인장의 견본을 다른 참가국들에게 통지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다음 규정에 따름<sup>118)</sup>
  -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sup>119)</sup>
    - APTA 원산지증명서 3부

117)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1조

118)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2조

119)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당해 수출물품이 공여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부속서류로 수출기업이 각국의 원산지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해야 함

-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 수출신고필증 원본
- 한편 발행당국은 다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각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와 신청이 적절하게 작성되고 수출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이 되어있거나 전산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
  - 물품의 원산지가 APTA의 원산지 규정과 일치해야 할 것
  -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된 사항이 보충서류에 포함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할 것
  - 품명, 물품의 수량과 중량, 포장 표시와 수, 포장종류와 수가 수출될 상품과 일치하여야 할 것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다음 규정에 따름<sup>120)</sup>
  - APTA 부속서 II에 있는 견본에 맞춰 ISO A4 사이즈이며, 영어로 인쇄될 것
  - 수입자 송부용 원본 1부와 발급당국 보관용 부분 1부(또는 사본)로 구성될 것
  - 각 발행당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여된 고유의 발행번호가 있을 것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한은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임<sup>121)</sup>
  - APTA 협정문상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며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라. 한국-인도 CEPA 원산지제도

-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의 발효에 따라 인도의 일반세율과 특혜관세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한-인도 CEPA는 대한민국 또는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이 부여되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함

120)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3조

12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4조

## 1) 원산지기준

- 한-인도 CEPA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규정은 협정문 본문에서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은 부속서에서 규정함
  - 본문 '제3장 원산지규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다루고 있음
  - 해당 장 '부속서 3-가'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규정함
  
-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두고 있으며,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은 실질변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함
  - 한편 개성공단 생산품 등의 역외가공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원산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역외가공 원산지 특례기준이 있음
  
-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중 「완전생산기준(제3.3조)」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기준임
  -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음
    - 광산물, 농산물, 산동물(출생+사육), 수산물(양식 포함),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원재료 회수용 또는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 등이 해당됨
  - 주의품목은 공해상 어획물과 공해상 해저채취 자원으로 다음과 같음
    - 공해상 어획물은 수출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수출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기준으로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그 밖의 물품 및 선박에서 이들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에 해당
    - 공해상 해저채취 자원은 수출당사국이 탐사권리를 기준으로 수출당사국이 그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에 해당
  
-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중 「실질변형기준(제3.4조)」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기준임
  - 실질변형기준의 일반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35% 역내부가가치기준(RVC)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결합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역내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은 공제법(Build-down method)을 적용<sup>122)</sup>

122) 역내부가가치의 비율=(물품의 본선인도가격-비원산지재료의 가격)/물품의 본선인도가격×100

- 상기 일반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기초농산물(1~14류), 섬유 및 의류제품, 소주, 석유, 석유화학, 철강 및 자동차 등의 955개 품목(6단위 기준)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 적용됨
  
- 원산지결정의 일반적 기준 이외에 원산지의 결정을 보완해 주는 보충적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누적기준(Accumulation): 역내 원재료 사용 누적 인정
  -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역외산 재료비가 본선인도가격의 10%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산지 인정
    - 단, 섬유 및 의류제품의 경우 역외산 섬유재료 중량기준 7% 이하
  - 대체가능재료(Fungible materials): 제조과정에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혼용할 경우 재고물품관리법을 사용하여 원산지 결정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을 선택
  - 직접운송기준(Direct consignment):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를 불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송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거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됨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함
    -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함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 있었어야 함
  
- 역외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의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서는 영역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음
  - 개성공단에 국한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개성공단 한정’ 방식의 역외가공 조항 통해 108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함
  - <표 2-VI-5>는 상기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이며, 이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의류(62류)를 인도로 특혜 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역내산(인도산 또는 한국산) 원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 수출가격 중 역외산 재료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 해당 의류의 총 재료비 가액 중 역내산 원재료비율이 60%를 넘어야 함

**<표 2-VI-5> 한-인도 CEPA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 인정요건**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

- 수출가격 중 역외산 재료비 40% 이하
- 총재료비 중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 일반 원산지기준 충족 필요

자료: 한-인도 CEPA 협정 부속서3-나

-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공정으로서 「불인정공정(제3.6조)」은 해당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순, 경미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 동 조항은 단순, 경미한 가공공정만을 거쳐 우회수입 또는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됨
  - <표 2-VI-6>은 원산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을 정리한 것임

**<표 2-VI-6> 한-인도 CEPA 원산지 불인정공정**

**해당 작업 및 공정**

- 물품을 운송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염수장·통풍·소금 또는 이산화유황에 담그기·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포함)
- 포장·재포장 및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
-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이물질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작업
-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 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 및 조화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
- 단순한 결합, 라벨링,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공정
- 특정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한 직물의 종횡 제단, 감침질(Hemming) 또는 꿰매기(Stitching) 또는 휘감치기(Overlocking)
- 끈, 띠, 구슬, 코드, 고리 및 아일릿 등의 장식품을 함께 재봉·봉합 또는 잇거나 붙이는 방법을 통한 다듬질(Trimming) 및 이들의 결합공정
- 원사·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제품에 대한 표백, 방수, 디케이팅, 수축, 광택가공(Mercerizing)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등의 마무리 공정
-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작업
-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 박편, 파쇄, 압착, 썰기, 연질화 및 뼈제거
-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및 상자 등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단순 포장작업

〈표 2-VI-6〉의 계속

해당 작업 및 공정

- 표식,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 제품에 대한 단순한 혼합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
-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 상품의 특성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
-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둘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자료: 한-인도 CEPA 협정 제3.6조

2) 원산지증명서

- 한-인도 CEP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2개월간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
- 한-인도 CEPA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절차는 협정문 본문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과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에서 규정함
  - 본문 ‘제4장 원산지규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효력, 검증 등의 원산지절차를 다루고 있음
  - 해당 장 ‘부속서 4-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부속서 4-나’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규정함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인도의 경우 수출검사위원회에서 발급함<sup>123)</sup>
  - 〈표 2-VI-7〉은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인장이며, 해당 인장이 날인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123) 한-인도 CEPA 협정 부속서 4-가

〈표 2-VI-7〉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인장

발급기관	인장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자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http://www.eicindia.gov.in>

□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다음 규정에 따름

-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sup>124)</sup>
  -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sup>125)</sup>
  - 원산지소명서<sup>126)</sup>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 등(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사후 발급의 경우 상기 서류에 추가하여 사후발급 사유서, 선하증권 등 선적 입증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다음 규정에 따름

- 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124)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에 갈음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음

- 보세운송신고서 사본(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 한함)
- 영수증, 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했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 한함)

125)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26)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그 밖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 원산지증명서의 구성은 다음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어야 함
  - 인쇄 형태 또는 전자 형태를 포함한 그러한 종류의 매체일 것
  - 영어로 작성된 것일 것
  - 원본 1부와 부분 3부로 구성될 것
-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발급함
  -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부분을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분을 수출자에게 제공, 수출자는 수입항 또는 수입지에 있는 관세당국에 이를 제출하기 위해 원본을 제3부분과 함께 수입자에게 전송, 수입자는 원본을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제3부분을 보유하며, 수출자는 제4부분을 보유함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한은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급기한 이후에는 소급발급도 가능함
- 선적일로부터 7영업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소급발급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음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 인쇄(6번 항목 Remark에 날인)

### 3 비특혜원산지제도(127)

- 인도의 비특혜원산지제도(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는 특혜원산지제도를 목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에 적용됨
- 인도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수출자에 의해 제조된 물품
  - 관세가 납부된 또는 면세인 수입품이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을 초과하는 가공 및 작업을 거친 경우에만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간주됨
    - 먼지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 구성 포함), 세척, 도장, 절단 등 단순작업

- 탁송품의 포장변경, 분해, 조립
  - 얇게 썰기, 병·플라스틱·가방·상자 등의 내부에 절단 또는 재포장 또는 설치, 카드 또는 판지에 부착, 그리고 다른 모든 단순 포장 작업
  - 운송 또는 저장을 위해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이산화황 또는 기타 수용성 용액 처리, 손상부분 제거 기타 유사한 작업)
  - 생산품 또는 포장에 마크·라벨 또는 기타 구분표시 등 부착
  - 단순 혼합
  - 완성품의 구성을 위한 부품의 단순조립
  - 분해
  - 동물의 도축; 그리고
  - 제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희석
- 인도 정부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하기 위한 특정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인도 상무부 “(APPENDICES AND AAYAT NIRYAT FORMS) OF FTP 2015-2020”에서 Appendix-2E를 참고<sup>128)</sup>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sup>129)</sup>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품의 원재료, 원산지, 소모품
  - 상업송장 사본 2부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 해당 기관에서 정한 증명서 1통 당 100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 한편 인도의 수출유공업체제도(Status Holders)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특혜 자체 인증(Non-preferential-Self Certification)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수출유공업체의 분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수출실적에 따라 One star, Two star, Three star, Four star, Five star 등의 5등급으로 구분

---

128) 부록 VII

129) 부록 참고


- 우수 수출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세면제, 통관절차의 신속화, 은행보증 면제 등의 혜택이 있음

#### 4 원산지 사후 검증 시스템


---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에서는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사후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림 2-Ⅶ-1]과 같이 해당 사이트(<http://www.eicindia.net/public/COOstatus.aspx>)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
  - 조회 가능 발급일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 상기 사후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Certificate of Origin Number)가 필요하며,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Certificate Number(C/O 발급번호)
  - Transaction ID(거래자 ID)
  - Scheme Name(적용 협정명, 예: IKCEPA, 한-인도 CEPA)
  - Origin Criteria(원산지 기준)
  - Date of Issuance(발급일자)
  - Date of Submission(발급 신청일)
  - Certifying Officer(발급 담당자)
  - Importing Country(수입국)
  - Exporter Name(Regn. No.)(수출자명, 등록번호.)
  - Place of Issuance(발급지)

[그림 2-VI-1] 원산지증명서 사후 검증 시스템



**भारतीय निर्यात निरीक्षण परिषद**  
**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वाणिज्य एवं उद्योग मंत्रालय, भारत सरकार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Post Verification System**

**Certificate of Origin (CoO)**

Please enter any one of the below asked information to know the status of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from Export Inspection Agencies and its Sub Offices

Transaction ID:  OR CoO Number:

Transaction Id: Unique number written in pencil / pen in the white margin of the certificate  
 CoO Number: Reference number printed in the right hand corner column of the certificate  
 For example: Reference number - EI12345....

\* Please note that the system displays the data of a certificate issued during last 3 years

자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http://www.eicindia.net/public/COOstatus.aspx>(검색일자: 2017. 11. 1.)

## VII. 보세제도

### 1 개요

---

- 인도의 보세제도는 보세창고(Custom Bonded Warehouse) 제도의 형태로 국영 또는 민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인도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창고 보관을 촉진하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음
  
- 보세창고에 물품이 유입되면 수입업자들과 창고의 소유자들은 채권을 발행하며, 다음의 경우 관세가 무효가 됨
  - 수출된 것으로 여겨질 때
  - 국제교역을 위해 선박 혹은 항공으로 복귀회수 될 때
  - 세관의 관리하에 처분될 때
  - 국내 소비를 위해 회수될 때

## 2 보세창고 제도

### 가. 개요

- 인도의 보세창고 제도는 영업용 보세창고(Public warehouse)와 자가용 보세창고(Private warehouse)로 구분됨
- 인도 관세당국은 영업용 보세창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가용 보세창고를 허가할 수 있음
  - 「관세법」 제9장(Chapter IX) 제57조 내지 제58조에 규정
- 보세창고의 운영은 다음의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함<sup>130)</sup>
  - 물품의 반입, 통제, 장치, 이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
  - 물품과 관련된 운영 또는 조치에 대한 각각의 기록을 보관
  - 해당 법령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물품의 샘플 기록을 보관
  - 선하증권, 운송서류, 물품의 이동에 관한 양식 또는 수출증명서류 또는 물품의 인수 또는 이동을 입증하는 서류 및 장치담보 규정에 따른 담보의 사본을 보관

### 나. 영업용 보세창고

- 영업용 보세창고의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관세국장 보좌관 또는 관세부국장은 과세물건이 위탁될 수 있는 영업창고로 장치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sup>131)</sup>
  - 개인 소유의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 민감한 상품에 대하여 25% 세금에 준하는 현금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이 필요함
- 영업용 보세창고의 관리권 지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sup>132)</sup>
  - 창고 관리자의 적합성, 재정 효율성, 재무 상황 및 창고관리 전문성

130) Warehouse (Custody and Handling of Goods) Regulations, 2016

131) 「인도 관세법」 제57조

132) CBEC(2015), p.61

- 관세 및 소비세 규정 준수에 대한 과거 기록
- 지역의 적합성 및 보안성, 통관 전문지식 유무, 이용자 접근성 등의 운영요소
- 세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또는 초과 근무 비용·감리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유 창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가 회수 기준으로 세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함

#### 다. 자가용 보세창고

- 자가용 보세창고의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지불 없이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음
    - 면허소지자가 수입한 과세물품
    - 면허소지자를 대신하여 수입한 과세물품
  - 다만 다음과 같이 특수시설이 필요한 물품은 제외함
    - 벌크 액체(liquids in bulk)
    - 위험물(hazardous goods)
    - 폭발물(explosive goods)
    - 통제된 온도 조건이 요구되는 물품 등
  
- 관세국장 보좌관 또는 관세부국장은 다음의 경우 수입물품이 위탁될 수 있도록 특정 장치장소를 자가창고로 허가할 수 있음<sup>133)</sup>
  - 면허소유자 또는 면허소유자를 대신하여 수입한 과세물건 또는 영업창고에 대한 위탁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또한 자가용 보세창고와 관련하여 관세국장 보좌관 또는 관세부국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음<sup>134)</sup>
  - 면허소유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함으로써 승인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면허소유자가 조항 또는 규칙 또는 규정·고시를 위반하였거나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승인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승인된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때까지 관세국장 보좌관 또는 관세부국장은 해당 면허를 정지할 수 있음

133) 「인도 관세법」 제58조 제1항

134) 「인도 관세법」 제58조 제2항

## 라. 보세창고의 장치 담보

-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된 관세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의 구속력 있는 담보(Warehousing bond)를 제공해야 함<sup>135)</sup>
- 상기 담보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관세법의 조항과 해당 물품에 대한 규칙 및 규정·고시에 대한 모든 준수
  - 독촉고지에 명시된 날짜 당일 또는 이전에 모든 관세, 해당되는 경우 장치기간의 연장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이자
  - 독촉고지에 명시된 날짜 당일 또는 이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차료 및 요금, 동 임차료 및 요금에 대하여 연 18% 이상 36%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이율에 따른 이자
  - 관세법의 조항과 해당 물품에 대한 규칙 및 규정·고시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한 가산세 면책
- 관세국장 보좌관 또는 관세부국장은 수입자로 하여금 보세창고 장치와 관련하여 허락하는 금액의 일반적인 담보를 제공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sup>136)</sup>
- 수입자가 제공한 담보는 물품의 양도 또는 다른 보세창고로의 물품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효함<sup>137)</sup>
  - 다만 타인에게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된 물품에 부과된 관세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과 동일한 신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양도인이 제공한 담보는 제공되는 담보액 중 양수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 담보를 차감한 금액으로만 집행이 가능함
- 보세창고 장치 담보 규정이 준수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보세창고 물품의 장치를 허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35) 「인도 관세법」 제59조 제1항

136) 「인도 관세법」 제59조 제2항

137) 「인도 관세법」 제59조 제3항

## 마.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 1) 일반적인 장치기간

- 인도는 수출전용기업(Export Oriented Units, 이하 ‘EOU’) 제도에 따라 물품이 보세창고에 장치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음<sup>138)</sup>
  - EOU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내수시장 판매분을 제외한 재화와 서비스를 100% 수출하는 기업이며, 특별경제구역(이하 ‘SEZ’) 제도와 상호 보완적인 제도로 도입됨
  - SEZ는 특정 지역과 그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EOU는 해당 기업이 인도 내 어디에 설립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표 2-Ⅶ-1>은 보세창고의 일반적인 장치기간을 정리한 것임
  - 100% EOU에 사용되는 자본재의 경우 5년의 만료기간, 100% EOU에 사용되는 자본재 이외의 물품의 경우 3년의 만료기간, 그리고 그 밖의 물품은 1년의 만료기간을 규정함

**<표 2-Ⅶ-1> 일반적인 보세창고 장치기간**

구분	장치기간
100% EOU에 사용하기 위한 자본재	5년
100% EOU에 사용하기 위한 자본재 이외의 물품	3년
그 밖의 물품	1년

자료: 「인도 관세법」 제61조 제1항

### 2) 예외적인 장치기간

-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세창고에 장치될 수 있는 기간이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sup>139)</sup>

138) 「인도 관세법」 제61조 제1항

139) 「인도 관세법」 제61조 제1항

- <표 2-Ⅶ-2>는 예외적인 보세창고 장치기간을 정리한 것임
  - 변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 물품의 경우 충분한 원인이 제시될 때, 100% 수출용 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차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음
  - 그 밖의 경우에는 관세차장이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연장 또는 관세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장치기간이 1년인 그 밖의 물품이 변질 가능성이 많은 경우 관세차장은 1년의 기간을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축소할 수 있음
  - 다만 자가창고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창고에 장치된 물품의 소유자는 해당 취소에 대한 통지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담당 공무원이 허락하는 연장 기간 이내에 한함
    - 이러한 경우 해당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물품을 이동하거나 국내 소비 또는 수출을 위하여 통관하여야 함

**<표 2-Ⅶ-2> 예외적인 보세창고 장치기간**

구분		장치기간
변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 물품의 경우 충분한 원인이 제시될 때	100% 수출하려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관세차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을 연장
	그 밖의 경우	관세차장이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연장 관세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기간을 연장
일반적인 장치기간이 1년인 그 밖의 물품이 변질 가능성이 많은 경우		1년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축소
자가창고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취소에 대한 통지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담당 공무원이 연장하는 기간 이내

자료: 「인도 관세법」 제61조 제1항

## 바. 기타 장치규정

- 장치물품에 대한 통제는 다음 규정에 따름<sup>140)</sup>
  - 모든 장치물품은 담당 공무원의 통제를 받음
  - 담당 공무원의 허가 없이는 보세창고에 진입 또는 해당 창고에서 물품 반출을 할 수 없음
  - 담당 공무원은 관세국(Customs Department)의 잠금장치를 통해 보세창고를 관리하며 해당 잠금장치를 제거 또는 파손할 수 없음
  - 담당 공무원은 보세창고의 모든 구역에 접근할 수 있으며 창고내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임차료 및 보세창고료의 지급은 다음 규정에 따름<sup>141)</sup>
  - 장치물품의 소유자는 보세창고관리인에게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요율 또는 정해진 요율이 없는 경우 관세차장이 정한 요율에 따라 임차료 및 보세창고료를 지불해야 함
  - 임차료나 보세창고료가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보세창고 관리인은 장치물품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담당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보세창고 관리인의 선택에 의하여 충분한 물량의 물품이 매각되도록 할 수 있음
  
- 장치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화주의 권리는 다음 규정에 따름<sup>142)</sup>
  - 물품의 검사
  - 손상 또는 변질된 물품을 구분
  - 물품의 보존, 판매, 수출 또는 폐기를 목적으로 물품을 선별 또는 물품의 컨테이너를 변경
  - 물품의 멸실 또는 변질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으로 물품 및 물품 컨테이너를 취급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전시
  - 국내소비를 위한 신고·통관 없이 물품의 샘플을 반출
    - 담당 공무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해당 샘플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음

---

140) 「인도 관세법」 제62조

141) 「인도 관세법」 제63조

142) 「인도 관세법」 제64조

- 보세창고 물품에 관련된 제조 및 기타 작업은 다음 규정에 따름<sup>143)</sup>
  - 장치물품의 소유자는 관세국장 보좌관 또는 관세부국장의 허가를 받고 제조공정 또는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기타 작업을 할 수 있음
  - 상기 작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됨
    - 해당 작업을 통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출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함유된 장치물품의 수량에 따라 수입관세가 감면됨
    - 해당 작업을 통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보세창고에서 통관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함유된 장치물품의 수량에 따라 수입관세가 부과됨
  
- 보세창고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임<sup>144)</sup>
  - 보세창고 물품에 관련된 제조 및 기타 작업에 관한 조항에 따라 수입 원자재가 사용 되는 경우
  - 수입 원자재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관세율이 해당 물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 중앙정부가 국내산업의 설립이나 개발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름<sup>145)</sup>
  - 장치물품의 화주는 담당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장치물품의 보세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이동할 수 있음
  - 이때 이동이 허가되는 보세창고 장치물품은 기한내 이동을 위하여 규정된 조건이 적용됨
  
- 국내소비를 위한 장치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함<sup>146)</sup>
  -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국내소비를 위한 신고서, 수입신고서가 규정된 서식으로 제출된 경우

---

143) 「인도 관세법」 제65조

144) 「인도 관세법」 제66조

145) 「인도 관세법」 제67조

146) 「인도 관세법」 제68조

- 해당 물품에 부과할 수 있는 수입관세 및 모든 가산세, 임차료, 이자 및 해당물품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기타 요금이 납부된 경우
  - 국내소비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통관 명령을 내린 경우
- 수출을 위한 장치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관세 납부 없이 통관이 가능함<sup>147)</sup>
-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규정된 서식의 운송신고서·선적신고서 또는 수출신고서가 제시된 경우
  - 수출관세, 가산세, 임차료, 이자 및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기타 요금이 납부된 경우
  - 수출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통관 명령을 내린 경우

---

147) 「인도 관세법」 제69조

## VIII. 수입규제

### 1 개요

---

- 인도는 제조업 진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수출을 증진시키는 무역정책을 펴고 있음<sup>148)</sup>
  - 인도 정부는 화학, 기초금속, 기계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반덤핑 제도가 빈범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對인도 주요 수출품목 중 화학, 기초금속, 기계 등은 빈번한 무역 구제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또한 인도는 전 세계에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로 다양한 수입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음<sup>149)</sup>
  - 인도는 최근 20년(1997~2016.6) 동안 총 791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총 42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함
    - 2016년 상반기에만 4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반면, 상계관세는 최근 20년간 3건이 모두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화학, 전기 및 철강 분야에 각각 1건씩의 조사를 개시함

---

14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보호무역조치 동향과 시사점』, 2017. 3., p.4

149) 외교부,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2017. 9., p.96

- 또한 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등을 활용하고 있음
- 한편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통관지연이나 통관절차상의 규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4년 1월 우리나라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의 통관시스템 고장 및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규정해석으로 통관업무 지연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알려짐<sup>150)</sup>
  - 반면, 2017년 10월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델리와 뭄바이에서는 전자 및 모바일 플랫폼의 사용 증가로 인해 수출입 규정을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함<sup>151)</sup>

## 가. 관세장벽

-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에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sup>152)</sup>
-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음<sup>153)</sup>
  - 인도의 관세는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 2016/2017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세수 중 14.1%를 차지하고 있음
  - 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주요 공산품의 최고 관세율(Peak rate)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 2007년에는 10%로 인하
    - 10% 수준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
    - 2010년에는 다시 10%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

---

150)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제로(Zero) 길라잡이』, 2014. 1., p.30

151) 세계은행(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7/10/31/doing-business-2018-fact-sheet-india>(검색일자: 2017. 11. 10.)

152) 산업통상자원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6. 12., p.4

153) 산업통상자원부(2016), p.15

## 나. 무역구제

### 1) 반덤핑관세

#### 가) 반덤핑 법령과 운용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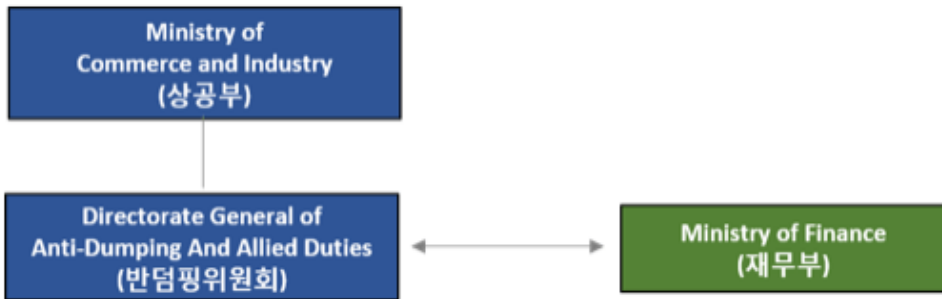
- 반덤핑 조사를 관장하는 국내법령으로는 관세법과 반덤핑 조사 시행령이 있음<sup>154)</sup>
  - Customs Tariff Act, 1975 Sections 9A, 9AA, 9B, and 9C(as amended in 1995 and thereafter)
  - Customs Tariff(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Anti-Dumping Duty on Dumped Articles and for Determination of Injury) Rules, 1995(as amended)
    - 1985년 제정된 반덤핑 관련법은 Anti-Dumping Rules, CT Rules, Rules 등으로 칭하며, 1995년에 WTO 반덤핑협정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음
    - 반덤핑규정의 구성은 짧은 전문(Preamble)과 총 24개의 규정(Rule) 그리고 2개의 부속서(Annex)로 이루어져 있음
  
- 한편 인도는 전 세계 최고의 반덤핑 규제국이지만 1985년이 되어서야 반덤핑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1992년까지는 반덤핑조치를 활용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음<sup>155)</sup>
  
- 인도의 반덤핑관세 제도 운용기관은 반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반덤핑위원회(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 Allied Duty: DGAD)와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재무부로 이원화 되어 있음
  - 반덤핑위원회는 1998년 설립된 상무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조사, 우회덤핑 조사, 외국기관의 국내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

154) 이서영·임병진, 『인도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관세학회지, 2017. 5., p.83

155) 이서영(2017), p.83

- 재무부는 5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업무는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 재무부는 대외적으로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덤핑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

[그림 2-Ⅷ-1] 인도 반덤핑관세 제도 운용기관 현황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검색일자: 2017. 9. 20.)

나) 반덤핑 조사절차

- <표 2-Ⅷ-1>은 반덤핑 조사 절차를 정리한 것임<sup>156)</sup>
  -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최종결과 공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부과를 공고하고 있음

<표 2-Ⅷ-1> 반덤핑 조사 절차

순서	절차	내용	기간
1	사전검토	반덤핑위원회의 신청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자료 불충분 시 통지	조사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조사 개시	반덤핑위원회의 조사 개시	조사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3	덤핑 예비판정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조사개시일로부터 150일 이내

156)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검색일자: 2017. 9. 20.)

〈표 2-VIII-1〉의 계속

순서	절차	내용	기간
4	덤핑 잠정조치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예비판정일 이후로부터 6개월까지 부과가능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부과가능)
5	공청회	반덤핑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해관계자에게 구두진술(Oral Evidence)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6	최종판정	반덤핑위원회의 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하여 재무부에 제출	예비판정일로부터 150일 이내 (조사개시일 이후 1년 이내 최종판결을 내림. 단, 재무부 판단에 따라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
7	관세부과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최종판정을 근거로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공고 및 부과	최종판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재심절차	반덤핑 관세는 5년간 유효하고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관세 유지 여부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는데, 재심은 반덤핑위원회 회의 판단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	반덤핑위원회의 판단 또는 이해관계자의 재심 요청시로부터 재심시작 후 12개월 이내 종료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검색일자: 2017. 9. 20.)

#### 다) 반덤핑제도 운용현황

- 2017년 우리나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는 전 세계에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임<sup>157)</sup>
- 또한 인도는 브라질과 함께 다른 나라의 반덤핑 규제를 받는 과정에서 반덤핑 조사제도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도국이라 할 수 있음<sup>158)</sup>

157) 외교부(2017), p.96

158) 정재호·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138

□ <표 2-Ⅷ-2>는 최근 10년간(2008~2017년) 인도의 반덤핑 조사 건수를 정리한 것임

○ 동 기간 중 인도 정부는 총 390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함

**<표 2-Ⅷ-2> 최근 10년간 인도의 반덤핑 조사 건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건수 <sup>1)</sup>	55	31	41	19	21	29	38	30	69	34	390

주: 1) 조사 기간은 199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Forms/TableView.aspx?mode=modify&action=search>  
(검색일자: 2018. 1. 2.)

## 2) 상계관세

□ 인도의 상계관세 조사는 중국에 대하여 화학, 전기 및 철강 분야에서 총 3건을 실시한 것이 전부임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sup>159)</sup>에 의해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중 낮은 것을 관세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행한다 하더라도 관세율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sup>160)</sup>

□ <표 2-Ⅷ-3>은 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정리한 것임<sup>161)</sup>

○ 한편 조사신청은 반드시 상계가능 보조금의 존재,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조사개시를 정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에 근거해야 함

159) 덤핑 판정시 덤핑 마진과 산업피해 마진 중 낮은 것을 부과함

160) 외교부(2017), p.108

161)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검색일자: 2017. 9. 20.)

〈표 2-VIII-3〉 상계관세 조사 절차

순서	절차	내용
1	조사신청	서면 신청
2	조사개시	서면 검토 후 조사 여부 판단
3	예비판정	보조금 존재 여부 및 국내 산업 피해 여부
4	잠정조치	4개월 미만 부과
5	협상	가격 협상 등으로 조사 중단 및 결정
6	최종판정	조사개시 1년 이내 확정 및 최종판정 공고일 3개월 이내 관세 부과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검색일자: 2017. 9. 20.)

### 3) 세이프가드

- 인도의 세이프가드 제도는 세이프가드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afeguards), 세이프가드 상임위원회, 고등법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 세이프가드 총국은 2003년 설립된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조사 및 부과권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세이프가드 상임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총국이 제출한 권고를 승인, 거부,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최종 부과를 담당함
    - 상무부 장관(의장), 재무부 장관, 산업정책촉진부 장관, 농림부 장관, 외교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계 법령은 인도 관세법, 세이프가드 관세규정, GATT 1994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 등임
  - 국내법 규정은 「관세법」 제8B조, 제8C조, 세이프가드 관세규정이 있음
  - 국제법 규정은 「GATT 1994」 제19조(1항a)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함
- 한편 인도는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을 두고 있음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기존 보다 쉽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표 2-Ⅷ-4>는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정리한 것임<sup>162)</sup>

**<표 2-Ⅷ-4>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

순서	절차	내용
1	조사신청	세이프가드 총국 또는 국내기업의 청원 접수
2	조사개시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 실시
3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자 21일 이내 참여 여부 결정 및 30일 이내 질문서 제출
4	잠정조치	200일 미만 부과 가능
5	피해판정	조사개시 8개월 이내
6	확정부과	4년간 부과 가능
7	재심	3년 이내 재검토 및 조사개시 이후 10년 이상 관세 부과 불가
8	항소	고등법원 접수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검색일자: 2017. 9. 20.)

## 다. 비관세장벽

### 1) 식품 및 라벨링 규정

□ 인도의 수입식품 통관 기준은 다음 규정에 따름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ood Safety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의 식품안전기준(수입) 규정 2017(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Import) Regulation, 2017)

□ 상기 규정은 다음 규정에 유의해야 함<sup>163)</sup>

162)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검색일자: 2017. 9. 20.)

- 중앙허가청의 식품 수입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식품 수입은 불가능함
    - 식품 수입업자는 상무부 대외무역총국(DGFT)에 등록
    - 중앙면허청(Central Licensing Authority)의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를 취득
  - 유통기한(shelf life)이 60% 미만 남은 식품은 통관이 불가능함
    - 제조일자로부터 적하목록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60%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포장된 수입식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단일 스티커를 주요 표시 옆에 부착해야 함
    -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 식품안전기준청의 로고 및 허가번호
    - 채식(Veg) 또는 비채식(Non-Veg) 로고
    - 전매식품의 명칭
    - 구성요소 및 분류 또는 하위분류
  - 식품안전기준청은 식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시, 경보, 지침 등을 공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금지 및 제한은 즉시 공지해야 함
    - 이를 위해 식품의 통관, 거부, 경매, 폐기와 관련된 통관당국, 항만당국, 기타 기관은 매분기별 식품안전기준청에 관련된 모든 통계표를 제공해야 함
  - 식품안전기준청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특정 범주의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
-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식품의 라벨링은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의 기본 요건을 준수해야 함<sup>164)</sup>
- 라벨링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영어 또는 힌두어로 표기되어야 함
  - 사전포장식품(Pre-packaged food) 라벨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 등 오해를 유발하는 문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라벨은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쉽게 지울 수 없어야 함
  - 용기(container)가 포장지에 의해 덮여 있는 경우 포장지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표시하여 부착해야 함
  - [그림 2-VIII-2]과 같이 녹색(Green colour)의 채식주의자(Vegetarian) 로고 또는 갈색(Brown colour)의 비채식주의자(Non-Vegetarian) 로고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163)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 2017.

164)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Food Safety and Standards(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 2011, 2.2.1: General Requirements

[그림 2-Ⅷ-2] 인도의 채식주의자 및 비채식주의자 로고


채식주의자(Vegetarian) 로고	비채식주의자(Non-Vegetarian) 로고
	

자료: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Food Safety and Standards(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 2011, 2.2.2 (4), Declaration regarding Veg or Non veg

## 2) BIS 인증

- 인도 표준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은 특정 품목에 대하여 ISI (Indian Standards Institute) 마크를 발급하는 BIS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165)</sup>
  - 인도 표준청은 국가 표준기구로서 인도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공업 표준규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
- [그림 2-Ⅷ-3]은 BIS 인증에 따른 ISI 마크임

[그림 2-Ⅷ-3] BIS 인증에 따른 ISI 마크

구분	ISI 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기관: 인도 표준청(BIS)</li> <li>- 발급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비용(환불불가): 1,000루피(Rs)</li> <li>• 심사비용: 1일 4,000루피, 이후부터 1일당 3,000루피</li> <li>• 마크사용비용: 가변적임</li> <li>• 연간유지비용: 1,000루피</li> </ul> </li> <li>- 소요기간: 3~6개월(품목별 상이)</li> <li>- 갱신기간: 1년</li> </ul>	

자료: 인도 표준청, [http://www.bis.org.in/cert/prod\\_cert\\_scheme.asp](http://www.bis.org.in/cert/prod_cert_scheme.asp)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 정보시스템, <http://www.certinfo.or.kr>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 11. 1.)

165) 인도 표준청, [www.bis.org.in](http://www.bis.org.in)(검색일자: 2017. 10. 20.)

- BIS 인증 대상품목은 크게 자발적 인증과 강제인증으로 구분됨<sup>166)</sup>
  - BIS 인증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인증제도이며, 제품 테스트, 공장에 대한 품질 및 경영 시스템의 심사, 승인을 통하여 제품 인증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임
  
- 강제인증은 시장출시를 위해 ISI 마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제도 (Mandatory Certification Scheme)와 전자제품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는 강제등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로 구분됨
  - 의무인증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BIS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임
    - 반드시 ISI 마크를 부착해야만 시장 출시가 가능함
    - 시장 출시 이후에도 샘플검사 등 지속적 관리를 받아야 함
  - 반면 강제등록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BIS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자가 검토 등을 받아야 하는 품목임
    - 강제등록품목은 의무인증품목 보다 절차가 간소함
  
- <표 2-VIII-5>는 BIS 의무인증제도가 적용되는 품목 목록을 정리한 것임
  - 주요 품목 분류는 다음의 12개 품목이며, 총 112개 세부품목으로 구성됨
    - 시멘트(Cement) 13개 품목
    - 가전용품(Household Electrical goods) 16개 품목
    - 식품 및 관련 제품(Food & Related Products) 15개 품목
    - 유압스토브(Oil Pressure Stoves) 3개 품목
    - 자동차용품(Automobile Accessories) 4개 품목
    - 실린더·밸브(Cylinder, Valves) 15개 품목
    - 의료기기(Medical Equipment) 3개 품목
    - 강철제품(Steel Products) 35개 품목
    -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Products) 3개 품목
    -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s) 1개 품목
    - 전기모터(Electrical Motors) 1개 품목
    - 콘덴서(Capacitors) 3개 품목

16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6. 12., p.22

□ 한편 특정 품목의 공지(Notifica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도 표준청 사이트 (<http://www.bis.org.in/cert/ProdUnManCert.asp>)에서 확인 가능함

〈표 2-Ⅷ-5〉 BIS 의무인증이 적용되는 품목 목록

Sr No.	IS No.	Product
Cement		
1.	IS 12330	Sulphate Resisting Portland Cement
2.	IS 12600	Low heat Portland Cement
3.	IS 1489(Part 1)	Portland Pozzolana Cement–Part1 Fly–ash based
4.	IS 1489(Part 2)	Portland Pozzolana Cement–Part 2 Calcined clay based
5.	IS 269	Ordinary Portland Cement
6.	IS 3466	Masonry Cement
7.	IS 455	Portland Slag Cement
8.	IS 6452	High Alumina Cement for Structural use
9.	IS 6909	Super sulphated cement
10.	IS 8041	Rapid hardening Portland cement
11.	IS 8042	White Portland Cement
12.	IS 8043	Hydrophobic Portland Cement
13.	IS 8229	Oil well Cement
Household Electrical goods		
14.	IS 12640(Part 1)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s for house hold and similar uses–Part 1 Circuit breakers without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 (RCCBs)
15.	IS 12640(Part 2)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s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s–Part 2 Circuit breakers with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RCVOs)
16.	IS 13010	AC watt–hour meters, class 0.5, 1 & 2
17.	IS 13779	AC static watt–hour meters, class 1 & 2

〈표 2-VIII-5〉의 계속

Sr No.	IS No.	Product
18.	IS 14697	AC static transformer operated watt-hour and VAR-hour meters, class 0.2S & 0.5S
19.	IS 15111(Part 1 & 2)	Self Ballasted Lamps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 Part 1 : Safety Requirements & Part 2 : Performance Requirements
20.	IS 302(Part 2/Sec 3)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Electric iron
21.	IS 302(Part 2/Sec 201)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Electric immersion water-heaters
22.	IS 302(Part 2/Sec 202)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Electric stoves
23.	IS 302(Part 2/Sec 30)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Room heaters
24.	IS 3854	Switches for domestic and similar purposes
25.	IS 418	Tungsten filament general service electric lamps (upto100 W)
26.	IS 694	PVC insulated cables for working voltages up to and including 1100V
27.	IS 8144	Multi-purpose dry batteries
28.	IS 8828 <sup>1)</sup>	Electrical Accessories-Circuit breakers for overcurrent protection for household and similar installations
29.	IS 9968(Part 1)	Elastomer insulated cables (Part,1): For working voltages up to and including1100 V
Food & Related Products		
30.	IS 15757	Follow-up formula -complimentary foods
31.	IS 11536	Processed cereal based complementary foods
32.	IS 1165	Milk-powder
33.	IS 1166	Condensed milk, partly skimmed and skimmed condensed milk

〈표 2-Ⅷ-5〉의 계속

Sr No.	IS No.	Product
34.	IS 12176	Sweetened ultra high temperature treated condensed milk
35.	IS 13334(Part 1)	Skimmed milk-powder, standard grade
36.	IS 13334(Part 2)	Skimmed milk-powder, extra grade
37.	IS 13428	Packaged Natural Mineral Water
38.	IS 14433	Infant milk substitutes
39.	IS 14542	Partly skimmed milk powder
40.	IS 14543	Packaged Drinking Water (Other than Packaged Natural Mineral Water)
41.	IS 1656	Milk-cereal based weaning foods
42.	IS 3470	Hexane, Food grade
43.	IS 14625	Plastic Feeding Bottles
44.	IS 5168	Glass Feeding Bottles
Oil Pressure Stoves		
45.	IS 10109	Oil pressure stove, offset burner type
46.	IS 2787	Multi-burner oil pressure stoves
47.	IS 1342	Oil pressure stoves
Automobile Accessories		
48.	IS 13098	Automotive vehicles -Tubes for pneumatic tyres
49.	IS 15627	Automotive vehicles- Pneumatic tyres for two and three-wheeled motor vehicles
50.	IS 15633	Automotive vehicles-Pneumatic tyres for passenger car vehicles- Diagonal and radial ply
51.	IS 15636	Automotive vehicles- Pneumatic tyres for commercial vehicles-Diagonal and radial ply
Cylinder, Valves and Regulation		
52.	IS 14899	Liquefied petroleum gas containers for automotive use
53.	IS 15100	Multifunction valve assembly for permanently fixed liquefied petroleum gas (LPG) containers for automotive use
54.	IS 3196(Part 4)	Welded low carbon steel cylinders exceeding 5 litre Water capacity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Part 4 Cylinders for toxic and corrosive gases

〈표 2-VIII-5〉의 계속

Sr No.	IS No.	Product
55.	IS 3196(Part 1)	Welded low carbon steel gas cylinder exceeding 5 litre water capacity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Part1 Cylinder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LPG)
56.	IS 3196(Part 2)	Welded low carbon steel gas cylinder exceeding 5-litre water capacity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Part 2 Cylinders for liquefiable gases other than LPG.
57.	IS 3224	Valve fittings for compressed gas cylinder excluding liquefied petroleum gas cylinders
58.	IS 3745	Yoke Type Valve Connection for Small Medical Gas Cylinders
59.	IS 7142	Welded low carbon steel cylinders for low pressure liquefiable gases not exceeding 5 litre water capacity
60.	IS 7285(Part 1)	Refillable Seamless steel gas cylinders Part1 Normalized steel cylinders
61.	IS 7285(Part 2)	Refillable Seamless steel gas cylinders Part 2 Quenched and tempered steel cylinders with tensile strength less than 1100 MPa (112 kgf/mm <sup>2</sup> )
62.	IS 7302	Valve fittings for gas cylinder valves for use with breathing apparatus
63.	IS 7312	Welded and seamless steel dissolved acetylene gas cylinders
64.	IS 8737	Valve fittings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 cylinders of more than 5 litre water capacity Part 2 Valve fittings for newly manufactured LPG cylinders
65.	IS 8776	Valve Fittings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 (LPG) Cylinders up to and Including 5-Litre Water Capacity
66.	IS 9798	Low pressure regulators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 (LPG) mixtures
Medical Equipment		
67.	IS 3055(Part 1)	Clinical thermometers: Part1 Solid stem type

〈표 2-Ⅷ-5〉의 계속

Sr No.	IS No.	Product
68.	IS 3055(Part 2)	Clinical thermometers: Part 2 Enclosed scale type
69.	IS 7620(Part 1)	Diagnostic Medical X-Ray Equipment
Steel Products		
70.	IS 1785(Part 1)	Plain Hard-drawn Steel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Part 1 Cold Drawn Stress-relieved Wire
71.	IS 1785(Part 2)	Plain hard-drawn steel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Part 2: As drawn wire
72.	IS 13620	Fusion bonded epoxy coated reinforcing bars
73.	IS 14268	Uncoated Stress Relieved Low Relaxation Seven-ply Strand For Pre-stressed Concrete
74.	IS 277	Galvanized steel sheets (plain and corrugated)
75.	IS 6003	Indented wire for Pre-stressed concrete
76.	IS 6006	Uncoated stress relieved strand for Pre-stressed concrete
77.	IS 15391	Cold Rolled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Sheet and Strip - Semi-Processed Type
78.	IS 1786	High strength deformed steel bars and wires for concrete reinforcement.
79.	IS 2002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for intermediate and high temperature service including boilers
80.	IS 2041	Steel plates for pressure vessels used at moderate and low temperature
81.	IS 2062	Hot rolled medium and high tensile structural steel
82.	IS 2830	Carbon steel cast billet ingots ,billets, blooms and slabs for rerolling into steel for general structural purpose
83.	IS 648	Cold rolled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sheets and strip-fully processed type (CRNO)
84.	IS 3024	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 sheet & strip (CRGO)
85.	IS 8329	Centrifugally cast (spun) ductile iron pressure pipes for water, gas and sewage
86.	IS 9523	Ductile iron fittings for pressure pipes for water, gas and sewage

〈표 2-VIII-5〉의 계속

Sr No.	IS No.	Product
87.	IS 1161	Steel tubes for structural purposes
88.	IS 1239(Part 1)	Steel Tubes, Tubulars and Other Wrought Steel Fittings – Part 1 : Steel Tubes
89.	IS 4270	Steel tubes used for water-wells (upto 200 mm dia)
90.	IS 432(Part 1)	Mild Steel and Medium Tensile Steel Bars and Hard-Drawn Steel Wire for Concrete Reinforcement: Part 1 Mild steel and medium tensile steel bars
91.	IS 432(Part 2)	Mild steel and Medium Tensile steel bars and Hard-Drawn Steel Wire for Concrete Reinforcement: Part 2 Hard- Drawn Steel Wire
92.	IS 2879	Mild steel for metal arc welding electrodes
93.	IS 3502	Steel Chequered Plates
94.	IS 5872	Cold Rolled Steel Strips (Box Strappings)
95.	IS 6240	Hot Rolled Steel Plate (up to 6 mm) Sheet and Strip for the Manufacture of Low Pressure Liquefiable Gas Cylinders
96.	IS 7887	Mild steel wire rods for general engineering purposes
97.	IS 15647	Hot rolled steel narrow width strip for welded tubes and pipes
98.	IS 513	Cold reduced low carbon steel sheets and strips
99.	IS 1079	Hot Rolled Carbon Steel Sheet and Strip
100.	IS 1875	Carbon steel billets, blooms, slabs and bars for forgings
101.	IS 5986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for Structural Forming and Flanging Purposes
102.	IS 7283	Hot Rolled bars for production of bright bars and machined part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103.	IS 10748	Hot Rolled Steel Strip for Welded Tubes and Pipes
104.	IS 11513	Hot Rolled Carbon Steel Strip For Cold Rolling Purposes

〈표 2-Ⅷ-5〉의 계속

Sr No.	IS No.	Product
Stainless Steel Products		
105.	IS 5522	Stainless Steel Sheets and Strips for Utensils
106.	IS 6911	Stainless Steel Plate, Sheet and Strip-Specification
107.	IS 15997	Low Nickel austenitic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for Utensils and Kitchen Appliances-Specification
Electrical Transformers		
108.	IS 1180(Part 1)	Out door type Oil immersed Distribution Transformers upto and including 2500 kVA, 33 KV-specification Part 1 Mineral oil immersed
Electrical Motors		
109.	IS 12615	Energy Efficient Induction Motors-Three Phase Squirrel Cage
Capacitors		
110.	IS 2993	A.C. motor capacitors
111.	IS 13340	Power Capacitors of Self-healing Type for AC Power Systems having Rated Voltage up to 650V
112.	IS 13585(Part 1)	Shunt Power Capacitors of the Non-Self-Healing Type for AC System having a Rated Voltage up to and Including 1000V Part-1 General Performance, Testing and Rating Safety Requirements Guide for Installation and Operation

주: 1) Since revised as IS/IES 60898

자료: 인도 표준청, <http://www.bis.org.in/cert/ProdUnManCert.asp>(검색일자: 2017. 10. 20.)

- <표 2-VIII-6>은 BIS 강제인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가 적용되는 품목 목록을 정리한 것임

**<표 2-VIII-6> BIS 강제인증이 적용되는 전자제품 목록**

Sr No.	IS No.	Title	Product Category
1.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Electronic Games (Video)
2.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Laptop/Notebook/Tablets
3.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Plasma/ LCD/LED Televisions of screen size 32" & above
4.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Optical Disc Players with built in amplifiers of input power 200W and above
5.	IS 302-2-25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Section 25 Microwave ovens	Microwave Ovens
6.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Visual Display Units, Video Monitors of screen size 32" & above
7.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Printers, Plotters
8.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Scanners
9.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Wireless Keyboards

〈표 2-Ⅷ-6〉의 계속

Sr No.	IS No.	Title	Product Category
10.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Telephone Answering Machines
11.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Amplifiers with input power 2000W and above
12.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Electronic Musical Systems with input power 200W and above
13.	IS 302-2:26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Section 26 Clocks	Electronic Clocks with Mains Powers
14.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Set Top Box
15.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General Requirements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16.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General Requirements	Power Adaptors for IT Equipments
17.	IS 616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	Power Adaptors for Audio, Video &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18.	IS 16242(Part 1)	General and Safety Requirements for UPS	UPS/Invertors of rating ≤ 5kVA
19.	IS 15885(Part 2/ Sec 13)	Safety of Lamp Control gear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Section 13 d.c. or a.c. Supplied Electronic Control gear for LED Modules	DC or AC Supplied Electronic Control gear for LED Modules

〈표 2-VIII-6〉의 계속

Sr No.	IS No.	Title	Product Category
20.	IS 16046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Safety Requirements for Portable sealed secondary cells, and for Batteries made from them for use in portable applications	Sealed Secondary Cells/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for use in portable applications
21.	IS 16102(Part 1)	Self-Ballasted LED Lamps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Part 1 Safety Requirements	Self-Ballasted LED Lamps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22.	IS 10322(Part 5/ Sec 1)	Luminaries Part 5 Particular Requirements Sec 1 Fixed General purpose luminaries	Fixed General Purpose LED Luminaries
23.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General Requirements	Mobile Phones
24.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General Requirements	Cash Registers
25.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General Requirements	Point of Sale Terminals
26.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General Requirements	Copying Machines/Duplicators
27.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General Requirements	Smart Card Readers
28.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General Requirements	Mail Processing Machines/Postage Machines/Franking Machines
29.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General Requirements	Passport Reader

〈표 2-Ⅷ-6〉의 계속

Sr No.	IS No.	Title	Product Category
30.	IS 13252(Part 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Safety-General Requirements	Power Banks for use in portable applications
31.	IS 16333 (Part 3)	Mobile Phone Handsets Part 3 Indian Language Support for Mobile Phone Handsets - Specific Requirements	Mobile Phones

자료: 인도 표준청, <http://www.bis.org.in/cert/ProdUnManCert.asp>(검색일자: 2017. 10. 20.)

- 〈표 2-Ⅷ-7〉은 BIS 강제인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가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도 태양광기전시스템, 장치 및 부품 등의 특정품목 목록을 정리한 것임

〈표 2-Ⅷ-7〉 BIS 강제인증이 적용되는 특정품목 목록

Sr No.	IS No.	Title	Product Category
1.	IS 14286	Crystalline Silicon Terrestrial Photovoltaic (PV) modules - Design Qualification And Type Approval	Crystalline Silicon Terrestrial Photovoltaic (PV) modules (Si wafer based)
2.	IS 16077	Thin-Film Terrestrial Photovoltaic (PV) Modules - Design Qualification and Type Approval	Thin-Film Terrestrial Photovoltaic (PV) Modules (a-Si, CiGs and CdTe)
3.	IS/IEC 61730 (Part 1) IS/IEC 61730 (Part 2)	Photovoltaic (PV) Module Safety Qualification Part 1 Requirements for Construction Photovoltaic (PV) Module Safety Qualification Part 2 Requirements for Testing	PV Module ( Si wafer and Thin film)

〈표 2-VIII-7〉의 계속

Sr No.	IS No.	Title	Product Category
4.	IS 16221(Part 1)	Safety of Power Converters for use in Photovoltaic Power System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Power converters for use in photovoltaic power system
	IS 16221(Part 2)	Safety of Power Converters for Use in Photovoltaic Power Systems Part 2-Particular Requirements for Inverters	
5.	IS 16169	Test Procedure of Islanding Prevention Measures for Utility-Interconnected Photovoltaic Inverters	Utility -Interconnected Photovoltaic inverters
6.	IS 16270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for Solar Photovoltaic Application General-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	Storage battery

자료: 인도 표준청, <http://www.bis.org.in/cert/ProdUnManCert.asp>(검색일자: 2017. 10. 20.)

## 라.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1)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인도는 ITC(Indian Trade Classification)로 명시된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 전매 품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167)</sup>
  - 수입금지 품목은 수입정책,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됨
    - 해당 품목은 주로 동물의 고기,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임<sup>168)</sup>
  - 수입제한 품목은 수입을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해당 품목은 주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임

167) 인도 상무부, “FOREIGN TRADE POLICY[2015-2020]” 2.01, p.28

168) 부록 IX

- 수입전매 품목은 독점권, 수출특혜(privileges export)가 부여된 국영기업(STE) 등 지정된 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됨
  - 해당 품목은 주로 곡물, 연료 등임
-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전매 품목에 해당하는 개별 품목 목록은 대외무역총국 (<http://dgft.gov.in/exim/2000/download-ftp1213.htm>)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자료는 이전의 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FTP 2009~2014)을 따르고 있음
  - 다만 세부 내용은 현재의 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FTP 2015~2020)과 동일함
-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음<sup>169)</sup>
  - 신청자는 신청서 원본과 국고수납 영수증(Treasury Receipt) 및 송금환(Demand Draft)을 첨부하여 지역 당국(Regional Authority: RA)에 제출해야 함
  - 이후 지역 당국에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 자료 사본 2부는 대외무역총국에 제출해야 함

## 2) 대외무역정책상 수출입 금지 품목

- 인도는 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FTP 2015~2020)에 따라 특정 국가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을 두고 있음
  - 상기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국가는 이라크, 북한, 이란, 소말리아 등임
- 이라크에 대해서는 ITC 제93류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함<sup>170)</sup>
  - 다만 이라크 정부에 대한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의 경우에는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ce Production)의 수출금지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인증서 (No Objection Certificate: NOC)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 북한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공고를 통해 탱크, 장갑 차량, 전투기 등 군사 물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불문하고 직·간접적 수출입을 금지함<sup>171)</sup>

169) 인도 상무부, "HANDBOOK OF PROCEDURES[2015-2020]" 2.50, p.40

170) 인도 상무부, "FOREIGN TRADE POLICY[2015-2020]" 2.16, p.37

171) NOTIFICATION NO.41/2015-2020(<http://dgft.gov.in/Exim/2000/NOT/NOT16/Notification%20no.%2041%20English.pdf>)

- 상기 공고는 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FTP 2015~2020)에서 수립한 이전 공고를 대체하는 것이며, 유엔 결의안 제1748호에 포함된 군수품을 열거하고 있음
- 한편 기존의 공고에는 주로 북한 핵과 관련된 장비들과 유엔 결의안 제2094호에 포함된 사치품(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 등을 포함<sup>172)</sup>
- 이란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중수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의 개발과 관련된 유엔 결의안에 근거하여 통제되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함<sup>173)</sup>
  - 해당 품목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웹사이트([www.un.org/Docs/sc](http://www.un.org/Docs/sc))와 IAEA 웹사이트([www.iaea.org](http://www.iaea.org))에서 확인 가능함
- 소말리아에 대해서는 목탄(Charcoal)의 직·간접적 수입을 금지함<sup>174)</sup>
  - 목탄 수입자는 소말리아를 원산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관에 신고해야 함

### 3) 공식관보를 통한 수입 금지

-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에서는 공식관보를 통해 수입 금지 물품을 공지하고 있음<sup>175)</sup>
  - 「인도 대외무역법」 제5조에 따라 중앙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수시로 개정되는 대외 무역정책을 공식관보를 통해 공지함<sup>176)</sup>
- 수입금지 물품은 대외무역총국 사이트(<http://dgft.gov.in/exim/2000/changesFTP/changes-p5a.htm>)에서 확인 가능함
  - 각각의 공지는 PDF 파일로 볼 수 있으며, 영문본과 힌디어본 두 가지 언어로 구성 되어 있음
- <표 2-VIII-8>은 2017년 7월 기준 공식관보에 게시된 수입 금지 물품 공지 일부를 정리한 것임

172) 인도 상무부, “FOREIGN TRADE POLICY[2015-2020]” 2.17, p.37

173) 인도 상무부, “FOREIGN TRADE POLICY[2015-2020]” 2.18, p.37

174) 인도 상무부, “FOREIGN TRADE POLICY[2015-2020]” 2.19, p.37

175) 인도 상무부, “FOREIGN TRADE POLICY[2015-2020],” p.13

176) 「인도 대외무역법(2010)」 제5조

- 모든 공지는 수시로 게시되고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적용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함

〈표 2-Ⅷ-8〉 공식관보를 통한 수입금지 대상

근거법령	대상물품
대외무역법 제5조 <sup>1)</sup>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우유 및 유제품 -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및 사탕·제과·우유 또는 우유 고형분이 함유된 보조식품(food preparation)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SIL) <sup>2)</sup> , 누스라전선(Al Nusrah Front: ANF), 알카에다와 관련된 개인·단체와의 무역 - 석유 및 석유제품(탄화수소) 및 문화유산(골동품 포함) 등

주: 1) 각 공식관보상의 고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름  
 2) 가입 국가는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임  
 자료: 저자 작성

## 2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 가. 개요

- 2017년 6월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시장 개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수입규제라고 조사됨<sup>177)</sup>
  - 인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극복을 위한 대체 시장중 하나로 최근 인도시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2017년 11월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는 31건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도는 최대 수입규제국에 해당됨
  - 〈표 2-Ⅷ-9〉는 2017년 11월 기준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을 정리한 것임

177) 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신흥시장 인도 개척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강화», 2017. 6. 21.

〈표 2-VIII-9〉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분류	건수	인도	미국	중국	터키	브라질	캐나다	태국	호주	인니	말련	기타
조사중	36	3	8	2	2	1	1	1	1	1	1	15
규제중	154	28	23	12	12	10	9	8	7	6	6	33
합계	190	31	31	14	14	11	10	9	8	7	7	48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db.screen?menuid=ntb040202&tab=country](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db.screen?menuid=ntb040202&tab=country)(검색일자: 2017. 11. 10.)

## 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표 2-VIII-10〉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규제 조치 31건은 반덤핑 28건과 세이프가드 3건으로 구성됨

〈표 2-VIII-10〉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반덤핑 (AD)	반덤핑/상계조치 (AD/CVD)	상계조치 (CVD)	세이프가드 (SG)	총계
28(3) <sup>1)</sup>	0(0)	0(0)	3(0)	31(3)

주: 1) 괄호 내 수치는 조사 중인 건수이며,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규제 중 건수임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db.screen?menuid=ntb040202](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db.screen?menuid=ntb040202)(검색일자: 2017. 11. 10.)

## 다. 對韓 덤핑방지조치 현황

- 〈표 2-VIII-11〉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도의 덤핑방지조치 현황을 정리한 것임
  - 인도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은 주로 인도의 보호 산업에 속하는 화학, 기초금속, 기계 등에 집중됨
  - 화학 관련 제품의 경우 최다 규제 품목으로 상당수 품목은 일몰재심<sup>178)</sup>을 통해 규제 연장된 품목에 해당됨
  - 기초금속 관련 제품의 경우 2015년부터 관세 인상과 수입규제 조치 부과 등의 수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임

178)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이를 넘기지 않는 기간 내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WTO의 규정

〈표 2-Ⅷ-11〉 인도의 對韓 덤핑방지 조치 현황

번호	HS 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28	2917.39	디옥틸 프탈레이트(DOP, Dioctyl Phthalate)	반덤핑 (조사중)	2017-06-01
27	2929.10	TDI(Toluene Di Isocyanate)	반덤핑 (조사중)	2016-10-05
26	4002.20	폴리부타디엔고무(polybutadiene rubber)	반덤핑 (조사중)	2016-09-16
25	7209, 7211, 7225, 7226	냉연강판(Cold-rolled stainless steel)	반덤핑 (규제중)	2016-04-19
24	7208, 7211, 7225, 7226	열연후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 너비 2,100mm/두께 25mm까지 - 너비 4,950mm/두께 150mm까지	반덤핑 (규제중)	2016-04-11
23	7219.31/32/ 33/34/35/90	냉연강판(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반덤핑 (규제중)	2016-02-19
22	5404.11, 5402.44/69	스판텍스(Elastomeric filament yarn)	반덤핑 (규제중)	2016-01-27
21	2847.00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반덤핑 (규제중)	2016-01-14
20	4002.19	SBR 고무(Styrene Butadiene Rubber)	반덤핑 (규제중)	2016-01-14
19	2905.16	에틸 헥사놀(2-Ethyl Hexanol)	반덤핑 (규제중)	2014-11-20
18	2907.11	페놀(Phenol)	반덤핑 (규제중)	2014-10-15
17	7219, 7220	스테인레스 열연강판(304 시리즈) (Hot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304 series)	반덤핑 (규제중)	2014-03-11
16	2917.36	고순도 테레프탈산 (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반덤핑 (규제중)	2013-10-08
15	3102.50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반덤핑 (규제중)	2013-07-06
14	2903.12	염화메탄(Methylene Chloride)	반덤핑 (규제중)	2013-04-04
13	8708.70	알루미늄 휠(cast aluminum alloy wheels)	반덤핑 (규제중)	2012-12-10

〈표 2-VIII-11〉의 계속

번호	HS 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2	2917.35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반덤핑 (규제중)	2011-04-29
11	7220.20/90	폭 600mm 미만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400 series(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of 400 series having width below 600mm)	반덤핑 (규제중)	2010-08-16
10	3904.22	PVC(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반덤핑 (규제중)	2009-11-03
9	7219.31/32/ 33/34/35/90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반덤핑 (규제중)	2008-11-25
8	2809.20	인산(Phosphoric Acid all grades and all concentrations)	반덤핑 (규제중)	2008-11-12
7	3812.10, 3812.20, 3812.30, 2934.20, 2925.20, 2925.19	고무노화 방지제(Rubber Chemicals PX-13(6PPD))	반덤핑 (규제중)	2007-07-06
6	2914.11	아세톤(Acetone)	반덤핑 (규제중)	2007-02-12
5	5402.10 (고강력사제 외)-5402.19	나일론사(Nylon Filament Yarn)	반덤핑 (규제중)	2005-07-01
4	2836.40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반덤핑 (규제중)	2002-12-19
3	2815.11,12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Caustic Soda)	반덤핑 (규제중)	2002-05-14
2	5503.30	아크릴섬유(Acrylic fiber)	반덤핑 (규제중)	1996-09-13
1	4002.59	NBR고무(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반덤핑 (규제중)	1995-03-15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1&continent=TCOA&nation=IN&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1&continent=TCOA&nation=IN&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검색일자: 2017. 11. 10.)

### 라. 한국산 농산물의 수입요건

□ 2016년 우리나라는 인도와 검역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모과, 버섯 등의 네 가지 품목은 對인도 수출이 가능함

□ <표 2-Ⅷ-12>는 한국산 농산물의 수입요건을 정리한 것임

**<표 2-Ⅷ-12> 한국산 농산물의 수입요건**

구분	수입요건						
사과, 배, 모과	1. 인도 측 우려 병해충 8종 무감염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culus schlechtendali</i>(혹응애 일종)</li> <li>• <i>Adoxophyes orana</i>(애모무늬잎말이나방)</li> <li>• <i>Botryosphaeria berengeriana</i> f.sp. <i>pyricola</i>(겉무늬병)</li> <li>• <i>Carposina sasakii</i>(복숭아심식나방)</li> <li>• <i>Grapholita molesta</i>(복숭아순나방)</li> <li>• <i>Harmonia axyridis</i>(무당벌레)</li> <li>• <i>Metcalfa pruinosa</i>(미국선녀벌레)</li> <li>• <i>Peridroma saucia</i>(뒷흰날개밤나방)</li> </ul> 2. 다음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처리 후 소독 사항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부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MB훈증(상압); 또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약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육 온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32g/m<sup>3</sup></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21℃ 이상</td> </tr> </tbody> </table> </li> <li>2) 저온처리: 선적 전/ 수송 중 0℃ 미만에서 40일 동안 저온처리</li> </ol>	약량	시간	과육 온도	32g/m <sup>3</sup>	2시간	21℃ 이상
약량	시간	과육 온도					
32g/m <sup>3</sup>	2시간	21℃ 이상					
버섯(12종) (팽이, 새송이, 느타리, 양송이, 아가리쿠스, 목이, 포르치니, 상황, 빨나팔, 표고, 곰보, 선녀낙엽버섯)	신선버섯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도 측 우려 병해충 8종 무감염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amptomyia corticalis</i>(표고버섯혹파리)</li> <li>• <i>Camptomyia heterobia</i>(혹파리 일종)</li> <li>• <i>Cladobotryum mycophilum</i>(버섯흰곰팡이병)</li> <li>• <i>Cladobotryum varicum</i>(버섯흰곰팡이병 일종)</li> <li>• <i>Coboldia fuscipes</i>(털파리붙이)</li> <li>• <i>Lycoriella mali</i>(긴수염버섯파리)</li> <li>• <i>Megaselia tamiladuensis</i>(버섯벼룩파리)</li> <li>• <i>Mycophila speyeri</i>(버섯혹파리)</li> </ul> </li> <li>2.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 잡초종자와 기타 식물 잔재물 미부착</li> </ul> </li> <li>3. 포장 전 물 세척</li> </ol>						
버섯종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 병해충, 잡초종자 및 기타 식물류 무감염 증명</li> </ul>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국산 신선 농산물, 인도 수출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2016. 3. 2.

## IX.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구제제도

### 1 개요

---

- 인도의 사전심사제도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입과 관련된 납세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조력을 받는 제도임
  - 「인도 관세법」 제5-B장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함
  - OECD 보고서상의 납세자의 권리에 따르면 정보교환의 권리에 의하여 납세자는 조세제도의 운영과 과세방법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sup>179)</sup>
    - 정보교환의 권리는 정보를 제공받고 조력을 받으며 주장을 청취 받을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assisted and heard)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사전심사제도를 납세자의 권리로 구분함
  
- 「인도 관세법」에는 다른 세무 관계 법령과 마찬가지로 심사(review)와 항소(appeal)와 같은 방법에 의한 사법심사, 분쟁해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존재함<sup>180)</sup>

---

179) OECD, "Taxpayers' rights and obligations—A survey of the legal situation in OECD countries," 1990, p.4

180)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Customs Manual 2015," p.198

- 관련 세부 규정은 「관세법」 제14-A장 내지 제15장에 수록되어 있음
- 관계 기관은 항소위원회(Commissioner(Appeal)), 재심사 권한기관(Revision Authority), 관세 및 소비세 항소재판소(Customs Excise and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 CESTAT), 고등법원(High Court), 대법원(Supreme Court) 등이 있음
- 한편 인도의 사후구제제도의 경우 관세와 관련한 행정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항소하는 경우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특색을 지님<sup>181)</sup>
- 인도의 사후구제제도는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절차로 진행 가능함

## 2 사전심사제도<sup>182)</sup>

### 가. 개요

- 인도는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사전심사제도는 세무 책임의 명확성 및 확실성 제공, 최종 및 연장된 소송의 회피 그리고 신속한 결정, 저렴한 비용, 투명성 등의 이점을 지님<sup>183)</sup>
- 「인도 관세법」상 사전심사는 수출 또는 수입에서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기관으로부터의 결정을 말함<sup>184)</sup>
- 사전심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sup>185)</sup>
  -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75)에 따른 품목분류
  -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른 관세평가

181) 「인도 관세법」 제130E조

182) 「인도 관세법」 Chapter V-B Advance Rulings

183) CBEC, [http://www.cbec.gov.in/htdocs-cbec/aar/adv\\_faq](http://www.cbec.gov.in/htdocs-cbec/aar/adv_faq)(검색일자: 2017. 11. 13.)

184) 「인도 관세법」 제28E조

185) CBEC, <http://www.cbec.gov.in/htdocs-cbec/aar/cs-law-idx>(검색일자: 2017. 11. 13.)

- 관세법(Customs Act, 1962)과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75)에 따른 관세
-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75)에 따른 원산지 결정

## 나. 신청자격 및 담당기관

-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규정에 따름<sup>186)</sup>
  -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협력하여 인도에 합작 회사를 설립한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협력하여 인도에 합작 회사를 설립한 거주자
  - 인도에서 사업 활동을 착수하기로 계획한 외국 기업을 모회사로 하는 완전소유 인도 자회사
  - 인도 내의 합작회사
  -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주자
- 사전심사 담당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름<sup>187)</sup>
  - 중앙정부는 공식관보상의 고지를 통하여 사전심사를 수행하며 사전심사를 위한 기관(Central Excise, Customs&Service Tax)을 구성함
  - 사전심사 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된 다음의 구성원들로 구성됨
    - 인도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은퇴한 판사
    -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CBEC)의 공무원
    - 인도 정부의 차관보(Additional Secretary)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인도 법무 담당관
  - 사전심사 기관의 사무소는 델리(Delhi)에 위치

## 다. 신청서의 형식과 방식<sup>188)</sup>

- 사전심사 신청서는 다음 규정에 따름<sup>189)</sup>
  - 사전심사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질의를 명시하여 규정된 서식 및 방식으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186) 「인도 관세법」 제28E조

187) 「인도 관세법」 제28F조

188) CUSTOMS(ADVANCE RULINGS) RULES, 2002

189) 「인도 관세법」 제28H조

-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질의는 다음에 관련되어야 함
  - 관세법(1975년 법률 제51호)에 따른 물품의 품목분류
  - 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법」 제25조 제1항 관세에 대한 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교부된 고지의 적용 가능성
  - 물품의 가격 결정을 위하여 채택되는 원칙
  - 관세법에 따른 관세 및 시행 중인 기타 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관세에 대하여 교부된 고지의 가능성
  - 관세법(1975년 법률 제51호)에 따라 통지된 규칙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물품의 원산지 결정
- 신청서는 2,500루피의 수수료와 4통의 사본으로 작성되어야 함
-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음<sup>190)</sup>
  - 모든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에는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 권한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신청서, 확인서, 부속서, 진술서 및 증빙 서류 등은 A4용지 크기의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5cm 왼쪽 여백을 두고 읽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신청서의 담당기관에 도착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됨
  - 신청인이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별도로 표시해야 함
    - 해외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인도 내 대리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및 주소
  
- 신청서 양식(FORM-AAR(CUS-I))은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http://www.cbec.gov.in/htdocs-cbec/aar/form-idx>)에서 확인 가능함

## 라. 신청서 접수 절차

- 신청서 접수 절차는 다음 규정에 따름<sup>191)</sup>
  - 신청서 접수시 기관은 해당 신청서의 사본을 관세차장(Commissioner of Customs)에게 회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의 제공을 요청해야 함

190) CEBC, <http://www.cbec.gov.in/htdocs-cbec/aar/cs-law-idx>(검색일자: 2017. 11. 13.)

191) 「인도 관세법」 제28I조

- 다만 기관에서 요청한 바 있는 기록의 경우 해당 기록은 관세차장에게 조속히 반환되어야 함
  - 또한 기관은 신청서 및 요청된 기록들을 검토한 후 명령을 통하여 해당 신청서를 허가 또는 거부할 수 있음
    - 다만 기관은 신청인의 사건에 대하여 이미 세관공무원, 항소심판원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질의, 항소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이미 판결된 사항의 것과 동일한 질의 등의 경우 해당 신청서를 허가할 수 없음
  - 상기 모든 명령의 사본은 신청인과 관세차장에게 송부되어야 함
  - 상기 신청서가 허가되는 경우 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하였거나 기관에서 입수한 추가 자료를 검토한 후 신청서에 명시된 질의에 대한 기관의 사전심사 결과를 공표해야 함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기관은 사전심사 결과 통지 전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을 통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함
  - 사전심사 결과의 사본은 신청인과 관세차장에게 가능한 빨리 송부되어야 함
- 한편 사전심사는 다음의 경우 유효하지 않음<sup>192)</sup>
- 관세차장이나 이외의 사람의 진술(representation)을 통하여 기관이 공표한 사전심사가 사기 또는 사실의 잘못된 제시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상기의 경우 명령을 통하여 해당 사전심사 결정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선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가 없었던 것과 같이 적용됨
    - 명령의 사본은 신청인과 관세차장에게 송부되어야 함
- 사전심사의 신청현황은 소비세·관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bec.gov.in/htdocs-cbec/aar/aar>)에서 PDF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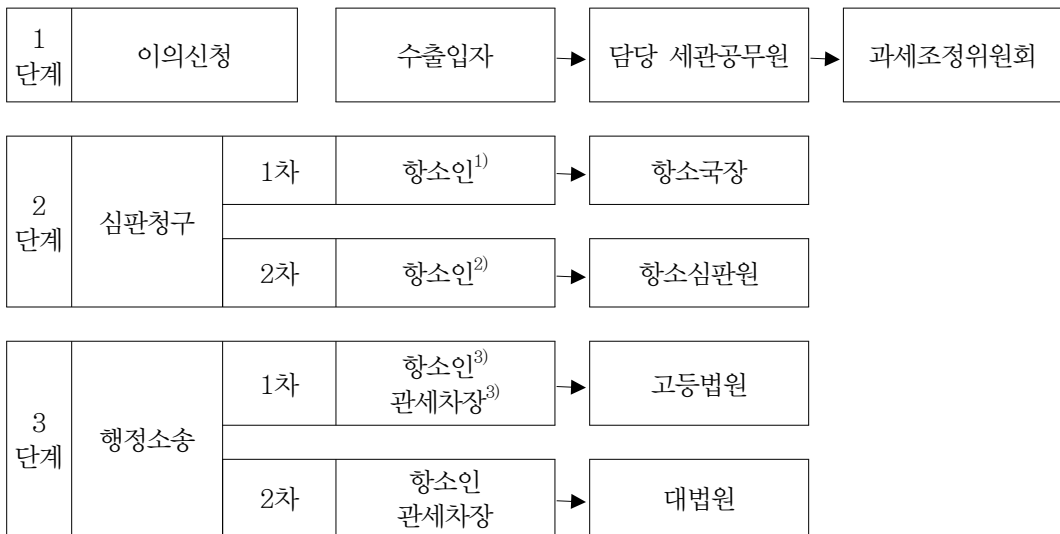
---

192) 「인도 관세법」 제28K조

### 3 사후구제제도<sup>193)</sup>

- 인도의 사후구제제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총 5단계로 나누어짐
  - 첫 번째로 과세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있고 두 번째로 항소국장에게 제기하는 1차 심판청구와 항소심판원에 제기하는 2차 심판청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제기와 대법원에서의 상고제기가 있음
- 인도의 사후구제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정전치주의를 따르므로 [그림 2-Ⅸ-1]과 같이 순서를 지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함

[그림 2-Ⅸ-1] 인도의 사후구제제도 절차



- 주: 1) 이의신청 결과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제기  
 2) 1차 심판청구 결과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 제기  
 3) 심판청구 결과통지 수령일로부터 180일 내 제기

자료: 「인도 관세법」 제127조 내지 제131C조를 정리하여 저자 작성

193) 본 장은 「인도 관세법」의 영문본과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발간한 ‘인도관세법 번역본’을 참고하여 작성됨

## 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관세법」 제127B조에 따라 수출입자는 심판청구 전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의 관세의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당 세관공무원(the proper officer)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대상이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물품 수출입신고서 또는 운송(선적)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해당 사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관세부과의 정당한 이유를 통지한 경우
    - 이의신청자가 수락할 추가관세 총 합계액이 3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 이의신청자가 추가 관세액과 추가 지불해야 할 이자를 납부한 경우
  - 단, 다음의 경우 이의신청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반려됨
    - 심판원(심판청구)이나 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안
    - 관세법 및 기타법령을 위반한 물품
    - 물품의 품목분류 해석을 위해 이의신청한 경우
    - 수출입물품, 회계장부 등 서류와 물품 판매 수익 등 몰수대상물품이 압수된 경우 압수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이전의 물품
  - 이의신청서 제출시 관세법 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이의신청서는 신청인이 철회할 수 없음
- (이의신청 절차) 「관세법」 제127C조에 따라 과세조정위원회(a Bench of the settlement commission)는 이의신청인에게 신청서 접수 여부를 통지하고, 관세차장(Commissioner of customs)에게 이의신청 심리진행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모두 검토 후 총 납부해야 할 관세를 결정함
  - 과세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뒤 이의신청의 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해야 함
    - 이의신청 심리가 거부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서는 취하된 것으로 봄
  - 이의신청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과세조정위원회는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권을 가진 관세차장에게 이의신청서와 관련한 기록 및 보고서를 요청해야 하며 관세차장은 요청에 응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함<sup>194)</sup>

194) 만약 세관장이 해당 기간 내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과세조정위원회는 해당 보고서 없이 이의신청서 심리를 진행함

- 관세차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과세조정위원회는 자료 검토 후 추가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자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추가 조사 등을 지시해야 하며, 관세차장은 추가 지시에 응답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자료를 제공해야 함<sup>195)</sup>
- 이의신청 심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여야 하나 서면으로 기록하는 경우 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함
- (이의신청 합의 명령) 과세조정위원회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이의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세법에 따라 적절한 합의를 지시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통과된 경우 납부해야 할 총 관세, 이자, 가산세, 납부방식 및 합의조건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사유와 관련 모든 내용을 기록해야 함
  - 과세조정위원회가 지시하는 이의신청 합의금은 이의신청인이 인정한 총관세보다 적을 수 없음
  - 이의신청인은 납부할 관세, 이자, 가산세 및 벌금 등을 과세조정위원회의 합의 지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납부되지 않는 경우 「관세법」 142조에 준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담당 세관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함
- (이의신청 재검토) 이의신청의 합의가 사기 또는 거짓자료로 인한 것임이 차후 밝혀지는 경우 합의는 무효화 되며 이 경우 담당 세관공무원은 해당 이의신청의 무효화 교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검토할 수 있음
- (가압류) 「관세법」 제127D조에 따라 과세조정위원회는 계류중인 이의신청에 대해 관세수입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할 수 있음
  - 중앙정부에 지불해야 할 합계액이 신청인에 의해 지불되고 그 증거가 과세조정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가압류의 효력은 해제됨
- (심리 재개권) 「관세법」 제127E조에 따라 과세조정위원회는 계류중인 이의신청 대상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의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심리를 재개하고 적절한 합의를 지시할 수 있음

---

195) 상동

- 계류중인 이의신청 대상이란 관세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이의신청을 재개하지 않은 수출입신고 건을 말함
  - 심리 재개권은 이의신청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을 상실함
- (보고서사본 열람) 「관세법」 제127G조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세관공무원이 과세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사본을 열람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인은 관세법에서 명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면책) 「관세법」 제127H조에 따라 과세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심리 및 추가 조사에 협조하고 관세의무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 기소 면제와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및 벌금 부과 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허용할 수 있음
- 단, 이의신청서 접수일 이전의 위반행위로서 이미 기소처리 된 경우는 제외함
  - 또한 면책이 승인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자가 일정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위증을 행한 경우 면책은 철회됨
    - 면책승인을 받았지만 이의신청 합의서에 제시된 관세 등 합계액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거나 면책허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면책승인을 위해 중요사항을 은폐했거나 거짓증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sup>196)</sup>
- (이의신청결과) 「관세법」 제127K조에 따라 과세조정위원회와 이의신청인 간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이의신청인은 합의명령서에 제시된 총 납부액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합하여 납부해야 함
- 「관세법」 제127I조에 따라 합의가 실패한 경우 과세조정위원회는 해당 이의신청을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환송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의신청서를 폐기해야 함
  - 「관세법」 제127J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합의는 최종적이며 추가적으로 관세법이나 시행중인 기타 법령에 따른 소송을 재개할 수 없음
- (타법령 준용) 「관세법」 제127M조와 제127N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는 「인도형법」 제193조와 제228조를 준용하여 사법절차로 보며, 「인도 연방소비세법」 제5장의 내용은 과세조정위원회에 대해 적용함<sup>197)</sup>

196) 위증의 경우 위반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나. 심판청구

- (1차 심판청구 대상) 「관세법」 제128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판결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자(이하 ‘항소인’)는 항소국장(Commissioner Appeals)에게 해당 판결이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항소할 수 있음
  - 항소기한은 항소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의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음
    - 항소국장은 항소심리 중 서면으로 기록되는 이유 등 일정 사유로 인해 심리 휴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심리휴정은 세 번까지 허락할 수 있음
  
- (1차 심판청구 절차) 「관세법」 제128A조에 따라 항소국장은 항소인의 항변 청구 및 추후 조사 후 불복하는 판결 또는 명령을 재확인, 변경 또는 무효화 하여 적절한 명령을 통과시킬 수 있음
  - 항소국장이 항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몰수 대신 벌금의 부과, 시가보다 더 높은 몰수 및 환급액의 경감에 대한 명령을 지시할 수 없음
  - 항소판결은 항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기간 내 심리 및 판결하여야 함
  - 항소국장의 항소판결은 결정요지, 판결내용 및 판결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항소국장은 항소판결에 대해 항소인, 재결청(adjudicating authority), 관세청장(Chief commissioner of customs) 및 관세차장(Commissioner of customs) 등에게 통지해야 함
  
- (2차 심판청구 대상) 「관세법」 제129A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이하 ‘항소인’)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소심판원(the Appellate Tribunal)에 항소할 수 있음<sup>198)</sup>
  - 2차 심판청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재결청으로서 관세차장이 통과시킨 판결이나 처분(이의신청)
    - 항소국장이 통과시킨 처분(1차 심판청구)
    - 「관세법」 제128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새로 임명되기 직전의 과세조정위원회 또는 항소국장이 통과시킨 처분

197) 「형법」 제193조(거짓자료에 대한 처벌), 제228조(사법 절차에 중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 또는 방해) 및 「연방소비세법」 제5장(사건의 해결)

198) 「관세법」 제129조에 따라 중앙정부는 사법구성원(변호사)과 기술구성원(세관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관세·소비세 항소심판원(Customs, Excise and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을 구성해야 함

- 단, 다음의 경우 항소심판원 대상에 해당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함<sup>199)</sup>
    - 수하물(baggage)로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
    - 인도로 수입되기 위해 운송수단에 적재되었으나 목적지에 양륙되지 않은 물품 또는 통관수량보다 부족하게 양륙된 경우 그 부족수량
    - 「관세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관세환급액
  - 이의신청을 제외한 2차 심판청구대상은 비록 항소심판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몰수 물품 시장가격, 관세, 벌금 또는 가산세가 5,000루피 이하라면 심판원 재량에 따라 항소가 거절될 수 있음
- (2차 심판청구 절차) 「관세법」 제128B조에 따라 항소심판원은 항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 후 불복에 대한 판결, 변경 또는 처분 무효화 등 적절한 명령을 통과 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 후 새로운 심판청구를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 있음
- 항소심판원은 심리 중 충분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수시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면기록을 이유로 휴정할 수 있음
    - 단, 휴정은 일방의 당사자에게 3번 이상 허락될 수 없음
  - 항소심판원은 불복에 대한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통과된 명령의 분명한 오류를 언제라도 정정할 권한을 지님
    - 단, 정정의 내용이 세액증가, 환급경감 또는 당사자 의무 증가 등에 해당한다면 본 내용을 항소인에게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뒤 정정해야 함
  - 항소심판원은 가능한 경우 항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든 항소를 심리 및 판결해야 함
    - 단,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 항소를 처리해야 함
  - 항소심판원은 통과된 모든 명령의 사본은 관세차장과 항소인에게 송부해야 함
  - 항소심판원에서 통과시킨 항소명령은 최종판결의 효력을 지님
- (항소심판원 수수료) 항소인은 항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항소 신청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항소수수료는 납부할 관세, 이자 및 부과된 가산세의 총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함

---

199) 「관세법」 제129DD조 참고

- 관세 등 금액이 50만루피 이하인 경우 1,000루피
  - 관세 등 금액이 50만루피를 초과하고 500만루피 이하인 경우 5,000루피
  - 관세 등 금액이 50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1만루피
  - 항소 심판원의 항소 전 항소 중지의 승인, 오류수정, 신청서 복원 등 신청서 변경에 대해서는 500루피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중앙정부의 검토) 「관세법」 제129DD조에 따라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는 1차 심판청구를 통과한 명령에 불복하는 항소신청서로서 2차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 해당 명령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sup>200)</sup>
- 항소신청서는 해당 명령이 항소인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중앙정부는 경우에 따라 신청기한을 3개월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
  - 항소인은 항소 신청서 제출시 납부할 관세, 이자 및 부과된 가산세의 총금액이 10만루피 이하인 경우 200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1,000루피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관세차장은 1차 심판청구(항소국장)를 통과한 명령이 합법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명령 수정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항소신청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없음
  - 중앙정부의 1차 심판청구에 대한 몰수 대신 벌금의 부과나 시가보다 더 높은 몰수의 명령으로 변경하려는 명령은 다음의 경우 제한됨
    - 1차 심판청구에 따라 통과된 명령의 처분보다 더욱 강화한 경우
    - 항소인이 중앙정부의 1차 심판청구 내용의 무효화 또는 변경 지시일로부터 1년 이내 그에 대한 소명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경우
- (예치금과 지연이자) 「관세법」 제129E조에 따라 관세, 이자 또는 벌금 납부가 요구되나 세관의 관리에 놓여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항소인은 관련 관세 등을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여야 함
- 단, 항소국장 또는 항소 심판원이 해당 예치가 항소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수입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치를 생략할 수 있음
    - 항소인은 예치 생략신청서를 항소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소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치 생략 여부를 결정해야 함

200) 단, 중앙정부는 재량에 따라 1차 심판청구에서 결정한 관세, 가산세 및 벌금의 합계가 5,000루피 이하인 경우 신청서 허용을 거절할 수 있음

- 예치생략 판정 전 이미 예치금이 납부된 경우 항소국장 또는 항소 심판원은 예치금을 환급해야 하며 환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예치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 지연이자 이율은 시행일 현재 중앙정부가 공식 관보를 통해 명시한 이율(연이율 5%에서 30% 이하의 범위내)로 결정되며 지연이자 지급 기산일은 예치생략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계산함

## 다. 행정소송

- (고등법원 항소 대상) 「관세법」 제130A조에 따라 2차 심판청구(항소 심판원)를 통과한 명령에 불복하는 관세차장 또는 항소인은 고등법원(the High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sup>201)</sup>
  - 항소 대상은 관세평가 목적상 관세율 조정 또는 수출입 물품 가격 결정과 관련한 명령을 제외한 항소심판원이 통과시킨 명령임
  - 항소 기한은 관세차장 또는 항소인이 불복 명령을 수령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
    - 고등법원은 해당 기한 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기한 만료 후 항소를 허용할 수 있음
- (고등법원 항소 심리) 고등법원은 항소 신청서, 교차이의서 및 항소심판원의 참고서류(reference)를 바탕으로 항소를 심리함
  - 관세차장 또는 항소인은 항소의 법률문제(the question of law)를 항소신청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관세차장 또는 항소인은 고등법원으로부터 타방의 항소 제기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교차이의서(memorandum of cross-objections)을 제출할 수 있음
  - 고등법원은 제기된 항소의 참고 목적으로 항소 심판원에 관련 항소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항소 심판원은 지시 수령일로부터 120일 이내 참고자료를 회부해야 함

201) 「관세법」 제130조에 따라 항소심판원에서 통과시킨 명령에 대해 고등법원이 실질적 법률문제(a substantial question of law)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 또한 항소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심리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진행함. 단, 피항소인은 불복 제기된 명령이 실질적 법률문제와 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음(자료: 「인도 관세법」 제130조)

- (고등법원 판결) 「관세법」 제130D조에 따라 고등법원은 심리한 항소의 법률문제를 판결한 뒤 법원의 직인과 등기소(registrar)의 서명이 날인된 판결문 사본을 항소심판원에 송부해야 함
  - 항소심판원은 해당 판결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통과시켜야 함
  
- (대법원 상고대상) 「관세법」 제130E조에 따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 등은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상고할 수 있음
  - 대법원 상고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인정한 명령으로 고등법원 판결 후 ① 즉시 자체발의(motion)를 하거나 ② 당사자가 구두로 상고신청을 하거나 ③ 당사자를 대신한 제3자가 상고신청을 하는 경우
    - 국제심판원 설립 전 항소 심판원이 통과한 명령 중 관세평가 목적상 관세율 조정 또는 수출입 물품 가격 결정과 관련한 명령
  
- (수수료) 「관세법」 제130D조와 제130F조에 따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항소·상고 비용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 단,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항소인에게는 200루피의 수수료가 부과됨
  
- (예치금) 「관세법」 제131조에 따라 고등법원의 항소나 대법원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항소인은 2차 심판청구에서 통과한 명령에 따라 관세 등 합계액을 납부해야 함
  
- (타법률 준용) 「관세법」 제130조와 130F조에 따라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고등법원의 항소와 대법원의 상고는 인도 민사소송법(the Code of Civil Procedure)에 따름

## X. 벌칙<sup>202)</sup>

### 1 개요

---

- 인도의 관세와 통관행정에 대한 벌칙은 「관세법」 제14장 「물품 및 운송수단의 몰수와 벌금의 부과」 및 제16장 「위반행위 및 기소」에 규정되어 있음
- 인도의 관세형벌은 징역, 벌금 및 몰수로 구분되며 특히 징역의 경우 벌금과의 병과도 가능함
  - 「인도 관세법」 제132조부터 제136조의 경우 징역,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함을 규정함
- 인도는 위법수출입물품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처분함
  - 「관세법」 제111조부터 제114조에서는 위법수출입물품에 대해 벌금과 몰수의 처벌근거를 규정함
  - 「관세법」 제135조는 위법물품의 시장가격이나 관세포탈금액 등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함

---

202) 본 장은 「인도 관세법」의 영문본과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발간한 ‘인도 관세법 번역본’을 참고하여 작성됨

- 또한 「관세법」 제134조의 은닉물품 검증·수색 거부자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 규정은 우리나라에 없는 규정으로 인도의 특이사항임
- 마지막으로 「관세법」 제133조에서 세관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징역형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제136조에서 세관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등 관세청의 권위와 세관업무에서 위계질서를 관리하고 있음

〈표 2-X-1〉 「인도 관세법」상 관세형벌의 종류

관세 형벌 종류	상세내용		
	조항	요약	제목
벌금	112조	위법수입물품	부적절하게 수입한 물품
	114조	위법수출물품	부적절하게 수출을 시도한 물품
	114A조	관세포탈 등	허위로 관세를 미납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114AA조	허위신고	허위 또는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경우
	116조	미양륙물품 등	양륙물품 등을 사전보고하지 않은 경우
	117조	기타 법령위반	기타의 위반 또는 미준수사항
몰수	111조	위법수입물품	부적절하게 수입한 물품 등의 몰수
	113조	위법수출물품	부적절하게 수출을 시도한 물품 등의 몰수
	115조	위법운송수단	밀수에 사용한 운송수단의 몰수
	118조	포장물품 부속품	몰수대상물품의 수하물 및 그 내용물의 몰수
	119조	은닉사용물품	몰수대상물품의 은닉용 물품 몰수
	120조	밀수관련물품	밀수물품의 몰수
	121조	밀수품판매수익금	밀수물품의 판매수익 몰수
징역 등	132조	허위서류 작성자	허위서류 사용자에 대한 처분
	133조	세관공무원 방해자	세관공무원 방해자에 대한 처분
	134조	물품검사 거부자	몰수물품 은닉 대상자로서 엑스레이 검색 거부자 등에 대한 처분
	135조	관세포탈자 등	관세포탈 또는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135A조	수출위반 예비범	위법수출 예비범에 대한 처분
	136조	법령위반 세관공무원	법령을 위반한 세관공무원에 대한 처분

자료: 「인도 관세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관세형벌의 종류

### 가. 벌금형

- 「인도 관세법」의 벌금형은 최소 5,000루피부터 최대 10만루피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물품의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관세포탈액 및 수출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함
  - 관세포탈의 경우 벌금형은 세관공무원의 결정한 관세액을 기준으로 사유에 따라 증감함
- 「인도 관세법」상 벌금형의 상세 내용을 <표 2-X-2>와 같이 정리함

〈표 2-X-2〉 「인도 관세법」상 벌금형의 종류

벌칙의 종류		상세내용	
		대상	벌금
112조	위법 수입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수처분을 자초 또는 교사한 자</li> <li>- 몰수대상물품소유 및 취득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금액 또는 5,000루피 중 높은 금액</li> <li>- 수입금지물품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li> <li>- 관세 탈세액</li> <li>- 수입신고가격과 실제가격 간 차이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li> </ul>
114조	위법 수출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수처분을 자초 또는 교사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금지물품 신고가격의 3배 이하의 금액 또는 관세법상 결정 금액 중 더 높은 금액</li> <li>- 관세 탈세액 또는 5,000루피 중 높은 금액</li> <li>- 기타 수출물품 신고가격 이하의 금액 또는 관세법상 결정금액 중 더 높은 금액</li> </ul>
114A조	관세포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허위진술 및 사실은폐 등으로 관세를 포탈한 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공무원에 의해 결정된 관세나 이자와 동일한 금액</li> </ul>
114AA조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신고서 등 서류를 허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서명, 사용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가격의 5배 이하의 금액</li> </ul>

〈표 2-X-2〉의 계속

별칙의 종류		상세내용	
		대상	벌금
116조	미 양륙물품 등	- 운송수단 적재물품 등 양륙물품을 사전 보고하지 않은 자	- 부과될 관세의 2배 이하의 금액
117조	기타 법령위반	- 관세법이 언급하지 않은 기타 법령위반자	- 10만루피 이하의 금액

자료: 「인도 관세법」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위법수입물품)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위법 물품 수입자는 벌금에 처함
  - 수입물품의 몰수처분을 자초한 사람 또는 이를 교사한 사람
  - 수입물품이 몰수처분대상임을 알면서도 해당 물품의 소유를 취득하거나 물품의 운반, 반출·이동, 위탁, 장닉, 보관, 은닉, 판매, 구매 및 기타 물품을 취급한 사람
  
- 위법 수입물품에 대한 벌금은 다음의 위법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금액 또는 5,000루피의 벌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함
  - 수입금지물품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일반 수입물품 중 과세물건의 경우 탈세하려는 관세금액
  - 수입신고자 중 수입신고가격이 실제물품가격보다 높은 경우, 신고가격과 실제가격 간 차이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 만약 수입금지물품 또는 일반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물품가격보다 높은 경우, 신고가격과 실제가격 간 차이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벌금으로 추가됨
  
- (위법수출물품) 「관세법」 제114조에 따라 위법 수출물품의 몰수처분을 자초한 사람 또는 이를 교사한 사람은 다음의 부적절한 수출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벌금에 처함
  - 수출금지물품의 경우 수출신고가격의 3배 이하의 금액 또는 관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일반 수출물품 중 과세물건의 경우 탈세하려는 관세금액 또는 5,000루피의 벌금 중 더 높은 금액

- 기타 수출물품은 수출신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관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관세포탈 등) 「관세법」 제114A조에 따라 공모, 고의적인 허위진술 및 사실은폐 등을 이유로 관세나 이자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자는 「관세법」 제28조 8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에 의해 결정된 관세나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벌금에 처함
  - 다만 벌금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경감되거나 증가할 수 있음
    - 미납 또는 부족관세를 세관공무원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벌금은 해당 관세나 이자의 25% 수준으로 경감함
    - 미납 또는 부족관세를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해 감액 또는 증액했다면 벌금 또한 이를 반영하여 감액 또는 증액함
  - 본 조에 따라 벌금형이 처벌되면 제112조(위법수입물품)과 제114조(위법수출물품)는 적용할 수 없음
- (허위신고) 「관세법」 제114AA조에 따라 통관신고서, 명세서 또는 「관세법」상 모든 사업거래에 수반되는 특정 자료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 서명 또는 사용한 자는 해당 물품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미 양륙물품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다음의 양륙물품 등을 사전 보고하지 않은 자는 수출입 물품에 부과할 관세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운송수단에 적재한 물품, 환적물품 및 운송중인 물품이 인도 내 목적지에 양륙하지 않은 경우
  - 양륙된 물품 수량이 사전 보고된 물량보다 적은 경우
  - 양륙되지 않았거나 보고된 물량보다 적게 양륙된 경우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부국장이 충족할 만한 해명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위반자) 「관세법」 제117조에 따라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해당 위반을 교사한 사람 등 본 법령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행위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나. 몰수형

- 일반적으로 몰수는 다른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범죄 반복의 방지 및 범죄 이득 금지를 목적으로 함
  -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더라도 몰수 요건이 충족된다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음
- 「인도 관세법」 또한 밀수물품, 법령 위반물품 및 범죄에 사용된 운송수단 등 반드시 몰수해야하는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표 2-X-3>으로 정리함

〈표 2-X-3〉 「인도 관세법」상 몰수형의 종류

벌칙의 종류		상세내용	
		대상	처벌
111조	위법수입물품	- 관세청 지정장소 이외에서 통관 시도 - 관세법 및 기타 법령상 수입금지물품 또는 위반물품 등 - 수입신고서의 가격 또는 상세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등 - 관세청 공식관보상 고지된 불법수입물품	몰수
113조	위법수출물품	- 관세청 지정장소 이외에서 통관 시도 - 관세법 및 기타 법령상 수출금지물품 또는 위반물품 등 - 수출신고서의 가격 또는 상세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 환급청구방식에 문제가 있는 물품 - 수출통관 하였으나 수출자 등의 고의 태만 및 부주의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았거나 세관공무원 허가 없이 양륙한 물품 - 관세청 공식관보상 고지된 불법수출물품	몰수
115조	위법운송수단	-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운송수단 - 세관공무원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절차상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 - 수입물품을 신고 인도에 진입하였으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분실한 운송수단	몰수 또는 벌금
118조	포장물품 부속품	- 몰수대상 수출입 포장물품의 부속품	몰수
119조	은닉사용물품	- 밀수품 은닉을 위해 사용한 물품	몰수
120조	밀수관련물품	- 변형된 밀수품 또는 다른 물품과 결합된 밀수품	몰수
121조	밀수품판매수익금	- 밀수물품 판매 후 발생한 수익금	몰수

자료: 「인도 관세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위법수입물품) 「관세법」 제111조에 따라 다음의 위법 수입물품은 몰수함

- 관세청에서 지정 또는 고시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입물품을 통관 또는 양륙을 시도한 경우
  - 수입물품이 지정된 통관 항구 또는 통관 공항 이외의 장소에 양륙하였거나 양륙을 시도한 경우
  - 고시한 통로 이외의 통로를 통하여 육지나 내수로로 수입한 경우
  -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을 만(灣), 개울 또는 하천 등에서 통관항 이외의 장소에 양륙하기 위해 반입한 경우
- 관세법 또는 기타 인도 법령상 수입이 금지되거나 법령을 위반한 물품 등
  - 「관세법」 또는 인도의 기타 법령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경우
  - 운송수단에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을 은닉한 경우
  - 포장물(package)에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을 은닉한 경우
- 관세부과물품 또는 수입금지물품을 법령에 따라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이지만 수입적하목록이나 입항신고서·반입신고서상에 관세부과 또는 금지 내용이 없는 경우
  -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으로 수입적하목록이나 입항신고서·반입신고서상에 해당내용의 언급 없이 운송수단에서 양륙한 경우
  -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으로 승인장소 이외의 장소 또는 세관원의 감독 없이 양륙을 시도하거나 양륙한 경우
  -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을 통관구역 또는 보세창고에서 담당 세관원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반출했거나 반출을 시도한 경우
  -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의 통관 허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당 서류의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이 화주의 통관신고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통관신고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으로 법령에 정해진 통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환적, 수송 또는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 관세부과물품 또는 금지물품으로 관세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 수입신고서상 가격 또는 기타 세부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환적물품의 경우 환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에 따라 공식관보로 고지된 불법수입물품
- (위법수출물품) 「관세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의 위법수출물품은 몰수함
  - 관세청에서 지정 또는 고시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출물품을 통관 또는 적재를 시도한 경우
    - 지정된 통관 항구 또는 통관 공항 이외의 장소에서 수출을 시도한 경우
    - 고시한 통로 이외의 통로를 통하여 육지나 내수로로 수출을 시도한 경우
    - 만(灣), 개울 또는 하천 등 통관항 이외의 장소에서 수출하기 위해 반입한 경우
  - 「관세법」 또는 기타 인도 법령상 수출이 금지되거나 법령을 위반한 물품 등
    - 관세법 또는 인도의 기타 법령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물품을 수출 시도하거나 반입한 경우
    - 포장물(package)에 물품을 은닉한 경우
    - 승인장소 이외의 장소 또는 세관원의 감독 없이 물품 적재를 시도하거나 적재한 경우
    - 물품이 화주의 통관신고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통관신고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상 가격 또는 기타 세부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수출물품의 환급청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수출물품의 환급률 결정방식이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된 정보 및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수출물품이 최초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환급청구를 한 경우
  - 수출통관 하였으나 수출자, 대리인 및 고용한 직원의 고의, 태만 및 부주의로 인해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적재하였으나 담당 세관원의 허가 없이 양륙한 경우
  - 「관세법」에 따라 공식관보로 고지된 불법수출물품
- (위법운송수단) 「관세법」 제115조에 따라 위법행위에 사용된 다음의 운송수단은 몰수함
  -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운송수단
    - 물품의 은닉 목적을 위해 제작, 조정, 개조된 선박, 항공기 및 차량 등으로 인도의 관세구역 또는 통관구역 내에 있던 운송수단
    - 세관 공무원의 압수를 피하기 위해 운송수단에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던지거나 부수거나 파괴한 경우 그 운송수단

- 세관공무원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절차상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
    - 필수불가결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공무원의 운송수단의 정지 또는 착륙 요구를 무시한 운송수단
    - 수출통관을 마친 보세창고 장치물품 또는 환급청구물품을 세관공무원의 허락 없이 양륙한 경우 그 운송수단
  - 수입물품을 실은 운송수단이 인도에 진입 후 물품이 전부 또는 일부분이 분실된 경우 그 운송수단
- 
- 위법운송수단에 대해 해당 소유자가 밀수행위에 운송수단이 사용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증하는 경우 몰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운송수단 소유주는 몰수 대신 밀수 또는 밀수시도물품의 압수된 날의 시장가격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몰수와 벌금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음
  - (포장물품 부속품)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수출입 포장물품이 몰수대상인 경우, 포장 내에 부속된 기타 물품 또한 몰수함
    - 수출의 경우 포장물품은 통관구역 내 반입된 상태여야 함
  - (은닉사용물품)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밀수물품을 은닉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은 몰수함
  - (밀수관련물품) 「관세법」 제120조에 따라 밀수된 물품이 변형되거나 밀수물품이 다른 물품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더라도 해당 물품은 모두 몰수함
    - 단, 해당 물품의 소유자가 밀수물품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증하는 경우, 밀수물품의 가격과 동일한 부분만큼의 물품만을 몰수함
  - (밀수품 판매수익금) 「관세법」 제121조에 따라 밀수물품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수익금은 몰수함

### 다. 징역형 등

- 「인도 관세법」상 가장 높은 징역형은 관세포탈자와 몰수대상물품을 취득 또는 은닉한 자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하는 것이며, 가장 낮은 징역형은 법령을 위반한 세관공무원 및 은닉물품 검사 거부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을 구형하는 것임
- 단, 관세포탈자 등의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1년 미만의 징역을 구형 받을 수 있음
- 「인도 관세법」상 징역형 등의 상세 내용을 <표 2-X-4>와 같이 정리함

<표 2-X-4> 「인도 관세법」상 징역형·벌금형의 종류

벌칙의 종류		상세내용	
		대상	처벌내용
제132조	허위서류 작성자	- 허위서류를 작성, 서명 또는 사용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제133조	세관공무원 방해자	- 세관공무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제134조	물품검사 거부자	- 몰수물품을 은닉했다고 보여주는 자로써 엑스레이 검사 거부 또는 세관의 은닉한 몰수물품 획득 조취에 저항하는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제135조	관세포탈자 등	- 관세포탈자 등 - 몰수대상물품을 취득·은닉한 자 - 몰수대상물품의 수출을 시도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 또는 환급청구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병과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병과 - 법원 판단에 따라 1년 미만의 징역
제135A조	수출위반 예비범	- 위법수출을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제136조	법령위반 세관공무원	- 수출입 관련 법령 금지사항을 위반한 세관공무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루피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 합리적 이유 없이 월권을 행사하거나 비밀유지규정을 위반한 세관공무원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루피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자료: 「인도 관세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허위서류작성 등) 「관세법」 제132조에 따라 세관거래와 관련된 모든 통관 신고서, 보고서 또는 특정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이유를 가진 자로써 해당 허위서류를 작성, 서명 또는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세관공무원 방해) 「관세법」 제133조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세관 공무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물품검사 거부) 「관세법」 제134조에 따라 물수물품을 은닉했다고 보이는 자로써 엑스레이 검사 또는 몸안에서 꺼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저항하거나 거절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관세포탈자 등)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물품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시도한 자로써 위반물품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을 위반한 다음의 자
    - 물품가격 허위신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탈세하거나 탈세를 시도한 자, 그리고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물품의 금지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
    - 물수대상 물품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했다고 보여질 만한 이유가 있는 자로써 해당 물품을 취득, 운반, 반출·이동, 위탁, 장닉, 보관, 은닉, 판매 또는 구매, 그리고 기타 취급방식에 관여한 자
    - 물수대상 물품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했다고 보여질 만한 이유가 있는 자로써 해당 물품의 수출을 시도한 자
    -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환급청구방식을 부정하게 활용하거나 이를 시도한 자
  - 위반물품의 기준
    - 해당물품의 시장가격이 1,00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 관세포탈 또는 관세포탈 시도금액이 30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 인도 정부가 공식 관보로 고시한 금지물품인 경우
    -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환급청구 금액이 30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 만약 법원의 특별하고 충분한 판결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은 1년 미만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 관세포탈자 등은 사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벌금에 처할 수 있음<sup>203)</sup>
  
- (수출위반 예비범) 「관세법」 제135A조에 따라 관세법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출을 준비하거나 정황상 방해받지 않았더라면 법령을 확실히 위반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세관공무원 위반행위) 「관세법」 제136조는 다음의 세관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상이한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을 규정함
  - 세관공무원이 다음과 같이 수출입 관련 사항과 법령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루피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에 처함
    -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을 돕는 행위
    - 관세탈세를 돕는 행위
    - 어떤 물품에 대한 법령의 금지사항을 회피하도록 부작위, 허가, 은닉 및 묵인하는 등 돕는 행위
  - 세관공무원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월권을 행사하거나 비밀유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루피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에 처함
    - 물수대상물품 또는 서류의 은닉 사실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몸, 해당 장소 등 수색을 요구하거나 다른 세관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
    - 관세포탈행위 사실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체포를 감행하는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사항을 공개한 경우로서 선의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시행중인 법에 따라 그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는 제외함

---

203) 다음의 사례는 법원의 특별하고 충분한 사유로 고려될 수 없음

- 피의자가 이 법을 처음 위반하였다는 사실
- 기소를 제외하고 피의자가 이 법에 따른 벌금처분, 물품의 몰수처분, 그리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기타 다른 조치가 취해진 사실
- 피의자는 단순히 물품 운송인으로 행동한 경우 등, 주범이 아니며 2차 당사자란 사실
- 피의자의 나이(만18세 미만은 제외)

### 3 관세형벌의 집행

#### 가. 개요

- 「인도 관세법」은 벌칙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벌칙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 및 위법물품에 대하여 몰수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특이점이 있음
- 또한 법인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운영 담당자와 책임자가 기소 처리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
  - 처벌대상(주격)이 우리나라와 상반됨
- 「인도 관세법」상 관세형벌의 집행 내용을 <표 2-X-5>와 같이 정리함

〈표 2-X-5〉 「인도 관세법」상 관세형벌의 집행

조항	요약	상세내용
122조	벌칙결정자	- 위법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벌금형과 몰수형 결정자를 규정
122A조	소명의 기회제공	- 벌칙처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
124조	몰수 전 통지서 교부	- 벌금형과 몰수형 처분 전 해당 죄목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해당 근거에 대한 당사자의 항변 기회를 제공
125조	몰수 대신 벌금 처분	- 몰수대상물품 소유 또는 보관자에 대해 몰수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126조	몰수물품 국고귀속	- 몰수물품의 국고귀속과 세관공무원의 몰수물품 보관의무를 규정함
140조	양벌규정	- 법인이 「관세법」 제16장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시 해당 법인의 운영담당자 등은 법인과 같이 처벌 받음을 규정

자료: 「인도 관세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관세형벌의 집행

- (벌칙 결정자) 「관세법」 제122조는 벌금형과 몰수형 결정자에 대해 위법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관세청장 또는 합동관세청장(Commissioner of customs or a Joint commissioner of customs)은 제한 없이 벌금형과 몰수형 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
  - 몰수대상물품의 가격이 20만루피 이하인 경우 관세청장 보좌관 또는 관세 부청장(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or Deputy commissioner of customs)이 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
  - 몰수대상물품의 가격이 1만루피 이하의 경우 관보에 명시된 고위 세관공무원(a Gazetted officer of customs)이 결정할 수 있음
  
- (소명의 기회 제공) 「관세법」 제122A조는 벌칙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재결청의 의무를 규정함
  - 재결청은 소명의 내용이 충분하다면 그것을 서면을 기록하기 위해 휴정을 선언할 수 있음
    - 단, 휴정 횟수는 당사자당 3회로 제한함
  
- (몰수 전 통지서 교부) 「관세법」 제124조는 벌금형 또는 몰수형 처분 명령 전 해당 물품 또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 벌금형 또는 몰수형의 근거에 대한 항변할(representation)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통지 또는 항변은 서면 대신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몰수 대신 벌금 처분) 「관세법」 제125조는 몰수대상물품을 소유 또는 보관하다 압수당한 자에 대해 몰수형 대신 벌금형을 처분 받을 권리를 규정함
  - 벌금은 해당 세관공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은 몰수 물품의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입물품의 경우 벌금은 부과될 관세를 시장가격에서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벌금형을 처분 받는 당사자는 해당 물품의 관세와 부과 가능한 모든 세금 또한 납부해야 함

- (물수물품의 국고귀속) 「관세법」 제126조는 물수대상물품의 중앙정부 귀속 및 물수결정을 내린 세관공무원의 물수물품 취득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함
- (양벌규정) 「관세법」 제140조는 법인이 「관세법」 제16장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인의 운영담당자와 책임자가 법인과 같이 기소 처리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sup>204)</sup>
  - 단, 해당 법인의 운영담당자나 책임자가 해당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됨
  - 상기 면책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위법행위가 해당 법인의 이사, 관리자, 임원 및 관련 책임자의 동의·묵인(부작위)·태만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입증된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 등은 기소 처리되며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

---

204) 「관세법」 제140조에서 법인에는 회사(firm)나 기타 개인의 단체를 포함하며, 회사(firm)에서 이사(director)는 회사의 파트너(partner)를 의미함

## XI. AEO 제도<sup>205)</sup>

### 1 개요

---

- 인도 세관 당국은 2005년부터 수출입·물류업체와 같은 다양한 국제공급체인망을 관리하는 신용공인프로그램(Accredited client programme: ACP)를 운영하였음<sup>206)</sup>
  - 신용공인프로그램(ACP)은 세계관세기구(WCO)의 ‘무역안전 및 원활화 표준에 관한 협약(SAFE Framework of standard)’과 교토협약의 공인된 사람(Kyoto convention’s authorized persons) 조항의 이행을 위해 도입함
  - 관련 규정은 2005년 11월 24일 공표된 세관통지서(Notification No.42/2005-Cus)임
  
- 세계관세기구(WCO)가 성실무역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함에 따라 인도 또한 2011년부터 AEO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였음
  - 인도는 AEO를 2011년 8월 23일 세관 규정(Circular No.37/2011-Cus)을 바탕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2011년 12월 16일 세관 규정(Circular No.28/2012-Customs)에 따라 전격 시행함

---

205) CBEC(2015), pp. 209~221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6) CBEC, “FACT SHEET AEO,” [http://www.cbec.gov.in/htdocs-cbec/home\\_links/india-aeo-prgm](http://www.cbec.gov.in/htdocs-cbec/home_links/india-aeo-prgm) 및 CBCE(2015), pp.209~23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 9. 1.)

- 2016년 현재 인도의 AEO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에 따라 기존의 신용공인프로그램(ACP)과 AEO를 통합하고 국제 표준에 맞추어 AEO 규정을 정비하였음
  - 관련 규정은 2016년 7월 22일 공표된 세관 규정(Circular No.33/2016-Customs)임
- 인도는 2017년 현재 우리나라 및 홍콩 세관과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하였고 향후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의 체결을 논의 중임
- 2017년 3월 31일 기준 인도의 총 AEO 공인 기업수는 168개임<sup>207)</sup>
  - 수출입자로서 가장 일반적인 AEO-T1 등급에 94개 기업이, 선별되지 않은 경우 검사에서 제외되는 AEO-T2 등급에 28개 기업이 있음
  - 운송업체, 창고업체 및 관세사 등의 경우 AEO LO 등급만을 부여받으며 여기에 46개 기업이 공인됨

## 2 AEO 공인기준 및 등급

- AEO 공인을 신청하는 모든 국제물류체인 종사자는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가. 기본요건<sup>208)</sup>

- (대상 업종) 인도에서 관세 및 무역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물류체인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AEO를 신청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수출자, 수입자, 운송인, 항공사, 화물 운송업자 등 물류업자와 창고 관리인, 창고 소유주, 터미널 운영자, 및 통관업자(관세사) 등이 포함함
  - 그 외의 자격을 갖춘 항만 운영자, 승인된 특송업체, 하역관리인을 포함함

207) CBEC, "List of AEO Status Holders," [http://www.cbec.gov.in/htdocs-cbec/home\\_links/india-aeo-prgm](http://www.cbec.gov.in/htdocs-cbec/home_links/india-aeo-prgm)(검색일자: 2017. 9. 1.)

208) CBCE, 「Circular No. 33/2016-Customs」, 2016. 7. 22., pp.10~11

- 관세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 은행, 보험 회사, 컨설턴트 등의 업종은 AEO 자격대상이 아님
- (법인만 가능) AEO 신청자는 법적 실체(법인)로 설립된 회사로서 3년 이상 사업체를 영위한 업체만이 AEO를 신청할 수 있음
  - AEO 공인자격은 신청자의 특정 사업장, 사업부 또는 지점에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므로 여러 기업을 보유한 그룹기업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AEO 신청기업은 신청기업의 국제 물류체인과 관련한 모든 활동 및 위치에 대해 AEO 공인기준을 적용해야 함
- (인도 내 설립회사) 인도에 설립된 법인만이 AEO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인도의 기업등록부(Registrar of companies)가 발행한 기업등록증명서
  -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위치, 물품의 적재, 하역, 저장 등 국제물류체인망에서 외국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해당 장소의 세부사항 등
  - 사업자 명의의 계좌 증명서 등
- (중소기업 가능) 수입 또는 수출신고 및 선하증권 처리 건수가 신청일 직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개 이상인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은 AEO를 신청할 수 있음
  - AEO 관리자는 중소기업(MSMEs)이 AEO를 신청할 때 기업의 규모, 합법적 지위(소유권 또는 파트너십 등), 기업구조, 주요 거래처 및 특정경제활동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공인기준을 심사해야 함
    - 특히 공인기준 중 상업거래 및 운송기록 관리 시스템 보유와 화물안전관리기준의 엄격한 충족이 어려움을 고려해야 함
  - 중소기업(MSMEs)인지 여부에 대한 분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나. 공인기준

- AEO 공인기준은 크게 4가지로 ① 세관 및 기타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적절한 기록 유지 ② 무역거래와 운송 기록을 관리하는 적절한 시스템 구비 ③ 입증된 재정적 지불 능력 ④ 화물보안 및 안전 유지의무 등이 있음

## 1) 법규준수

- AEO 프로그램 팀은 세관 및 기타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EO 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에 대해 신청자의 법규준수기록을 심사함
  -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재정법에 대한 중요 위반사항이 고려됨
  - 심사대상은 AEO 신청자와 사업운영책임자이며, 검토내용은 과거에 관세소비세 및 관련 법령의 중대위반사항이 빈번한지 여부를 평가함
    - 기업의 임직원과 수출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도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법규준수기록 심사시 관세소비세의 세수입 또는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 없는 다음의 기술적이거나 절차상의 위반사항(오류)은 AEO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발적으로 공개한 오류
  - 법원, 재판소 또는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 등에 의해 결정이 뒤집힌 경우
  - 현재 검토중인 모든 결정
  -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처분을 받은 경우
  
- 법규준수기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에 대해 AEO 신청자는 세관 또는 규제기관에 요청하여 스스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함
  - 즉시 조치 또는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AEO 신청자격이 제한됨

## 2) 상업거래 및 운송기록 관리 시스템

- AEO 신청자는 상업거래와 운송기록을 관리하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시스템을 보유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또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과 같이 감사 기반 관세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회계 시스템
  - AEO 프로그램 팀이 AEO 신청자의 세관거래 또는 운송 기록에 물리적 또는 전자적

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물품의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 및 문서화된 시스템
- 불법적이거나 불규칙한 거래를 탐지 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
- 수출입 관련 허가, 승인 및 문서 취급에 적합한 시스템
- 문서 기록과 정보의 보관 및 검색이 용이하고 정보 손실을 방지하는 시스템
- 법규준수도 유지가 어려울 때 세관에 통보하고 담당 직원에게 해당 문제를 알리는 시스템
- 세관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 권한이 없는 침입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정보 기술보안 시스템

### 3) 재무건전성

- AEO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3년간 재무건전성(지불능력; Financial solvency)을 유지하여야 함
  - 재무건전성은 일반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관세납부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말함
  - 재무건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신청일 기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사업을 청산 또는 파산한 경우
    - 신청일 이전 3년 중 담보물(guarantee)에 대해 미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
    - 관세와 제세금 등 세금 납부를 연기한 경우
- AEO 프로그램 팀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지난 3년간 계좌정보를 검토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심사함
  - 필요한 경우 상무부에 해당 계좌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 적용 가능한 경우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연례 회계 감사 또는 의견으로 언급되는 경우
  - 모든 우발채무와 총당금
  - 정(+)의 순 유동자산
    -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모기업의 부채 또는 금융기관 대출에 의해 자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서류와 같은 지급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부(-)의 순자산을 인정함
  - 순자산과 무형자산의 범위

- AEO 신청자가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사업개시 초기 단계에서 AEO를 신청한 경우 재무건전성은 ① 현금흐름표 ② 재무상태표 및 ③ 임원·비즈니스 파트너·기업소유주가 승인한 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기록 및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함

4) 화물보안 및 안전기준

- AEO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청자는 ① 수출입물품 ② 화물처리절차 ③ 운송절차 ④ 건물(구내)방법 ⑤ 인적자원 관리 ⑥ 거래처관리 등의 보안과 안전 기준을 확립해야 함<sup>209)</sup>

〈표 2-XI-1〉 인도 AEO 공인기준 중 안전 및 보안기준 요약

구분	내용
수출입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승인된 사람만이 화물이 접근</li> <li>- 화물은 항만 감시 또는 제한 구역에 보관</li> <li>- 컨테이너 인장은 국제표준인 PAS,ISO 17712를 충족</li> <li>- 화물관련 서류(운송서류나 구매주문서 등)를 수치화 또는 집계</li> </ul>
화물관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물류체인에서 화물의 운송, 취급 및 보관관련 절차의 무결점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li> <li>- 화물 통관에 사용된 모든 문서를 적절히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li> <li>-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화물관련 정보를 세관에 적시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마련</li> <li>- 화물과 선하증권 또는 상업송장 간 불일치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li> </ul>
운송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물류체인망에서 활동하는 모든 운송수단을 효과적으로 확보</li> <li>- 모든 운송사업자가 화물안전기준을 유지하도록 훈련되어 있음을 보장</li> <li>- 운송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세관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자체검사</li> <li>-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운송 및 운송인의 무결점을 유지</li> <li>- 운송지연발생시 발송자에게 반드시 통지</li> </ul>
건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침입으로부터 안전을 유지</li> <li>- 내·외부, 출입문 등 접근 제어를 위해 울타리·잠금장치·자물쇠와 조명 등 설치</li> <li>- 확인 및 인가된 사람·차량·화물만 접근 허용하며 출입문을 감시 또는 통제</li> <li>- 도난방지 또는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시스템 보유</li> <li>- 국내, 국외, 고가 및 위험물품을 분리 보관하고 내부 울타리를 설치</li> </ul>

209) 자세한 내용은 〈부록 VII〉을 참고할 것

〈표 2-XI-1〉의 계속

구분	내용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채용시 과거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세관 또는 형사처벌 경력을 확인</li> <li>- 고도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배경을 점검</li> <li>- 모든 임직원에게 신분증을 지참하게 하고 소속을 식별</li> <li>- 모든 출입구에 방문자 기록시스템 등을 설치해 신원을 확인</li> <li>- 퇴사한 임직원의 정보 즉시 제거</li> </ul>
거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거래처 선정시 거래처의 안전기준 결함 여부를 사전 탐지하는 등 서면검증절차</li> <li>- AEO 공인거래처로부터 AEO 공인인증서 사본 수령</li> <li>- 비AEO 공인거래처의 경우 AEO 공인과 동등한 보안기준을 준수한다는 서면확인서를 수령</li> <li>- 거래처의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시설물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검토</li> </ul>

자료: CBEC(2015), pp.214~218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 공인등급<sup>210)</sup>

- 수출자와 수입자의 경우 AEO-T1, AEO-T2 및 AEO-T3 등 3개의 등급을 부여 받으며 각 등급에 적용될 공인기준이 상이한 반면 수출자와 수입자 이외의 국제 물류체인 종사자는 AEO-LO라는 하나의 공인등급과 공인기준을 부여받음

#### 1) 수출자와 수입자

- 기본요건과 4가지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 상업거래 및 운송기록 관리시스템 보유 및 재무건전성을 충족한 수출입자는 AEO-T1 등급을 부여받음
- 기본요건과 4가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출입자는 AEO-T2 등급을 부여받음
  - AEO 프로그램 팀이 신청자의 사업체 현장을 사전 방문하여 물리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210) CBCE, 「Circular No. 33/2016-Customs」, 2016. 7. 22., p.4

- 기본요건과 4가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출입자로서 다음 사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자는 AEO-T3 등급을 부여받음
  - AEO-T3 등급 신청일로부터 최소 2년간 AEO-T2 등급을 유지한 수출입자
  - AEO-T2를 소지한 수입자 또는 수출자를 거래처로 두거나 또는 AEO-LO를 소지한 물류업체, 터미널 운영자, 창고 관리인, 창고 소유주 또는 관세사 등을 거래처로 둔 수출입자로서 AEO-T2 공인등급 소지자
  - 인도세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세관이 부여한 AEO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수출입자

## 2) 그 외의 국제물류체인 종사자

- 국제물류체인 종사자 중 수출자와 수입자를 제외한 물류 업체, 터미널 관리인 또는 운영자, 통관업체(관세사) 및 창고 운영자는 기본요건과 4가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시 AEO-LO 등급을 부여받음
  - AEO 프로그램 팀이 신청자의 사업체 현장을 사전 방문하여 물리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3 AEO 공인혜택

- AEO 공인혜택에는 AEO 공인기업의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이외에 세관 절차, 신고납부의 간소화 등이 포함됨
  - 위험관리시스템(RMS)에 따른 수입신고 내용의 위험 분석시 AEO 공인기업의 물품은 낮은 위험점수를 부여받으며 이는 서류 및 현품검사 빈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줌
- AEO 공인혜택은 AEO 대상자별, 그리고 AEO 등급에 따라 상이함

### 가. 수출자와 수입자

- AEO 공인수입자는 신속통관의 혜택과 관세담보액의 비중을 낮출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음
  - 기존 신용공여프로그램(ACP)의 수입자보다 더 높은 신속통관혜택을 부여받음

-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공할 은행 담보 비중을 줄일 수 있음
- AEO 공인수출자는 현품검사비율이 낮아지고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액의 비중이 높아지는 혜택을 제공받음
  - 수출물품 현품검사비율에 대한 규정(Circular No. 6/2002-Cus)에 따른 현품검사 비율이 10%라면 AEO 수출자에 대한 현품검사 비율은 5%로 낮아짐
    - 환급청구 또는 수출보조금이 있는 수출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검사비율은 25%이나 AEO 수출자에 대한 검사 비율은 10%로 낮아짐
    - 민감한 목적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의 50%가 검사대상이나 AEO 수출자는 20%로 낮아짐
  - 환급청구가 가능한 운송증권(drawback shipping bills)의 총금액은 10만루피(Rs 1 lakh)에서 50만루피(Rs 5 lakh)로 상향되며, EPCG와 DEEC를 이용하는 AEO 수출자의 운송증권 총금액은 50만루피(Rs 5 lakh)에서 100만루피(RS 10 lakh)로 상향됨
- <표 2-XI-2>와 같이 AEO 등급별 혜택을 간단히 요약함

**<표 2-XI-2> 인도 수출입자의 AEO 등급별 혜택 요약**

구분 \ AEO등급	T1	T2	T3
무역원활화 수준	• 높음	• T1보다 높음	• 가장 높음
통관 담보	• 은행보증서의 50%	• 은행보증서의 25%	• 담보 없음
위험관리	• 2년에 1번 현장방문	• 3년에 1번 현장방문	• 위험에 따라 세관이 개입
컨테이너 검사	• 신속 검사	• 랜덤검사 선별시 최우선 검사	• 검사생략 또는 검사시 최우선 검사
관세환급	• 신속하게 환급	• 45일 안에 환급	• 30일 안에 환급
추가혜택	-	• 창고에 소비자판매가격(MRP) 스티커 부착 • 관세지불 연기가능 • 무서류 통관 가능	-

자료: India Customs, *Indian Customs An overview*, 2016, p.35

## 나. 그 외의 국제물류체인 종사자

- AEO 공인운송업체는 환적에 필요한 담보를 면제받고 물품 보관시설을 제공받는 등의 혜택이 부여됨
  - 물품 환적시 필요한 은행담보를 면제받는 혜택을 제공받음
  -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환적할 경우 보관 가능한 시설을 제공받음
  -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국제 운송화물, 화물의 분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전 선별된 컨테이너, 그리고 진입로를 통한 화물이동의 경우 세관의 감시가 생략됨
- AEO 공인컨테이너관리인은 세관영역에서 화물 취급시 은행 담보가 면제되며 승인된 보관기간을 10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
- AEO 공인관세사는 관세사 면허를 AEO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면허 갱신비용이 면제됨
- AEO 공인창고보관업자는 신규 창고의 신속승인절차, 담보금액 비중의 저하 및 창고 보관기간의 연장 혜택을 제공받음
  - 새로운 창고에 대해 신속한 승인이 부여됨
  - 은행 담보금액의 비중이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 관세금액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낮아짐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창고 보관기간을 1회 6개월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음

## 4 AEO 공인신청절차

- AEO 공인이 가능한 대상은 국제공급망체인과 관련된 종사자로서 제조사, 수출자, 수입자, 물류업체, 선박 및 항공업체, 운송업체 및 관세사 등이 있음
  - 그 외 항구 운영자, 승인된 특송업체 및 하역업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일반적인 은행, 보험회사 및 컨설팅 회사와 같이 세관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즈니스는 AEO 공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AEO 공인신청자격은 인도 내에 법적 실체로 설립된 회사로서 3년 이상 사업체를 영위하여야 함
  - 여러 기업을 보유한 그룹기업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AEO 공인기준은 법인의 국제 무역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활동내용 및 활동위치에 대해 적용됨
  
- AEO 공인신청시 필요서류는 ① 인도의 기업등록부(Registrar of companies)가 발행한 기업등록증명서 ②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위치 등 세부사항 ③ 사업자 명의의 계좌 증명서 등이 있음<sup>211)</sup>

### 가. 공인신청

- AEO 공인신청자는 신청시 AEO 신청서, 화물안전기준 계획, 이행계획, 현장계획 및 자체평가 양식을 본부세관의 AEO 관리자(AEO programme manager)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AEO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됨
  - AEO 관리자는 관세소비세의 검사국 소속임<sup>212)</sup>

### 나. 신청서 반환 또는 거절

- AEO 관리자는 AEO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자격대상이 아닌 경우,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부적격 대상임을 통보하고 재작성을 요청하거나 신청서 자체를 거절하여야 함
  
- AEO 관리자는 다음의 AEO 신청서를 반환하고 자격을 갖춘 후 재신청할 것을 안내하여야 함
  - 신청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 신청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 AEO 공인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211) CBEC(2015), p.211 (3,7)

212) 주소는 Directorate General of Inspection, Customs & Central Excise, 'D' Block, I.P. Bhawan, I.P. Estate, New Delhi - 110002. 임

- 신청서 작성 당시 AEO 신청자가 파산절차에 놓인 경우
  - 기존에 부여된 AEO 자격이 취소된 경우로서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AEO 관리자는 ① 신청자가 AEO 자격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거나 ② 과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③ 신청서에 명시된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청서를 거절하여야 함

#### 다. 신청서 처리과정

- AEO 관리자는 AEO 신청서를 수령 후 신청자가 다음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함
- 세관 및 기타 법적 규정을 준수한 기록의 관리 여부
  - 상업거래와 운송 기록을 관리하는 적절한 시스템의 보유
  - 재정 지불능력
  - 화물 보안 및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적절한 시스템의 보유
- AEO 신청서가 유효한 경우 AEO 프로그램 팀은 신청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AEO 신청서 내용을 확인함
- 세관기준을 충족하는 AEO 신청서는 AEO 관리자가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AEO 자격을 부여받음

#### 라. 세관의 사전인증평가<sup>213)</sup>

- 신청서의 유효성을 확인한 AEO 관리자는 신청서 수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전인증감사 예정을 통보하고 방문일정을 협의함
- 사전인증평가는 AEO 신청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함임
  - AEO 신청자는 AEO 관리자가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전인증평가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AEO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함

---

213) CBEC(2015), pp.218~219

- AEO 프로그램 팀은 사업 규모, 사업 성격, 기록보관 시스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도 등과 함께 다음 사항을 검토함
  - 세관거래에 관한 각종 정보
  - 세관거래에서 발생한 과실(오류)의 구제조치
  - 회계와 물류 시스템
  - 내부통제 방법과 절차
  - 화물의 흐름
  - 세관 통관 대리인(관세사)의 사용
  - 컴퓨터/IT 및 문서의 보안
  - 재정적 지급 능력
  - 건물, 화물, 고용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안 기준
  - 물류 프로세스
  - 화물의 보관
  
- 사전인증평가에 참여하는 AEO 신청자는 AEO 프로그램 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운송절차, 기록보관 및 보안과 같은 특정 비즈니스 활동을 담당하는 개인 또한 사전인증평가에 협조해야 함
  
- AEO 프로그램 팀은 사업 현장이 AEO 표준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 사업체의 모든 부문을 평가하지 않으나 사업 활동의 범위가 다양하거나 각 사업장마다 상이한 운영방식을 갖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을 평가·방문할 수 있음
  
- 사전인증평가의 방문과 평가시간은 사업의 규모, 사업체의 수, 운영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함
  - AEO 프로그램 팀은 AEO 신청자에게 예상 소요시간을 참고차 안내하지만 언제든지 수정 가능함
  
- 사전인증평가 후 AEO 프로그램 팀은 결과보고서 작성과 함께 AEO 승인 추천서를 AEO 관리자에게 제공함
  - AEO 신청자의 결과보고서와 추천서의 내용 확인 및 서명은 AEO 승인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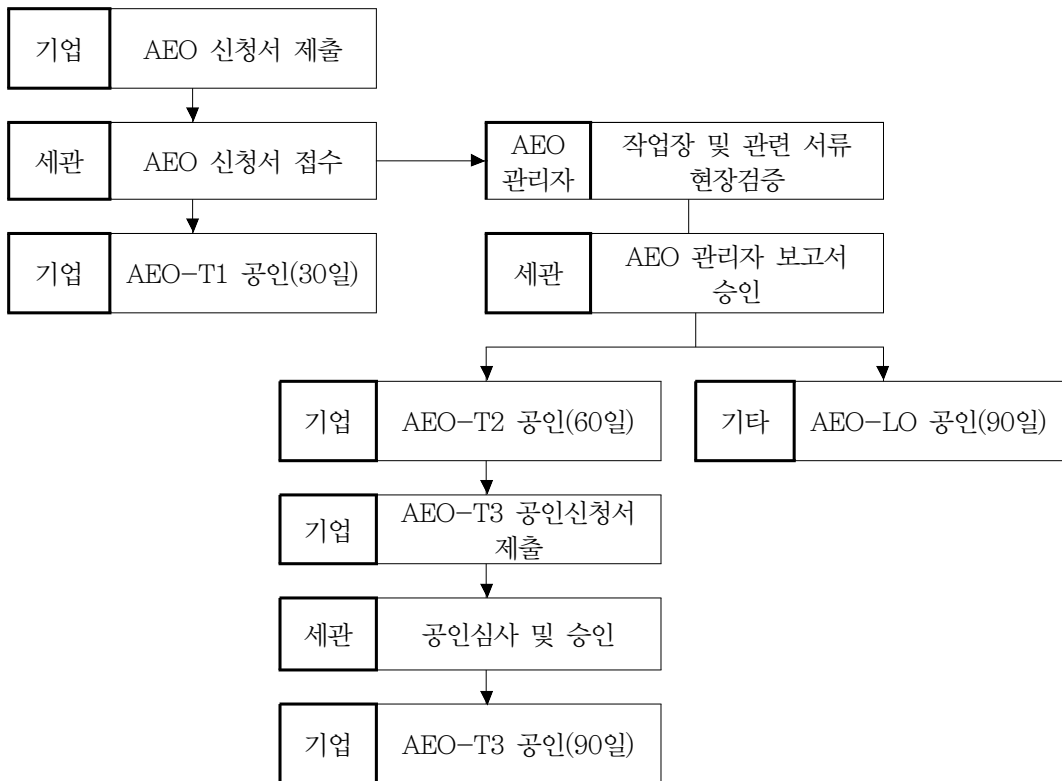
- 사전인증평가를 진행했으나 AEO 신청서가 수락되지 않은 경우, AEO 신청자는 부족 사항을 통보받고 6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할 수 있음
- AEO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없는 경우, AEO 프로그램 관리자는 AEO 신청서 거부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 AEO 신청자는 AEO 신청서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사전인증평가는 AEO 신청자와 AEO 관리자 간 합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기간 동안 신청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소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음
  - 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AEO 신청자는 사전인증평가의 재개 일정과 신청서 수락 여부의 재결정일지를 서면으로 통보받음

### 마. AEO 공인 획득

- AEO 관리자는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총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AEO 공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AEO 사전인증평가 정지기간은 공인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AEO 관리자는 AEO 공인인증서를 전자 사본과 함께 하드카피 원본을 신청자에게 송부함
  - AEO 공인인증서는 기업 표지반이나 기타 홍보자료에 사용하기 적합한 AEO 로고가 포함되며, 로고의 저작권은 인도 관세소비세국을 대신하여 AEO 관리자가 소유함
- AEO 공인의 효력은 AEO 공인인증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활성화되며 AEO 공인소지자는 10일 이후 모든 세관 관련 서류에 AEO 공인번호를 입력해야 함
- AEO 공인 소지자는 AEO 공인인증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외부에서 업무용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공인번호를 비공개하여야 함
  - AEO 공인자격 자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AEO 공인번호는 대외비로 관리함

- AEO 공인등급에 따라 AEO 공인 갱신 신청서 제출 마감기간이 상이함
  - AEO-T1의 경우 유효기간 도래 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T2는 60일, T3와 AEO-LO는 90일임
  
- 인도 관세소비세국(CBEC)은 AEO의 관리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CT 기반 솔루션을 도입중이며 AEO와 AEO 관리자간 상호 협력을 도모함<sup>214)</sup>

[그림 2-XI-1] 인도 AEO 신청과정 요약



자료: India Customs, *Indian Customs An overview*, 2016, p.37

214) AEO 공인 소지자는 AEO 관리자와 이메일(Aeo.India@icegate.gov.in)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  
 (자료: India AEO Revised Guidelines, 「Circular No. 33/2016-Customs」, p.11)

## 5 AEO 공인 사후심사

### 가. AEO 공인수준 유지

- AEO 공인 획득 후 AEO 공인 소지자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자격을 유지해야 함
- AEO 공인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 또는 무역활동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즉시 또는 발생 후 14일 이내 AEO 프로그램 팀에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은 AEO 공인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AEO 공인 소지자는 신규 법인명으로 AEO 재공인을 신청해야 함
  - 회사명 및 회사 주소의 변경
  - 업태 또는 업종의 변경
  - 회계 프로그램 및 컴퓨터 시스템의 변경
  - 세관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인사에 대한 변경
  - 국제 공급망과 관련된 지점 또는 지점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변경
- 세관 거래 관련 위반(오류)사항 발생시 AEO 공인 소지자는 AEO 프로그램 팀뿐만 아니라 관할 세관에도 자발적 신고해야 함
  - AEO 공인 소지자가 ① 위반의 이유를 조사하거나 ②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러한 위반사항은 AEO 공인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나. AEO 공인 유효기간

- AEO 프로그램 팀은 AEO 공인신청 당시 기준과 AEO 공인자격을 주기적으로 검토함
  - AEO 공인 소지자는 공인기준을 준수하고 스스로 재평가를 시행해야 함

-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인도 관세소비세 총국의 심사부(Directorate general of inspection customs and central excise: DGICCE)에 의해 연장이 가능함

#### 다. AEO 공인자격정지

- AEO 관리자는 다음의 사례를 발견한 경우 AEO 공인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기소를 초래할 만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관세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 AEO 공인기준이나 관련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미준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AEO 관리자는 AEO 공인자격을 정지하기 전 AEO 공인 소지자에게 연락하여 항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AEO 공인 소지자는 AEO 관리자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AEO 공인 소지자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AEO 관리자에게 공인자격을 일시 정지하고 시정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음
  - AEO 프로그램 팀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AEO 공인이 정지된 경우 AEO 프로그램 팀은 즉시 정지사항을 모든 세관에 통보해야 함
- AEO 프로그램 팀은 공인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판단하면 AEO 관리자에게 공인 정지를 철회할 것을 권유할 수 있음

#### 라. AEO 공인자격취소 및 이의제기

- 다음의 경우 AEO 공인자격이 취소됨
  - AEO 공인자격이 이미 정지되었고 AEO 공인 소지자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AEO 공인 소지자가 관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항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AEO 공인 소지자가 공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 AEO 공인취소는 AEO 공인 소지자에게 통보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AEO 공인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신청 자격이 제한됨
  - AEO 공인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AEO 공인 소지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 관세청의 검사국장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검사국장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내용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려야 함

## 6 AEO 상호인정협정(MRA)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이란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결과와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국가간의 협정임<sup>215)</sup>
  - MRA를 통해 협정국은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 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AEO MRA’란 협정국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뜻함
  - 즉, 우리나라 AEO를 획득한 업체는 자동적으로 MRA 협정국의 AEO를 획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 2017년 현재 인도는 홍콩과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하였고 향후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 체결을 논의할 예정임<sup>216)</sup>

215)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상호인정협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577&cid=43665&categoryId=43665>(검색일자: 2018. 1. 12.)

216) CBEC, “FACT SHEET AEO,” [http://www.cbec.gov.in/htdocs-cbec/home\\_links/india-aeo-prgm](http://www.cbec.gov.in/htdocs-cbec/home_links/india-aeo-prgm)(검색일자: 2017. 9. 1.)

- 인도와 홍콩의 AEO MRA는 2013년 11월 28일에 체결하여 현재 시행중임<sup>217)</sup>
- 인도와 우리나라의 AEO MRA는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17년 4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됨<sup>218)</sup>
- 관세청은 인도와의 AEO MRA를 통해 통관시간 단축과 통관문제 신속해결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음
  -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의 인도 수출화물에 대해 기존 50%에서 9%으로의 물품 검사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하여 검사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제까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인도 세관직원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에서 인도 세관을 대면할 공식적인 경로가 마련되었으므로 수출기업 입장에서 혜택의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 평가하였음
-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인도에서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외국 AEO 수출자에게만 제공하는 해외거래처부호(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OBIN)을 수출 전 반드시 발급받아 인도 수입통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 해외거래처부호(OBIN)는 수출기업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뒤 인도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인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up>219)</sup>으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

217) GOVHK, "Hong Kong and India Customs sign Arrangement to mutually recognise respectiv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http://www.customs.gov.hk/en/publication\\_press/press/index\\_id\\_1078.html](http://www.customs.gov.hk/en/publication_press/press/index_id_1078.html)(검색일자: 2017. 12. 22.)

218) 관세청 보도자료, 「인도의 비관세장벽, AEO MRA로 넘는다」, 2017. 3. 15

219) aeo.india@icegate.gov.in

##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인도의 일반적인 수출입물품 대상은 가정 소비용 수입물품 또는 보세창고 보관용 수입물품으로 이들은 규정된 통관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sup>220)</sup>
  - 수입통관절차는 물품, 금액, 수량, 면세 통보, 관세율 표제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이 들어있는 수입신고서의 제출이 필수적임
  - 수입신고서는 수입자의 자체평가를 우선으로 작성되며 세관직원의 심사 결과 부정확하다면 재평가 될 수 있음
  
- 인도 세관의 수입신고서 심사는 세관 심사자가 면밀히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량에 따라 차용하여 심사함
  - 심사자는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정보나 관세평가 또는 품목분류 등 통관 정보 등의 사전 정보를 지양함
  - 세관은 물품의 통관 시점에 물품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의 상태, 관세평가, 신고서의 기타 부분을 검사함

---

220) CBEC,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Customs Manual 2015*, [http://www.cbec.gov.in/resources//htdocs-cbec/deptt\\_offcr/cs-manual2015.pdf](http://www.cbec.gov.in/resources//htdocs-cbec/deptt_offcr/cs-manual2015.pdf);jsessionid=1FA6FCA75F9DEEE6300AB3A0614F3954, p.16(검색일자: 2017. 3. 30.)

- 수입신고서와 물품 간 불일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세관 심사자는 통관보류해제 (Out of Charge) 명령을 내리며 그 이후에 물품의 통관이 완료됨
  
- 마찬가지로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물품 평가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운송증권(Shipping Bill),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수출물품을 검사한 뒤 수출지시(Let export order) 문구가 운송증권에 기재됨으로서 완료됨

## I. 수입통관제도

### 1 개요<sup>221)</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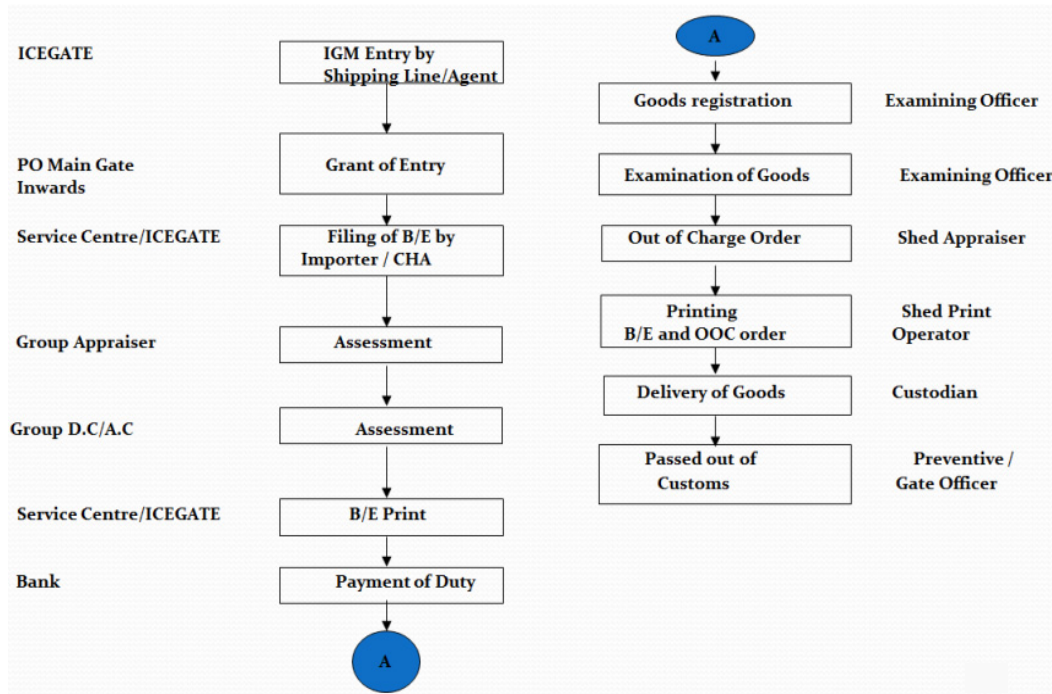
- 수입자는 수입상품, 원산지,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사법에 의해 등록된 관세사(Customs Broker)를 고용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처리함
- 수입통관서류의 관리, 제시 및 통관절차는 업무를 능숙하게 하도록 교육받은 세관직원에 의해 처리됨
  - 세관직원의 주요 업무는 대외무역법 및 수입규제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서와 수입신고서의 특정 정보를 면밀히 조사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품목분류, 세율을 결정하는 것임
- 세관직원은 수입물품이 신고서상 기재된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적하목록명세서(Import general manifest: IGM)와 제시된 문서를 수기 또는 EDI 시스템을 통해 조사함

---

221) CBEC(2015), pp.7~8

- 세관직원은 수입물품의 의무사항 또는 수입허가대상 확인을 위해 물품을 검사함
  - 제출된 수입신고서와 기타 관련서류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심사한 세관공무원의 보고에 따라 의무 등이 결정됨
  - 수입물품에 별도 금지사항이 없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물품을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통관을 허용함
  
- 세관직원은 물품의 기존 정보가 아닌 세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세가격(Tariff value)과 품목분류 정보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 후 관세평가를 진행함
  - 이렇게 평가된 물품의 관세는 수입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납부함
  
- 수입통관이 보류되어 별도 장소에 적재중일 때에는 해당 항만 또는 국제공항의 세관직원이 예외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 해당 세관공무원은 물품의 자연적인 상태 점검, 관세평가, 기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지정 세관(Custom House·Air Cargo Complexes ICDs)의 요청에 따라 샘플을 채취함
  - 물품 상태, 수량, 가격 등에서 별다른 불일치가 없는 경우 통관보류가 해제(Out of customs charge)되고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됨
  
- 품목분류와 관세평가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률 조항의 위반이 보이는 경우, 물품에 대한 추가조사를 반드시 거친 후 최종적으로 통관함
  - 수입자는 채권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잠정적인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 물품이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거나 잠정적인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 등이 알려지고 판결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의 제기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음

[그림 3-1-1] 인도의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자료: India Customs, *Indian Customs An overview*, 2016, p.10

## 2 수입신고절차

### 가. 수입신고서 작성<sup>222)</sup>

- 「관세법」 제52조부터 제56조에 해당하는 환적물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제4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함
  - 수입통관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은 일반적으로 소비성 수입물품과 보세창고에 보관할 물품들임
  
-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 전 대외무역총국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에서 수출입 코드(an Importer-Export Code: IEC)를 받아야 함

222) CBEC(2015), pp.16~17

- 세관은 온라인 EDI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코드(IEC)를 대외무역총국(DGFT)으로부터 전달받음
- 수입물품이 EDI 시스템을 통해 통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식적인 신고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수입자는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서 처리에 필요한 특정 사항이 있는 화물신고서를 세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
- EDI 시스템에서 수입업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모든 관련 정보를 담은 전자 형식의 신고서를 EDI 서비스센터로 전송하여 수입신고를 완료함
  - EDI는 수입신고 데이터를 받으면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수입신고서의 적정성 확인을 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생성함
  -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EDI 서비스센터 운영자는 EDI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EDI 시스템은 인쇄된 체크리스트에 승인된 수입신고번호를 생성하고 수입자 또는 관세사에게 재전송함
  - 수입자 또는 관세사는 통관 전 최종 수입신고서에 서명함
- 수입신고번호는 운송업자에 의해 작성된 수입적하목록명세서(IGM)와 비교하여 검증한 뒤 발급됨
  - 서류 수동방식에서 수입자는 해당 선박에 명시된 화물을 검사한 선박회사의 의견이 명시된 수입신고서를 필요로 함
    - 선박회사의 의견을 받은 후 수입신고서에 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모든 수입신고서 사본에도 영향을 미침
  - EDI 시스템에서는 수입신고서와 수입적하목록명세서의 검증을 EDI 시스템 자체에 의해 처리하며, 확인 후 수입신고번호를 생성함
- 수입신고번호 등록 후 수입신고서는 서류 형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관세평가를 담당하는 세관부서로 이관됨
  - 해당 세관부서는 관세가 달리 적용되는 물품별로 다수의 그룹으로 포진되어 있으며, 관세평가, 수입 규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겸함
- EDI 시스템이 아닌 항구 또는 공항 세관을 통해 가정용 소비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서를 4부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원본과 사본은 세관, 세 번째 사본은 수입자, 그리고 네 번째 사본은 송금은행에게 제출함
- 항구 또는 공항 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함
  - 서명된 송장
  - 포장리스트
  - 선하증권, 화물지시서(D/O) 또는 항공운송장
  - GATT 관세평가 신고서 양식
  -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작성한 수입신고서
  - 필요한 경우 신용장(L/C)
  - 보험증권
  - 필요한 경우 수입허가자격증서
  - 필요한 경우 산업자격증서(Industrial license)
  - 필요한 경우 검사증명서
  - 가능한 경우 카탈로그, 기계류, 예비품 또는 화학 물질에 대한 목록, 기술 문서 작성 서류
  - 예비 부품, 기계 구성요소 또는 기계의 개별 가격 명세
  - 특혜관세율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 나. 자진신고(Self-assessment)<sup>223)</sup>

- 2011년 재정지원법(Vide Finance Act)에 따라 「관세법」 제17조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진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었음
  - 수출입자는 수출입신고서 또는 운송증권(Shipping Bill)을 근거로 수출입 물품에 대해 납부할 관세를 자체평가하고 자진신고하여야 함
- 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수출입자는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품목분류, 관세율, 관세평가, 관세면제 및 관세 혜택 등을 올바르게 신고하며 이를 자체 검증할 책임이 있음

---

223) CBEC(2015), pp.18~20

- 수입자가 전자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담당 세관직원은 수입자에게 수기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수입신고서는 1976년 수입신고서 서류 법령(Bill of Entry Forms Regulations, 1976)에 의해 계속적인 효력을 나타낼 것임
  - 그러나 세관장(Commissioner)은 진정하고 합당한 경우에만 수기방식을 허용하는 등 일상적으로 수기방식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함
  
- 수입자가 제출한 수출입신고서가 위험관리시스템(RMS)에 의해 전산심사가 금지된 경우에는 적정한 세관직원에 의해 수기로 확인될 수 있음
  - 전산심사 금지는 위험관리시스템(RMS) 이외에도 세관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음
    - EDI 시스템에 전산심사 금지 기록을 작성한 후 수기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전산심사 금지 명령에 따라 세관은 수입신고서 재검토 조치, 실물 검사 또는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적용할 수 있음
  - 수입신고자의 자진신고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관세는 재평가될 수 있음
  
- 자진 신고한 수입신고서 또는 운송증권의 검증은 수출입 물품의 관세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율, 관세면제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의 정확성에 의함
  - 검증은 위험관리시스템(RMS)을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짐
  
- 검증을 위해 세관직원은 수출입물품의 관련 문서나 정보를 요구하는 등 신고서와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
  
- 관세평가에 대한 자진신고가 부적절하다면 세관직원은 해당 관세를 재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재평가한 관세를 통지하여야 함
  
- 세관이 재평가한 관세에 수출입자가 동의하진 않지만 신속 통관을 필요로 한다면, 수출입자는 우선 잠정관세를 납부하고 부족한 세액에 대한 담보를 추가 제공해야 함
  - 잠정관세 대상은 ① 수출입자가 재평가된 관세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 세관에서

관세를 재평가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거나, 또는 ③ 긴급 통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수출입자가 자진신고할 능력이 없거나 자진신고를 하였지만 제17조에 따라 관세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자는 세관직원이 잠정적으로 계산한 관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잠정 관세는 최종 관세로 확정되며, 자진신고가 완료되면 잠정관세는 재평가된 관세로 전환됨

#### 다. 물품검사<sup>224)</sup>

- 수입물품 중 일부는 수입신고서의 세부명세의 정확성을 판단하고자 랜덤으로 물품 검사를 받게 됨
- 그러나 물품검사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 랜덤으로 추출되지 않았더라도 물품검사를 진행하며 이를 최초물품검사평가(First check appraisalment)라고 함
  - 수입 전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정보를 완벽히 가지고 있지 않아 자진신고 전 물품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세관에서 수입자 자진신고 전 물품을 검사해야겠다고 결정한 경우
- 최초물품검사평가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됨
  -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또는 EDI에 수입물품의 명세를 입력할 때 최초물품검사평가 신청 이유를 작성하여 이를 신청해야 함
  - 세관은 수입물품 검사를 위해 수입신고서의 사본에 검사명령을 기재한 뒤 이를 수입자 또는 관세사에게 반환하여 수입(보세)창고로 가져오도록 지시함
  - 창고 또는 부두의 물품검사인은 검사명령에 따라 물품검사 후 해당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샘플을 취득함
  - 수입자는 관세평가를 위해 담당 세관직원에서 수입신고서를 반환해야 함
    - 세관 부감독관(Assistant/Deputy commissioner)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10만루피(Rs.1 lakh) 이상인 경우 해당 수입신고서에 부서(countersigned)한 뒤 이를 수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수입물품은 자진신고 및 관세납부 이후에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2차 물품검사평가(Second check appraisalment)’라고 함
  - 대부분의 위탁판매물품(consignments)은 2차 물품검사에 적용되지만, 위탁화물 전체가 아닌 무작위로 선별된 물품만 검사됨
  
- EDI 시스템하에서 수입신고서는 세관 심사부서 또는 최초물품평가검사에 의한 심사 후, 물품검사 여부가 결정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시 EDI 전산에 등록됨
  - 등록이 끝나면 수입신고서는 창고 물품검사인에게 전달됨
  - 관세사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모든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음
  
- 창고 물품검사인은 물품검사 후 EDI 시스템에 해당 결과를 입력하고 최초물품검사평가그룹에 해당내용을 전달함
  - 관세평가가 이미 완료된 경우 통관보류를 해제함(out of charge)
  
- 수입자, 관세사 및 창고 물품검사인은 수입신고서와 통관명령을 각각 인쇄하여 보관해야 함
  - 모든 사본에는 물품검사 보고서, 통관번호 및 창고 물품검사인의 이름이 적혀 있음
  - 2개의 사본은 담당 세관직원의 서명 후 각각 수입자 또는 관세사에게 교부됨
  - 1개의 사본은 수입신고서의 세관 사본이 첨부되어 창고 물품검사인이 보관함

## 라. 담보의 제공<sup>225)</sup>

- 무관세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은 통관 시 은행의 담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함
  - 가령 수출촉진계획에 따라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각 조건이행을 위해 미리 은행 담보를 세관의 관세평가 전에 제공하여야 함
  
- 만약 수입자가 은행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수입물품의 관세는 지불되어야 함

---

225) CBEC(2015), p.21

### 마. 관세납부<sup>226)</sup>

- 수입자는 세금납부 고유서식을 이용하여 지정은행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수입자는 관세납부고유서식(TR-6 Challan)과 GST 납부 고유서식(GAR-7 Challan)을 작성해야 함
  - 관할 세관마다 지정한 은행명과 지점명이 다르므로 수입자는 관세 납부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수입자는 세관에서 반환 받은 수입신고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배서하여 관세가 납부하였음을 증명함
  
- 2012년 9월 17일부터 관세의 전산납부(e-payment)는 승인받은 고객 프로그램(Accredited Clients Programme)에 등록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 1건당 납부해야 할 총 관세가 10만루피(Rs.1 lakh) 이상인 수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 바. 수입신고서 수정<sup>227)</sup>

-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 제출 후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세관장의 대리인(Deputy/Assistant commissioner)의 승인을 받고 수정할 수 있음
  
- 컨테이너번호의 수정은 운송회사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수입신고서의 수정은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요구 받을 수 있음

---

226) CBEC(2015), p.21

227) CBEC(2015), p.21

### 3 위험관리시스템<sup>228)</sup>

---

#### 가. 개요

-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RMS)’이란 고위험군의 수입물품을 선별하여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진행하고, 저위험군의 물품은 신속통관을 도모하도록 도와주는 무역 원활화 시스템임
  - 2014년 10월 기준, 수입자의 97.6%가 위험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했음
  
- 위험관리시스템의 활용은 수입통관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자진신고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무역의 세계화 이후 전 세계 통관의 흐름은 각 문서를 면밀히 조사하고 모든 위탁품 등의 일상적인 평가, 동시 감사, 검사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통관 행정시간을 단축하는 것임
  - 또한 자진신고납부제도를 통해 법규 준수도가 높은 물품의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항구와 공항에서의 화물 체류시간과 거래비용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음
  
- 위험관리시스템의 심사기준은 질적 평가, 물품검사 및 선정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사후심사(Post-Clearance Compliance Verification: PCC)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
  - 세관의 일상적인 평가, 동시 감사 및 심사의 관행 등을 위험관리시스템의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는 추세임
  - 사후심사제도(PCC)는 통관 이후 관세평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제도로써 수입물품의 통관 신속성을 높이면서 법규준수를 관리, 감독 및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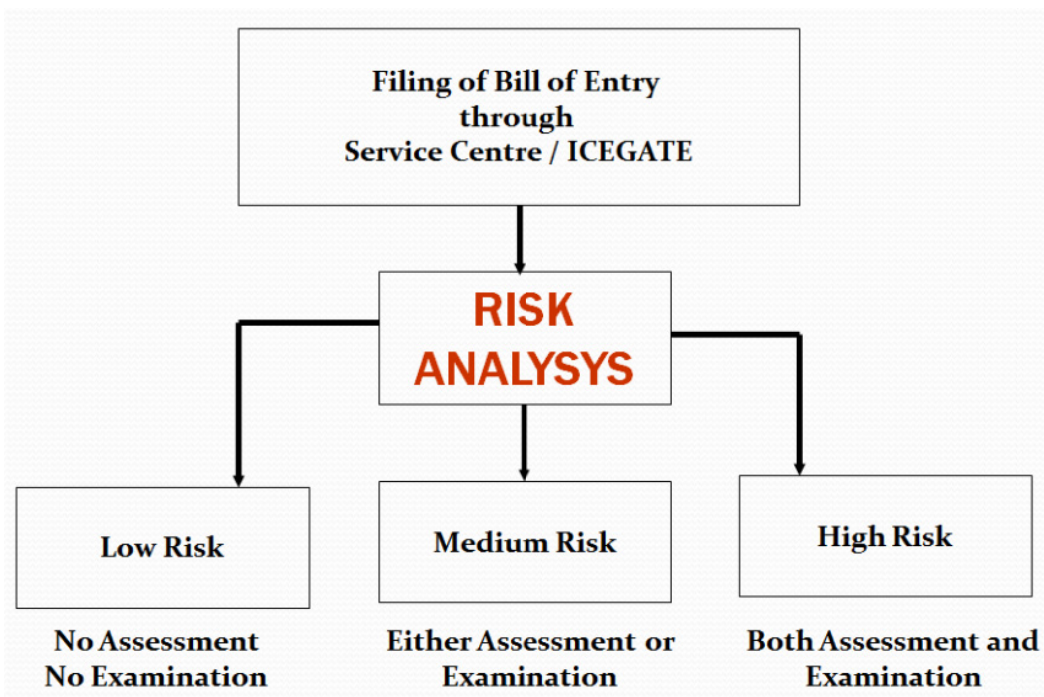
---

228) CBEC(2015), pp.22~23, howtoexportimport, <http://howtoexportimport.com/Is-Risk-Management-System-RMS-simplify-import-What-158.aspx>(검색일자: 2017. 8. 1.)

## 나. 세부 내용

- 수입신고와 수입적하목록명세서(IGM)의 내용은 ICEGATE<sup>229)</sup>를 통해 위험관리 시스템(RMS)으로 전송됨
- 수입통관 단계에서 위험관리시스템은 위험분석을 통해 수입신고건의 심사 조치를 취하거나 생략 여부를 결정함
  - 조치는 서류심사, 물품검사 또는 둘 다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됨
  - 별도 조치가 없다는 것은 심사 또는 물품검사 없이 관세납부 후 통관보류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함

[그림 3-1-2] 인도의 위험관리시스템(RMS)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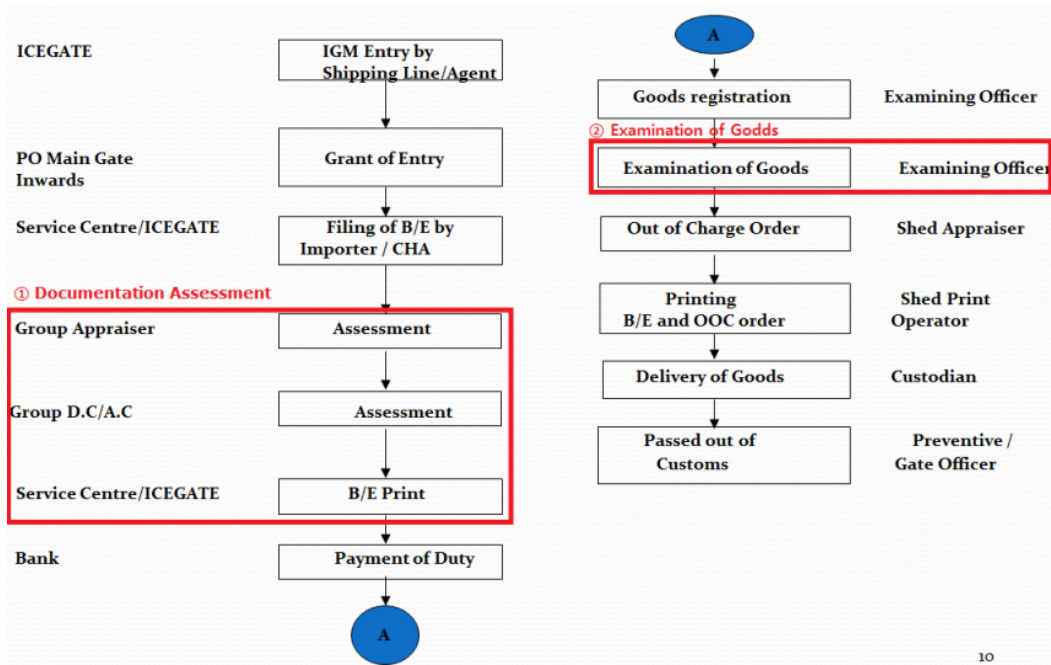


자료: India Customs, *Indian Customs An overview*, 2016, p.9

229) 우리나라 UNUPASS 시스템과 유사한 통관시스템

-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심사하는 세관직원은 세관 지침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함
  - 단, 위험관리시스템에서 포착하지 못한 위험 해결을 위해 경우에 따라 지침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그러한 경우 해당 이유를 기록하고 관할 관세청장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물품검사관은 EDI 시스템상 부서별 의견(departmental comments) 칸에 관세청장의 승인과 지침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한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야 함
  
- 수입신고 후 위험관리시스템(RMS)은 사후심사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수입신고서는 EDI시스템에 의해 정밀히 조사되기 위해 심사직원에게 전달됨
  
- 심사직원은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면밀히 조사하고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알려줘야 함
  
- 사후심사의 조기완료와 세수확보를 위해 심사직원은 수입자의 견해를 묻는 합의문서(Consultative letter)를 발행함
  - 이는 수입자가 심사직원의 의견에 동의 할 경우 자발적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수입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심사직원은 공식절차를 거쳐 관세납부통지 또는 판결등을 발부함

[그림 3-1-3] 인도의 위험관리시스템에 따른 서류·현품심사 생략시 수입통관절차



주: 저위험 수입자의 수입물품 통관시 ① 서류심사와 ② 현품검사는 생략함  
 자료: India Customs, *Indian Customs An overview*, 2016, p.13

## II. 수출통관제도

### 1 개요

---

- 수출자는 운송증권(Shipping Bill)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세관 또는 EDI 서비스 센터의 수출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수출 통관절차를 완료함
- 세관직원은 부과 가능한 관세와 기타 세금을 평가하고 관세환급이나 관세면제 적용대상의 경우 이러한 수출 인세티브 적용(관세환급 또는 면제 등)이 타당한지 점검함
- 수출물품의 검사 여부는 선적 전 운송증권(Shipping Bill)에 해당 여부가 표시됨
  - 부두, 컨테이너 단지(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및 내륙연계수송기지(Inland container depots: ICD)의 세관직원은 백분율을 기준으로 수출물품을 랜덤 검사함
  - 검사결과 신고서와 물품 간 불일치 발생 등 오류가 있거나 선적과 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선적은 허용됨
- 검사 단계에서 허위사실(fraudulent practices)이 발각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2 수출통관절차

### 가. 수출신고절차<sup>230)</sup>

- 수출자는 통관 전 관세청(DGFT)에서 수출입코드(Importer Export Code: IEC)와 외환코드(Foreign exchange dealer code)를 먼저 획득하여야 함
  - EDI 시스템하에서 IEC코드 신청은 관세청의 세관시스템에 의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함
  - 수출금액 확인을 위해 승인된 외환딜러코드를 등록하여야 하고, 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을 위하여 지정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EDI가 아닌 수기로 수출통관을 진행한다면 송금보증서류(Guaranteed remittance form: GR form)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세관은 송금보증서류(GR form)와 수출입코드(IEC)의 작성내용을 비교 확인 후 이를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으로 송부함<sup>231)</sup>
  - 단, 2만 5,000달러 이하의 수출과 50만루피(RS. 5 lakh) 이하의 선물 수출의 경우 송금보증 서류 작성이 제외됨
- 부두의 물품관리인은 수출물품 검사목록과 EDI 수출신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수출 물품을 부두로 입하시킬 수 있음
  - 물품관리인은 수령한 검사목록에 따라 실제로 출입시킨 수출물품의 양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부두에 수출물품을 양하한 뒤, 수출자 또는 관세사는 지명된 세관직원에게 연락하여 부두의 물품관리인이 배서한 검사목록과 물품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소비세 환급신청서(Annexure-14, ARE-1)<sup>232)</sup> 등의 수출통관서류를 제출함

230) CBEC(2015), p.27

231) allinterview, "What is GR form," <https://www.allinterview.com/showanswers/113155/gr-form-use-step-various-department-some-little-knowledge-used-custom-wher-fera-a.html>(검색일자: 2017. 8. 11.)

232) SAP, "ARE 1 FORM," <https://archive.sap.com/discussions/thread/407953>(검색일자: 2017. 8. 17.)

- 세관직원은 실제로 수취한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한 후 이를 전자 운송증권에 표기한 뒤 모든 원본서류를 수출물품 검사를 진행할 부두검사인(Dock appraise)에게 전달함

## 나. 물품검사<sup>233)</sup>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세관등록이 완료되고 검사 여부가 결정되면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단, 수출자의 귀책으로 물품가격, 관세환급 사항, 출항 및 입항 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출물품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함

### 1) 물품검사 제외대상

- 컨테이너 창고(ICD/CFS) 또는 이와 유사한 창고에서 세관직원에게 의해 물품이 봉인된 수출물품 및 무료 운송물품은 일반적으로 현품검사를 하지 않음
  - 단, 컨테이너실이 위조되었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현품검사를 진행
  - 특이사항으로 인해 창고물품의 현품검사를 하는 경우 세관 부감독관(Deputy/Assistant commissioner)의 허가를 득해야 함
    - 무료운송물품은 허가대상이 아님

### 2) 물품검사의 기준 및 비율

- 물품검사의 기준 및 비율은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액, 인센티브 비율 또는 무료 운송물품의 가격에 따라 상이함
  -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액에 대해 10만루피(Rs. 1 lakg)를 기준으로 물품검사 비율이 결정됨
  - 수출촉진용 자본제(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EPCG)와 관세면세인증물품(Duty Exemption Entitlement Certificate: DEEC)의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 50만루피(Rs. 5 lakg)를 기준으로 검사비율이 결정됨

- 마지막으로 대외무역정책에 따른 무료 운송물품가격에 대해 200만루피(Rs. 20 lakg)를 기준으로 검사비율이 결정됨

〈표 3-II-1〉 인도의 수출물품 검사 기준

(단위: 루피, %)

구분	기준	검사비율 <sup>3)</sup>
관세환급액	10만루피 이하	2
	초과	10
수출 인센티브금액 <sup>1)</sup>	50만루피 이하	2
	초과	10
무료 운송물품가격 <sup>2)</sup>	200만루피 이하	2
	초과	10

주: 1), 2) FOB 기준

3) 민감 지역(두바이, 샤르자, 싱가포르, 홍콩 및 콜롬보) 수출시 기준 이하 25%, 기준 초과 50%

자료: CBEC(2015), p.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AEO 공인 수출자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검사 기준과 비율보다 완화된 혜택을 적용 받음

〈표 3-II-2〉 인도의 AEO 공인 수출자의 수출물품 검사 기준

(단위: 루피, %)

구분	기준	검사비율 <sup>2)</sup>
관세환급액	50만루피 이하	2
	초과	5
수출 인센티브금액 <sup>1)</sup>	100만루피 이하	2
	초과	5

주: 1) FOB 기준

2) 민감 지역(두바이, 샤르자, 싱가포르, 홍콩 및 콜롬보) 수출시 기준 이하 10%, 기준 초과 25%

자료: CBEC(2015), p.2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기타 물품검사 요건

- 인도세관은 물품검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과 관련한 특정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음
  -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 달에 한번 정도 물품검사 비율을 높이고 이 중 추출된 수출물품 중 최소 2건부터 최대 20건을 현품검사 함

- 예를 들어 첫 번째 수출신고 물품부터 50번째 물품까지를 검사하는 경우와 물품 검사일을 지정하여 해당일에 수출신고된 100개의 물품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경우 등이 있음
- 대외무역정책, 관세환급 및 기타 수출과 관련된 인센티브의 혜택을 주장하는 수출자는 각 수출진흥제도에 따른 혜택의 내용을 운송증권에 명시할 의무를 가짐
- 일반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수출물품은 현품검사를 진행하지 않음
  - 만약 부득이하게 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세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관련 농수산물 위원회 또는 세관장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현품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이 경우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검사 당일에 통관이 되어야 함
- 수출신고서와 현품검사 결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직원은 이를 운송증권에 기재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함
  - 운송증권상 내용과 현품에 대한 서류 및 검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관직원은 전자 운송증권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세관 부감독관(Assistant/Deputy Commissioner)과 수출국장(Commissioner of customs (Exports))에게 전달함
  - 수출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수출신고 내용의 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음
    - 만약 수출자가 세관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 운송증권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은 변경되어지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됨

#### 다. 컨테이너 적입<sup>234)</sup>

- 컨테이너로의 수출물품 적입 또는 벌크화물의 경우 세관직원(Preventive supervision)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함

---

234) CBEC(2015), pp.31~32

- 세관직원은 컨테이너에 적입된 실제 물품의 세부사항, 봉인번호(the bottle seal number), 그리고 EDI 시스템에 컨테이너와 적입된 수출물품의 세부 사항을 입력하고 수출자 운송증권 사본에 사인함
- 만약 컨테이너 적입물품 또는 벌크화물의 수량 또는 포장 개수에 오차가 있는 경우 세관직원은 EDI 시스템을 통해 운송증권에 그러한 사항을 기입하고 수량을 정정하여야 함
  - 이 경우 관세환급 또는 관세면제 인증물품은 수량 정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는 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 제조공장, 컨테이너 창고(ICD 또는 CFS) 또는 세관이 허용한 기타 장소에서 출하되는 수출물품은 세관직원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밀봉 또는 봉인(bottle sealed or lead sealed)되어야 함<sup>235)</sup>
  - 보세트럭 또는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운송수단은 밀봉 또는 봉인(bottle sealed or lead sealed)되어야 함

**라. 수출허용(Let Export)<sup>236)</sup>**

- 수출신고서와 실제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별다른 상이점이 없는 경우, 세관은 수출자용 운송증권에 ‘수출허용(Let Export)’이라는 도장을 날인하여 수출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함
- 적절한 수출통관을 위해 수출자 또는 대리인은 세관직원의 ‘수출허용(Let Export)’ 도장이 날인된 수출자용 운송증권 복사본을 운송회사에 전달하여야 함

**마. 수출신고서 수정<sup>237)</sup>**

- 수출신고 후 생성된 검사 목록표(check list)의 정정이나 수정은 EDI 시스템상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운송증권 번호가 생성되기 전이어야 가능함

---

235) CBEC(2015), pp.31~32

236) CBEC(2015), p.32

237) CBEC(2015), p.31

- 예외적으로 운송증권 번호가 생성되었거나 물품이 이미 수출용 부두에 반입된 이후에 정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물품이 수출허용(Let Export)을 받기 전이라면 수출국 세관 부감독관(the Assistant/Deputy Commissioner (Exports))의 허가를, 수출허용을 받은 후라면 수출담당 보안공동감독관(he Additional/Joint Commissioner in charge of Export)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바. 환급신청<sup>238)</sup>**

- 수입관세의 환급청구는 물품이 실제 수출된 후에 EDI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자동 접수됨
  - 운송증권의 상태(status)와 환급청구의 재가 여부는 서비스센터 내 질의부서(query counter)에서 확인 가능함
- 운송증권이나 환급청구에 관해 세관에서 의문점을 갖거나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수출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세관의 의문점을 해결해야 함
  - 수출자가 서비스센터에 세관의 의문점 또는 결함에 대한 내용을 회신하지 않으면, EDI 시스템상 환급청구는 접수되지 않음
- 선사 또는 항공사 등 운송회사는 수출적하목록(Export general manifest, EGM)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세관 EDI로 송부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수출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세관을 이를 통해 관세환급청구를 승인해 줌
- 특정일에 승인된 모든 관세환급청구는 표로 정리한 뒤, 시스템을 통해 은행계좌로 이체됨
  - 은행은 2주일에 1번씩 수출자의 각 계정에 환급금을 입금함

---

238) CBEC(2015), pp.32~33

### 3 기타 수출통관제도

#### 가. 수출관세와 수출세 적용품목<sup>239)</sup>

- 수출관세(export taxes or tariff)는 인도의 인플레이션 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2014년 기준 적용대상은 보크사이트(bauxite), 티탄철광(ilmenite), 특정 동물의 생피, 가죽 및 무두질한 가죽, 철광석 펠릿, 철 스크랩과 폐기물 등임
  
- 인도 정부는 수입관세율(법정세율)과 마찬가지로 조정한 수출관세율의 공표를 연간 예산집행 시기에 재정 법안으로 발표하거나 정부의 관보(notification)를 통해 발표함
  
- 관세청의 수출관세 일정에 따라 수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sup>240)</sup>
  - 수입물품 통제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재수출되는 물품
  - 관세법에 따라 압수한 물품 또는 몰수, 벌금 또는 기타 지불 대신 수출하는 물품
  - 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이 외국에서 전사용 또는 박람회용으로 수출되고 그러한 물품을 외국에서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하지 않는 경우
  - 「관세법」 제25조의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선물이나 무상샘플 등

239) WTO(2015), pp.65~66

240) CBEC, *The second schedule - export tariff*, <http://www.cbe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t1617-300616/sch2-exptariff.pdf>(검색일자: 2017. 8. 30.)

〈표 3-II-3〉 2014년 인도의 수출관세(tariff) 적용품목

(단위: %)

품목	수출관세율 <sup>1)</sup>
철광석 펠릿	5
보크사이트	10
티탄철광	10(unprocessed) 5(upgraded)
동물의 생피, 가죽 및 무두질한 가죽	10~25
철 폐기물·스크랩, 철광석 및 강철의 재용해한 스크랩·잉곳	15

주: 1) 수출관세율은 FOB 가격 대비 비율로 산정함  
 자료: WTO(2015), p.66

- 수출세(export cess)는 인도의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부과됨
  - 2016~2017년 기준 적용대상은 특정 향신료, 셀락 및 락 기반 제품, 담배, 망간 광석, 크롬 광석, 운모 제품 및 철광석 등임

〈표 3-II-4〉 2016~2017년 인도의 수출세(cess) 적용품목

품목	수출세율
셀락과 락 기반 제품	100kg 당 2.3루피
특정 향신료	FOB 가격의 0.5%
담배	FOB 가격의 0.5%
망간광	1톤당 4루피
크롬광	1톤당 6루피
운모 제품	FOB 가격의 3.5%
철광석	1톤당 1루피

자료: CBEC, *The second schedule - export tariff*, pp.861~864

### 나. 최소수출가격<sup>241)</sup>

- 대외무역법의 수출정책 계획에 따라 인도는 국내 소비에 필수적인 특정 품목의

241) WTO(2015), p. 67

합리적인 가격설정을 위해 일부 물품에 대해 최소 수출가격(Minimum export prices: MEP)를 유지함

- 최소수출가격은 인도 상무부의 대외무역정책 규정에 따르며 최소수출가격의 결정 연혁을 2012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2년 7월 4일 바스마티쌀(basmati)의 최소수출가격 폐지
  - 2013년 2월 5일 식용유와 2014년 6월 26일 신선 또는 냉장의 감자에 대한 최소 수출가격(MEP) 채택
  - 2015년 2월 20일 신선 또는 냉장의 감자에 대한 최소수출가격(MEP) 삭제
- 최소수출가격과 적용대상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 후 정부가 결정하고 상무부 (DGFT)는 이러한 결정을 공표함
  - 2014년 12월 기준 적용대상은 소비자용 브랜드 식용유, 일반 양파 및 크리스나 푸람 양파(Krishna puram), 그리고 방갈로드 장미(Bangalore rose) 등임

**〈표 3-II-5〉 2014년 12월 기준 인도의 최소수출가격 및 적용대상**

(단위: USD)

품목	1톤당 수출최소가격
소비자용 브랜드 식용유 (최대 5kg 이내)	900
일반 카테고리의 양파	300
방갈로르 장미와 크리스나 푸람 양파	300

자료: WTO(2015), p.67

## 참고문헌

- 관세청, 『인도 관세법』, 2016. 7.
- \_\_\_\_\_, 『2017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2017. 7. 1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2014.
- \_\_\_\_\_, 『인도 FDI 규제 완화 배경 및 평가』, 2016. 6. 30.
- \_\_\_\_\_,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지속』, 2017.
- \_\_\_\_\_,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6. 12.
- \_\_\_\_\_, 『인도의 보호무역조치 동향과 시사점』, 2017.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2016. 12.
- 외교부, 『인도개황』, 2015. 5.
- 이용·김신주, 『인도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9. 19.
- 정재호·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 조영태·박종문·백지현, 「인도 경제 현황과 한-인도 수출입 동향」, 『수출입동향분석』 제 108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5. 12. 9.
-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 2016. 10.
- 인도 소비세·관세중앙위원회, “Customs Act, 1962”
- \_\_\_\_\_,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Customs Manual 2015”

- \_\_\_\_\_, “Tariff 2016-17,” <http://www.cbec.gov.in/htdocs-cbec/customs/cst1617-300616/cst1617-3006-idx>
- \_\_\_\_\_, “The second schedule - export tariff,” <http://www.cbe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t1617-300616/sch2-exptariff.pdf>
- \_\_\_\_\_, “FACT SHEET AEO,” [http://www.cbec.gov.in/htdocs-cbec/home\\_links/india-aeo-prgm](http://www.cbec.gov.in/htdocs-cbec/home_links/india-aeo-prgm)
- \_\_\_\_\_, “List of AEO Status Holders,” [http://www.cbec.gov.in/htdocs-cbec/home\\_links/india-aeo-prgm](http://www.cbec.gov.in/htdocs-cbec/home_links/india-aeo-prgm)
- 인도 상무부, “FOREIGN TRADE POLICY[2015-2020]”
- \_\_\_\_\_, “HANDBOOK OF PROCEDURES[2015-2020]”
- \_\_\_\_\_, “(APPENDICES AND AAYAT NIRYAT FORMS) OF FTP 2015-2020”
- \_\_\_\_\_, “ANNUAL REPORT 2016-17”
- \_\_\_\_\_, “Minister's Speech(2015-2020)”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Preferential Tariff Schemes - An Overview*,  
allinterview, “What is GR form” , <https://www.allinterview.com/showanswers/113155/gr-form-use-step-various-department-some-little-knowledge-used-custom-wher-fera-a.html>
- EY, “India-Customs valuation for related-party transactions: key changes in investigation procedure,” *Tradewatch*, Volume 15. Issue 1, 2016. 3.
- India Customs, “Indian Customs An overview,” 2016.
- OECD, “OECD Economic Surveys: India 2017,” 2017. 2. 28.
- \_\_\_\_\_, “Taxpayers’ rights and obligations-A survey of the legal situation in OECD countries,” 1990.
- SAP, “ARE 1 FORM,” <https://archive.sap.com/discussions/thread/407953>
- WTO, *Trade Policy Review-India*, WT/TPR/S/313, 2015. 4. 28.
- \_\_\_\_\_, *INDIA - ADDITIONAL ANDEXTRA-ADDITIONALDUTIES ON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2008. 10. 30.
- USTR, *Foreign Trade Barriers 2017*, 2016.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타결 서명」,  
2017. 1. 13.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합의 관세철폐 확대 및 원산

- 지기준 완화 적극 추진」, 2017. 9. 23.
- 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신흥시장 인도 개척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강화」, 2017. 6. 21
- 이재원·김태경, 「최근 인도경제의 호조 배경과 전망: 중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리뷰』 제2017-7호, 한국은행, 2017. 2. 24
-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 주정부별 투자유치 경쟁」, 2017. 7. 24.
- \_\_\_\_\_, 「한눈에 알아보는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절차」, 2014. 12. 5.
- \_\_\_\_\_, 「인도 통합간접세(GST)도입 이후 일부 품목 관세조정」,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9702>
- 관세법령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www.certinfo.or.kr>
- 인도 관세·소비세 중앙위원회, <http://www.cbec.gov.in>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http://www.eicindia.net/public/COOstatus.aspx>
- 인도 표준청, [www.bis.org.in](http://www.bis.org.in)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http://www.fssai.gov.in>
- CIA World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
- howtoexportimport, <http://howtoexportimport.com>
- ICEGATE, <https://www.icegate.gov.in/Webappl>
- IMF, <http://www.imf.org/en/News/Articles/2017/02/21/NA022217-For-India-strong-growth-persists-despite-new-challenges>
-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PA.NUS.FCRF>,  
\_\_\_\_\_, <http://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7/10/31/doing-business-2018-fact-sheet-india>
- WTO, <http://rtais.wto.org>

## 부록

### 1 인도 지역별 사업환경 순위

순위	주명	점수(%)
1	안드라 프라데시	98.78
2	텔랑가나	98.78
3	구자라트	98.21
4	차티스가르	97.32
5	마디아 프라데시	97.01
6	하리아나	96.95
7	자르칸드	96.57
8	라자스탄	96.43
9	우타라칸드	96.13
10	마하라슈트라	92.86
11	오디샤	92.73
12	편잡	91.07
13	카르나타카	88.39
14	우타르 프라데시	84.52
15	웨스트 벵갈	84.23
16	비하르	75.82
17	히마찰 프라데시	65.48
18	타밀 나두	62.8

순위	주명	점수 (%)
19	텔리	47.62
20	케랄라	26.97
21	고아	18.15
22	트리푸라	16.67
23	다만디우	14.58
24	아쌘	14.29
25	다드라 나가르 하벨리	1.79
26	푸두체리	1.49
27	나갈랜드	1.49
28	마니푸르	1.19
29	미조람	0.89
30	시킴	0.6
31	아루나찰 프라데시	0.3
32	잠무 카슈미르	0.3
33	찬디가르	0.3
34	메갈라야	0.3
35	안다만 니코바르	0.3
36	락샤드위프	0.3

## 2 관세면세 대상 의약품

Sr. No.	Description of drug / medicine	Name of Patient Assistance Programme	Name of pharmaceutical company running Patient Assistance Programme
(1)	(2)	(3)	(4)
1.	Xtandi (Enzutatamide)	Xtandi Patient Assistance Programme	Astellas Pharma India Pvt. Ltd.
2.	Dasatinib (Sprycel)	Sprycel Assistance Program	Bristol Myers Squibb India Pvt. Ltd.
3.	Nivolumab (Opdyta)	OASIS	Bristol Myers Squibb India Pvt. Ltd.
4.	Halaven (Eribulin medylate) - Metastatic Breast cancer, Soft Tissue Sarcoma	Hope to Her – 2 to 3 cycles purchased and balanced free upto disease progression	Eisai Pharmaceuticals India Pvt. Ltd.
		HELP - All cycles free for below poverty line patients	Eisai Pharmaceuticals India Pvt. Ltd.
5.	Zonegran (Zonisamide) - for Epilepsy	Livefree - 33% Support to patients for extending duration of treatment as this is a chronic therapy	Eisai Pharmaceuticals India Pvt. Ltd.
6.	Imbruvica	1+1 PAP	Janssen India, Johnson & Johnson Pvt. Ltd.
7.	Zytiga	3+1 PAP	Janssen India, Johnson & Johnson Pvt. Ltd.
8.	Velcade 1mg	3+1 PAP	Janssen India, Johnson & Johnson Pvt. Ltd.
9.	Velcade 3.5 mg	1+1 PAP	Janssen India, Johnson & Johnson Pvt. Ltd.
10.	Caelax	1+1 PAP	Janssen India, Johnson & Johnson Pvt. Ltd.
11.	Dacogen	1+1 PAP	Janssen India, Johnson & Johnson Pvt. Ltd.
12.	Yondelis	1+1 PAP	Janssen India, Johnson & Johnson Pvt. Ltd.
13.	Simponi	1 vial free on 1 <sup>st</sup>	Janssen India, Johnson &

Sr. No.	Description of drug / medicine	Name of Patient Assistance Programme	Name of pharmaceutical company running Patient Assistance Programme
(1)	(2)	(3)	(4)
		purchase	Johnson Pvt. Ltd.
14.	Remicade	5+4 on 3 dose therapy, 6+6 on 4 dose therapy	Janssen India, Johnson & Johnson Pvt. Ltd.
15.	Invega all SKUs	1+1 PAP (Maintenance dosage)	Janssen India, Johnson & Johnson Pvt. Ltd.
16.	Imatinib (Glivec)	Glivec NOA Program/ Glivec International PAP	Novartis India Ltd.
17.	Nilotinib (Tasigna)	Win for Patients - Cancer Care	Novartis India Ltd.
18.	Ruxolitinib (Jakavi)	Win for Patients - Cancer Care	Novartis India Ltd.
19.	Everolimus (Afinitor)	Win for Patients - Cancer Care	Novartis India Ltd.
20.	Ceritinib (Spexib)	Win for Patients - Cancer Care	Novartis India Ltd.
21.	Pazopanib (Votrient)	Win for Patients - Cancer Care	Novartis India Ltd.
22.	Eltrombopag (Revolade)	Win for Patients - Cancer Care	Novartis India Ltd.
23.	Indacaterol (Sequadra)	Win for Patients - COPD	Novartis India Ltd.
24.	Secukinumab (Scapho)	Win for Patients - Skincare	Novartis India Ltd.
25.	Omalizumab (Xolair CSU)	Win for Patients - Skin care	Novartis India Ltd.
26.	Ranibizumab (Accentrix)	Win for Patients - Visioncare	Novartis India Ltd.
27.	RITUXIMAB	SPARSH - The Touch	Dr. Reddy's Laboratories Ltd.

[F.No.332/24/2010-TRU (Pt.I)]

(Mohit Tewari)  
Under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 3 EPCG(APPENDIX-5A)

#### APPENDIX -5A FORMAT OF CHARTERED ENGINEER CERTIFICATE FOR NEXUS UNDER EPCG SCHEME

(To be furnished on the letterhead of the Chartered Engineer)

- A. I have examined the applicant firm's/company's import requirement for the Capital Good(s) with respect to their nexus with the pre-production/production/post-production activity undertaken by the firm/company and with reference to their endorsement in MSME/Industrial Licence/IEM/LOI as mentioned in 'Aayaat Niryaat Form' and I hereby certify that the Capital Good(s) proposed to be imported under EPCG Scheme by M/s.\_\_\_\_\_having IEC number\_\_\_\_\_and PAN number\_\_\_\_\_ is/are required for use at the pre-production/production/post-production stage for manufacture of the export product (s)/rendering service(s) as per the details given below:-
1. Name, Model Number and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Capital Good (s) to be imported
  2. Quantity required with justification thereof
  3. Export products /Services rendered to which Capital Good(s) is/are related
  4. Stepwise Process/Flow Chart indicating the stages where the capital goods are to be used
- B. I have examined the applicant firm's/company's declaration on the wastages anticipated at the time of installation of capital goods and certify that the wastage claimed by the applicant i.e.\_\_\_\_\_(item-wise percentage where wastage is being claimed) is reasonable. (please strike off, if not applicable)

Signature & Seal of Chartered Engineer

Place

Date

Registration Number

Address

Telephone / Mobile

E-mail:

Name & Address of the Institution with which registered

Note: -

1. Additional sheets, wherever required, may be attached.
2. Each page of the Certificate has to be signed by the Chartered Engineer.

## 4 EPCG(APPENDIX-5B)

### APPENDIX -5B CERTIFICATE OF CHARTERED ACCOUNTANT/ COST ACCOUNTANT/COMPANY SECRETARY (FOR ISSUE OF EPCG AUTHORISATION)

I/We hereby confirm that I/We have examined the prescribed registers and also the relevant records of M/s..... and hereby certify that:

I. The following documents/ records have been furnished by the applicant firm/company and have been examined and verified by me/us: -

(a) For deemed exports:

- (i) Copy of ARO/*Back-to-back* inland letter of Credit of Advance Authorisation for intermediate Supplies or Supply invoices or CT3/ARE3 duly certified by the Bond Office of EOU concerned showing that supplies have been received.
- (ii) e-BRC as evidence of having received the payment through normal banking channel or a self certified copy of payment certificate issued by the Project Authority concerned in the form given in Appendix-7D.

(b) For export of goods:

- (i) Export Order/Contract,
- (ii) Shipping Bills/Bill of Exports /Airways Bills/PP Receipts
- (iii) Bill of Lading
- (iv) Customs/Bank attested invoices
- (v) e-BRC / Bank Certificate of Export and Realization
- (vi) GR declaration, and
- (vii) Connected books of accounts

(c) For export of services:

- (i) e-BRC / Bank Certificate of direct foreign exchange earning,
- (ii) GR declaration,
- (iii) Forward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s (FIRCs)
- (iv) Certificate from international credit card companies
- (v) C.A. certificate for indirect sources,
- (vi) Certified statements from the Banker/ Chartered Accountant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and connected books of accounts.

II. The relevant accounting and financial register(s) as prescribed under different Acts and Rules made thereunder have been maintained and authenticated under my/our seal and signature.

III. The information given by the applicant firm/company in the 'Aayaat Niryaat Form' including details on

(a) imports/exports made and services rendered,

(b) foreign exchange earnings/ realization (both from direct and indirect sources)

(c) third party exports

(d) deemed exports

## 5 DFIA 신청서 양식

### For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DFIA) applications

#### GUIDELINES FOR APPLICANTS

1. Two copies of the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unless otherwise mentioned.
2. Each individual page of the application has to be signed by the applicant.
3.
  - a. Part 1 & Part 4 has to be filled in by all applicants. In case of applications submitted electronically, no hard copies of Part 1 may be submitted. However in cases where applications are submitted otherwise, hard copy of Part 1 has to be submitted.
  - b. Only relevant portions of Part 2 need to be filled in.
4.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documents as per details given below:

#### V. For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1. Bank Receipt (in duplicate)/Demand Draft/EFT details evidencing payment of application fee in terms of Appendix 21B.
2. In cases where import of fuel has been sought for the grant of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 a. Self certified copy of the permission issued to the manufacturer exporter by the competent authority (concerned State Electricity Board or Power Corporation or Regulatory Commission of the State) under Section 44 of the Electricity (Supply) Act, 1948 for the installation of captive power plant based on the specified fuel unless the permission is specifically waived by the State Electricity Board; and
  - b. Self certified copy of the letter intimating the date of commissioning of the captive power plant from the concerned authority which issued the permission letter, is to be submitted.

**Note:** The import of only such fuel(s) shall be allowed which have/ has been specified in the said permission.

5. **Additional documents required in case of supplies under deemed export/intermediate supplies under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
  - a. Invalidation letter in case of supplies to
    - i. an EPCG Authorisation holder;
    - ii. an Advance Authorisation holder;
    - iii. a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 b. Project Authority certificate in case of supplies other than (a) (i), (ii) & (iii) above and to EOU/ EHTP/ STP/BTP units;

**PART 1**

Note: Please state 'Not Applicable' wherever the information/data is not applicable to you.

<b>1. IEC Details</b>
i. IEC Number
ii. Date of Issue
iii. Issuing Authority

<b>2. Applicant Firm Details</b>
i. Name
ii. Address (Registered Office in case of Companies and Head Office in case of Others)
iii. Address of all Branches/Divisions/Units/Factories located in India & abroad (attach extra sheet if required)
iv. Telephone
v.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with DGFT)

<b>3. Details of Proprietor/Partners/Directors/Karta/Trustee of the applicant firm (attach extra sheet if required)</b>
i. Name
ii. Father's Name
iii. Residential Address
iv. Telephone

<b>4. Nature of Concern (please tick)</b>	( ✓ )
i. Government Undertaking	
ii. Public Limited Company	
iii. Private Limited Company	
iv. Proprietorship	
v. Partnership	
vi. Others	

<b>5. Type of Exporter (please tick)</b>	( ✓ )
i. Merchant Exporter	
ii. Manufacturer Exporter	
iii. Service Provider	
iv. Others (please specify)	
v. Merchant cum Manufacturer	

<b>6. Industrial Registration Details</b>
i. SSI/IEM/LOI or IL Registration Number
ii. Date of Issue
iii. Issuing Authority
iv. Products for which registered

<b>7. Service Tax Registration Details (in case of Service providers)</b>
i. Service Tax Registration Number
ii. Issuing Authority
iii. Services for which registered

<b>8. RCMC Details</b>
i. RCMC Number
ii. Date of Issue
iii. Issuing Authority
iv. Valid upto
v. Products for which registered

<b>9. Status House Details</b>
i. One/Two/Three/Four/Five Star
ii. Certificate Number
iii. Date of Issue
iv. Issuing Authority
v. Valid Upto

<b>10. PAN Details</b>
i. PAN Number
iii. Issuing Authority

<b>11. Excise Details</b>
i. Excise Registration Number
ii. Issuing Authority

<b>12. VAT Details</b>
i. VAT Registration Number
ii. Issuing Authority

**13. Turnover Details for the preceding three licensing years**

FY	Annual Domestic Turnover (Rs Lakhs)	Annual Export Turnover (Rs Lakhs)

**PART 2**

1. IEC Number
---------------

<b>2. Applicant Details</b>
i. Name
ii. Address

<b>3. Application for (please tick the category for which the application is being made) :</b>		( √ )
I. Importer Exporter Code Number (IEC)		
II. Import Licence for Restricted Items		
IIA. Import Certificate under Indo - US Memorandum		
III. Export Licence for Restricted Items		
IIIA. Export Licence for SCOMET Items		
IV. Star Export House Certification		
V. Advance Authorisation / DFRC		
VA. Gem Replenishment Authorisation		
VB. Diamond Imprest Authorisation		
VC. DEPB		
VD.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
VI. EPCG Authorisation		
VII. Served from India		
VIII. Vishesh Krishi And Gram Udyog Yojana (VKGUY)		
IX. Target Plus Scheme		
X. Claiming Duty Drawback on All Industry Rates/Fixation of Drawback Rates/Refund of Terminal Excise Duty		
XA. Focus Market Scheme		
XB. Focus Product Scheme		

<b>4. Application Submission Details (in case of electronically submitted applications)</b>
i. ECOM Reference Number
ii. Date of Submission on Server
iii. Submitted to which Regional Authority
iv. File Number
v. Date of Issue

<b>5. Application Fee Details</b>
Amount (Rs)
Demand Draft/Bank Receipt/Electronic Fund Transfer No
Date of Issue
Name of the Bank on which drawn
Bank Branch on which drawn

**Note;**

1. Only one category of application may be made in the Form.
2. In case of application for issue of IEC number, information at Serial No 1 may be left blank.

**SUB SECTION VD**

( For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b>1. Total CIF value of Imports applied for</b>
i. In Rupees
ii. In currency of imports
iii. In US \$

<b>2. Total FOB/FOR value of Exports to be made, including commission</b>
i. In Rupees
ii. In currency of exports
iii. In US \$

3. Value Addition (in %):

4. Port of Registration (for the purpose of imports):

5.

i. Application made for Export Product Group:

ii. Application made under which Serial No. of SION:

6. Details of items to be exported/supplied under the Authorisation

S No	Item Description	Item Technical Characteristics/Quality etc.	ITC(HS) Code	Quantity	Unit of Measurement	FOR /FOB Value (in Rs)	FOR/FOB value (in freely convertible currency)	
							Value	Currency Code

7. Details of items sought to be imported duty free under the Authorisation

S No	Item Description	Item Technical Characteristics/Quality etc.	ITC(HS) Code	Quantity	Unit of Measurement	CIF Value (in Rs)	CIF value (in freely convertible currency)		Total exemption from Customs duty
							Value	Currency Code	

8. Details of other materials to be used in the export product and sought to be imported/procured from sources other than the Authorisation on which drawback benefits is to be availed (not to be filled if Drawback benefits are not being claimed)

S No	Imported Item			Indigenously Procured Item		
	Name, Technical Characteristics/Quality etc	Quantity in metric units	CIF Value	Name, Technical Characteristics/Quality etc	Quantity in metric units	Value

**PART 3**

1. IEC Number	
2. Applicant Details	
i. Name	
ii. Address	
3. Application for (please tick whichever is applicable) :	
	( √ )
XI. Enhancement in CIF/FOB Value or Revalidation or EO extension of Authorisation	
XII. Fixation/Modification of Standard Input Output Norms (SION)	
XIII. Fixation of DEPB Rates/ Fuel Rates	
XIV. Redemption of Advance Authorisation/ DFIA /Endorsement of Transferability in the DFIA	√
XV. Statement of Export/Redemption of EPCG Authorisation	
XVI. EO Refixation under EPCG Scheme	
XVII. Clubbing of Authorisations	
XVIII. Deleted	
XIX. Refund of Application Fee	
4. Application Fee Details (in case of enhancement of CIF value etc.)	
Amount (Rs)	
Demand Draft/Bank Receipt/Electronic Fund Transfer No	
Date of Issue	
Name of the Bank on which drawn	
Bank Branch on which drawn	

**Note:**

1. Only one category of application may be made in the Form.

## PART 4

### DECLARATION/UNDERTAKING

1. I/We hereby declare that the particulars and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our knowledge and belief and nothing has been concealed or held there from.
2. I/We fully understand that any information furnished in the application if found incorrect or false will render me/us liable for any penal action or other consequences as may be prescribed in law or otherwise warranted.
3. I/We undertake to abide by the provisions of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the Rules and Orders framed there under, the Foreign Trade Policy, the Handbook of Procedures and the ITC(HS) Classification of Export & Import Items.
4.
  - a. I/We hereby certify that the firm/company for whom the application has been made has not been penalized under the Customs Act, Excise Act, Foreign Trade (Development & Regulation) Act 1992 and FERA/FEMA.
  - b. I/We hereby certify that none of the Proprietor/ Partner(s)/ Director(s)/Karta/Trustee of the firm/company, as the case may be, is/are a Proprietor/Partner(s)/Director(s)/Karta/Trustee in any other firm/Company which has come to the adverse notice of DGFT.
  - c. I/We hereby certify that the Proprietor/Partner(s)/Director(s)/Karta/Trustee, as the case may be, of the firm/company is/are not associated as Proprietor/Partner(s)/Director(s)/Karta/Trustee in any other firm/company which is in the caution list of RBI.
  - d. I/We hereby certify that neither the Registered Office/Head Office of the firm/company nor any of its Branch Office(s)/Unit(s)/Division(s) has been declared a defaulter and has otherwise been made ineligible for undertaking import/export under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Policy.
5. I/We hereby declare that I/We have not obtained nor applied for such benefits (including issuance of an Importer Exporter Code Number) in the name of our Registered/Head Office or any of our Branch(s)/Unit(s)/Division(s) to any other Regional Authority.
- 5A. I/ We hereby declare that I/we have perused the list of SCOMET items as contained in the Appendix 3 to the Schedule 2 of the ITC (HS) Classifications of Export-import Items, 2004-09 and that the item(s) exported / proposed to be exported does not fall within this list and that I/ We agree to abide by the provisions of the Policy for export of SCOMET items contained in the Foreign Trade Policy, Schedule 2 of ITC (HS) and the Handbook of Procedures (Vol.1), irrespective of the scheme under which the item is exported / proposed to be exported (the underlined portion will be deleted in case an application for export license for SCOMET item is being filed).
6. I/We solemnly declare that I/We have applied for / obtained a RCMC to the Export Promotion Council which pertains to our main line of business. In case we have applied to any other council, the application has been made within the purview of the provisions of Para 3.12 and Para 3.12.1 of the Handbook of Procedures (Vol 1).
7. I/We hereby declare that we shall only import inputs which are required for the manufacture of the export product(s) and no part of it shall be sold/transferred/disposed off *unless the DFIA is made transferable* or utilised in a manner in contraven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Policy and Handbook.
8. I/We hereby declare that no export proceeds are outstanding beyond the prescribed period as laid down by RBI or such extended period for which RBI permission has been obtained.
18. I hereby certify that I am authorised to verify and sign this declaration as per Paragraph 9.9 of the Policy.

Signature of the Applicant

Place

Name

Date

Designation

Official Address

Telephone

Residential Address

Email

Address

**9. Details of Outstanding Export Obligation against DFIA, Advance Authorisation(s) including Advance Authorisation for Annual Requirements issued already**

S No	Authorisation No	Authorisation Date	CIF Value (Rs)	FOB Value (Rs)	%age of EO fulfilled		Expiry Date of EO period
					Qty wise	Value wise	

**10. Details of exports/deemed supplies made in the preceding 3 licensing years:**

Licensing Year	FOB Value of exports (in Rs Crore)	FOR Value of deemed supplies (in Rs Crore)	Total Export Performance (in Rs Crore)

**11. In case of exports made under Deemed Exports category (except for supplies to Advance Authorisation/DFIA/EPCG Authorisation holders/EOU/EHTP/STP/BTP), please furnish:**

i. Name of the Project Authority
ii. Address of the Project Authority
iii. Supply Order No
iv. Delivery period of Supply
v. Credit under which project is financed
vi. Method by which order is procured (ICB etc.)

**12. In case of request for issuance of Invalidation letter/ARO:**

I. Request is for issuance of (Please tick):	(✓)
A. Invalidation letter	
B. Advance Release Order (ARO)	

If so, then please furnish the following details: (i and ii below need not be filled up in case the applicant desires the Invalidation Letter/ARO along with the issuance of DFIA)

i.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No.
ii. Date of Issue of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iii. Name of the Indigenous producer from where items are to be procured
iv. Address of the Indigenous producer from where items are to be procured
v. Regional Authority of the Indigenous producer
vi. Items to be supplied by the Indigenous producer
a. Description of individual items
b. Quantity of individual items to be procured
c. Value of individual items to be procured

**13. Address of the factory/premises where the items to be imported are proposed to be used**

**14. Address of the jurisdictional Central Excise Authority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factory/premises falls**

**15. In case the items to be imported are to be used by the supporting manufacturer, please furnish**

i. Name of the supporting manufacturer
ii. Address of the supporting manufacturer
iii. SSI/LOI/IL regn no. and date of Supporting Manufacturer
iv. Products endorsed on SSI/IL/IEM

**For (I) Redemption of Advance Authorisation/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II) Endorsement of Transferability on the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GUIDELINES FOR APPLICANTS**

1. Two copies of the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unless otherwise mentioned.
2. Each individual page of the application has to be signed by the applicant.
3.
  - a. Part 1 & Part 4 has to be filled in by all applicants. In case of applications submitted electronically, no hard copies of Part 1 may be submitted. However in cases where applications are submitted otherwise, hard copy of Part 1 has to be submitted.
  - b. Only relevant portions of Part 3 need to be filled in.
4.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documents as per details given below:
  - a. **For physical exports:**
    1. Bank Certificate of Exports and Realisation in the form given at Appendix 22A or Foreign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 (FIRC) in the case of direct negotiation of documents or Appendix 22D in case of offsetting of export proceeds. However, realisation of export proceeds shall not be insisted if the shipments are made against confirmed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or bill of exchange is unconditionally Avalised/ Co- Accepted/ Guaranteed by a bank and the same is confirmed by the exporters bank and certified by the bank in column 14/15 of Appendix 22A.
    2. EP copy of the shipping bill(s) containing details of shipment effected or bill of export in case of export to SEZ
    3. A statement of exports giving details of shipping bill wise exports indicating the shipping bill number, date, FOB value as per shipping bill and description of export product
    4. A statement of imports indicating bill of entry wise item of imports, quantity of imports and its CIF value.
  - b. **For deemed exports:**
    1. A copy of the invoice or a statement of invoices duly signed by the unit receiving the material and their jurisdictional excise authorities certifying the item of supply, its quantity, value and date of such supply. However in case of supply of items which are non excisable or supply of excisable items to a unit producing non excisable product(s), a Project Authority Certificate (PAC) certifying quantity, value and date of supply would be acceptable in lieu of excise certification. However, in respect of supplies to EOU/EHTP/ STP/ BTP, a copy of CT-3/ARE-3 duly signed by the jurisdictional excise authorities certifying the item of supply, its quantity, value and date of such supply can be furnished in lieu of the excise attested invoice (s) or statement of invoices as given above.
    2. Payment certificate from the project authority in the form given in Appendix-22C. In the case of Advance Authorisation for Intermediate Supplies/ deemed exports, supplies to the EOUs/ EHTPs/STPs/ BTPs, documentary evidence from the bank substantiating the realisation of proceeds from the Authorisation holder or EOUs/EHTPs/ STPs/ BTPs, as the case may be, through the normal banking channel, shall be furnished in the form given at Appendix 22B. However realisation of proceeds shall not be insisted upon if the shipments are made against confirmed irrevocable inland letter of credit or inland bill of exchange is unconditionally



## 6 우편으로 수출된 물품의 관세환급 양식

**Form for claim of drawback  
ANNEXURE-I  
FORM D**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Quadruplicate

Ref. Dbk.  
Invoice No.  
Dated :

**Particulars of goods to be exported by parcel post under claim for drawback  
FORM NO.**

To

The 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Drawback) Foreign Post Office,

We,.....

Propose to export the undermentioned consignment.

Name and Address of the Consignee .....

S. No.	Date of Parcels	Gross Weight	Marks/ No. on Pcs.	Qty.
1	2	3	4	5

FOB Value	Rate of net DBK	Weight	Amount Rs. P.
6	7	8	9

1. Certified that the goods were not taken into use after the manufacture.
2. Certified that no separate claim for rebate of duty has been made or will be made to the Central Excise Authorities under rules 12 and rule 191B as in force immediately before 1st October, 1994 or under rule 13 of Central Excise Rules, 1944 and that the Customs and Central Excise duty has been paid on the raw material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goods.

We hereby declare that the declaration made herein is true and correct.

Office seal of  
Manufacturer/Exporter

Signature  
Name .....

Designation .....

Dated :  
Place :

## 7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목록

### APPENDIX- 2 E LIST OF AGENCIES AUTHORISED TO ISSUE CERTIFICATES OF ORIGIN- NON PREFERENTIAL

#### ALL INDIA ORGANISATIONS

1.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 its Regional Offices  
Head Office : Udyog Bhavan, New Delhi 110011  
Phone : 011-23062777  
Fax : 011-23062225  
E-mail : [dgt@nic.in](mailto:dgt@nic.in)  
Website: [www.dgt.gov.in](http://www.dgt.gov.in)
  
2. Textile Committee & its Offices in India  
Head office:-  
Textile Committee  
Export Promotion and Quality Assurance Division  
First Floor, P.Balu Road,  
Off.Veer Savarkar Marg,  
Prabhadevi Chowk, Prabhadevi,  
Mumbai – 400 025  
Ph:022-66527507; 66527500  
Fax:022-66527509  
Email: [secy@giasbm01.vsnl.net.in](mailto:secy@giasbm01.vsnl.net.in)
  
3. FIEO and its branches in India  
Head Office:-  
Niryat Bhawan,  
Rao Tula Ram Marg,  
Opp. Army Hospital Research & Referral,  
New Delhi-110057  
Tel:011-26150101-104  
46042222  
Fax-91-11-26148194/26150077  
E-mail:[Fieo@nda.vsnl.net.in](mailto:Fieo@nda.vsnl.net.in)  
Website:[fieo@airtelmail.in](http://fieo@airtelmail.in)
  
4. CII and its branches  
Head Office:-  
23, Institutional Area, Lodi Road, New Delhi - 110 003  
Phone : 0091-11-4629994-7, 4626164 / 4625407  
Fax : 0091-11-4626149/4633168  
Cable : BUILDPOWER  
Email : [cb@cii.in](mailto:cb@cii.in)  
Internet : [www.cii.in](http://www.cii.in)

5. PH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HD House, 4/2 Siri Institutional Area,  
 August Kranti Marg,  
 New Delhi 110 016  
 Tel: +91-11-26863801 to 04:49545454  
 Fax: +91-11-26855450, 49545451  
 E.mail: [phdcci@phdcci.in](mailto:phdcci@phdcci.in)  
 Website: [www.phdcci.in](http://www.phdcci.in)

PH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uite No.23, 2<sup>nd</sup> Floor, Indra Palace,  
 H Block Middle Circle, Connaught Place,  
 New Delhi-110 001  
 Tel: 91-11-23327421

And its Regional Offices at Chandigarh, Shimla, Lucknow, Jaipur, Bhopal and Jammu.

The Chamber through its branches may issue Certificate of Origin (Non-Preferential) for the units located in Chandigarh, Chhattisgarh, Delhi, Haryana, Himachal Pradesh, Jammu & Kashmir, Madhya Pradesh, Punjab, Rajasthan, Uttarakhand and U.P.

**Note:** An application for grant of a Certificate of Origin- Non Preferential may be made by the Registered/Head Office/Branch Office/Factory of the applicant to the licensing authority under whose jurisdiction such office/factory falls.

**ANDHRA PRADESH**

- |  |  |
|--|--|
| <p>1. Development Commissioner<br/>                 Visakhapatnam Special Economic<br/>                 Zone,<br/> <i>Admn office Building,</i><br/>                 Duvvada,<br/>                 Vishakhapatnam -530046<br/>                 Tel: 0891-587555/352<br/>                 Fax: 0891-587352<br/>                 E-mail: <a href="mailto:dc@vepz.com">dc@vepz.com</a>/<a href="mailto:fdc@vepz.com">fdc@vepz.com</a></p> | <p>2. Cocanada Chamber of Commerce<br/>                 Commercial Road,<br/>                 Kakinada - 533007.<br/>                 Tel: 0884-376239<br/>                 Fax: 0884-355424</p> |
| <p>3. The Federation of Telengana and<br/>                 Andhra Pradesh Chamber of Commerce<br/>                 and Industry,<br/><br/>                 11-6-841, Red Hills, P.B. No. 14,<br/>                 Hyderabad-500004.<br/>                 Tel: 040-3393428/3658<br/>                 Fax: 040-3395083<br/>                 E-mail: <a href="mailto:info@fapcci.org">info@fapcci.org</a></p>                             | <p>4. Indian Chamber of Commerce,<br/>                 P.B.No.67, Veera Savarkar Road,<br/>                 Guntur-522001.<br/>                 Tel:220092</p>                                   |

- |   |   |
|---|---|
| <p>5. <a href="#">Pharmaceutical Export Promotion council</a>,<br/> <a href="#">101, Aditya Trade Center, Ameerpet, Hyderabad – 500038</a><br/> <a href="#">Tel. No. 91 40 2373546266</a><br/> <a href="#">Fax No. 91 40 23635464</a><br/> <a href="#">E.mail: info@pharmexcil.com</a></p>  | <p>6 Federation of Andhra Pradesh Small Industries Association<br/>         Administrative Building, Industrial Estate Sanath Nagar<br/>         Hyderabad 500018<br/>         Tel: 040-23707942<br/>         e.mail:fapsia@fapsia.com<br/>         URL: <a href="http://www.fapsia.com">www.fapsia.com</a></p> |
| <p>7. Federation of Indian Micro and Small &amp; Medium Enterprises<br/>         H.No.6-3-569/1/2/4, 2nd Floor, Rockdale Compound Near: Eenadu Office,<br/>         Opp: RTO Office, Somajiguda, Hyderabad-500082<br/>         Tel: 040 - 23322117<br/>         Fax : 040 - 23312116<br/>         E-mail : <a href="mailto:hyderabad@fisme.org.in">hyderabad@fisme.org.in</a></p> |   |

**ASSAM**

- |   |  |
|---|--|
| <p>1. Federation of Industries &amp; Commerce of North Eastern Region(FINER)<br/>         Shadeed Dileep Chakravarti Path, Behind Ice Factory, R.G.Baruah Road<br/>         Guwahati-781005<br/>         Tel: 0361-222537,630076<br/>         Fax no. 0361-522037<br/>         E-mail: <a href="mailto:finer@satyam.net.in">finer@satyam.net.in</a></p> | <p>2. North East Federation on International Trade<br/>         Dosi Bhawan, Pallan Bazar, Guwahati-781008<br/>         Tel: 541717718</p> |
| <p>3. North East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         Rukmini Nagar, G.S. Road, Dispur, Guwahati – 781006<br/>         Ph: 0361- 226616/17,<br/>         Fax: 0361- 226616<br/>         E-Mail: <a href="mailto:neccighy@satyam.net.in">neccighy@satyam.net.in</a></p>   |  |

**DELHI**

- |  |   |
|--|---|
| <p>1. Apparel Export Promotion Council,<br/>15, NBCC Tower, Bhikaji Cama Place,<br/>New Delhi-110066.<br/>Tel: 6183351,6169394/56/57<br/>Fax: 6188584/300</p>  | <p>2. Apex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 of<br/>NCT Delhi<br/>A-8 Naraina Industrial Area<br/>Phase-II, New Delhi -110028<br/>Tel:011-25893646<br/>Telefax: 011-41418461<br/>E-mail:delhichamber@touchtelindia.net<br/>Website:www.dcci.in</p> |
| <p>3. Federation of Indian Micro and<br/>Small &amp; Medium Enterprises,<br/>B-4/161, Safdarjung Enclave,<br/>New Delhi -110029<br/>Tel:6109470, 6187948<br/>Fax: 6109470</p>  | <p>4. Laghu Udyog Bharti<br/>1E/11, Swami Ramtirth Nagar,<br/>Jhandewalan Extn,<br/>New Delhi 110055</p>  |
| <p>5. The Sports Goods Export Promotion<br/>Council,<br/>The 1E/6, Swami Ram Tirth Nagar,<br/>(2nd Floor, Jhandewalan Ext.<br/>New Delhi-110055.<br/>Tel: 3525695<br/>Fax: 7532147<br/>E-mail: <a href="mailto:sgepci@vsnl.net.in">sgepci@vsnl.net.in</a></p>  | <p>6. The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br/>Industry of India<br/><br/>147-B, Gautam Nagar,<br/>Gulmohar Enclave,<br/>New Delhi 110049</p>  |
| <p>7. Indian Electrical and Electronics<br/>Manufacturers' Association<br/>Rishyamook Building, First Floor<br/>85 A, Panchkuian Road<br/>New Delhi-110001<br/>Ph: +91 11-23363013-14/<br/>23746634<br/>Fax: +91 11-23363015<br/>Email: delhi@jeema.org</p>  | <p>8. Indian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49, Community Centre, New Friends Colony,<br/>New Delhi 110065<br/>Tel: 011-51678602-09<br/>Fax: 011- 26840775<br/>Email: <a href="mailto:iccind@yahoo.co.in">iccind@yahoo.co.in</a></p>        |
| <p>9. Wool &amp; Woollens Export Promotion<br/>Council<br/>906, New Delhi House, 27, Barakhamba<br/>Road<br/>New Delhi-110001.<br/>Tel.No.: 23315512, 23315205<br/>Fax: 011-23730182<br/>E-Mail : <a href="mailto:wwepc@bol.net.in">wwepc@bol.net.in</a><br/>Website: <a href="http://www.wwepc.org">www.wwepc.org</a></p> | <p>10. Delhi Chamber of Commerce,<br/>49, Rani Jhansi Road,<br/>New Delhi-110055<br/><br/>Tel.23616421,23610397,23515828,23518994<br/>Fax:23628847, 23622815<br/>E-mail: <a href="mailto:dccndi@nda.vsnl.net.in">dccndi@nda.vsnl.net.in</a></p>     |
| <p>11. M/s. Indian Society of Agribusiness</p>   |   |

Professionals  
R-289A, 2nd Floor, Greater Kailash-I  
New Delhi-110048.  
Tel. No. 91-11-51730573, 51730574,  
30938993  
Fax: 51731674  
E-Mail: [isap@vsnl.net](mailto:isap@vsnl.net)

and its branch at

A/184 Road No. 1  
Mahipalpur Extn.  
New Delhi -110037.

Email: [santhanam@isapindia.org](mailto:santhanam@isapindia.org)  
[sangeeta@isapindia.org](mailto:sangeeta@isapindia.org)  
Website: [www.isapindia.org](http://www.isapindia.org).

**GOA**

1. Go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Goa Chamber Building,  
Ormuz Road, P.O. Box No.59,  
Panjim  
Tel: 224223  
Fax: 223420

**GUJARATI**

1. Federation of Gujarat Industries,  
FGI Business Centre  
Gotri-Sevasi Road, Opp. Nilgiri Farm,  
Sevasi, Vadodara-391101  
Tel: 0265-2372901-02  
Fax: 2372904  
E-mail: [info@fgi.co.in](mailto:info@fgi.co.in)
2. Gujarat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hri Ambica Mills-Gujarat Chamber Building,  
Ashram Road, P.B. No. 4045,  
Ahmedabad-380009  
Tel: 079- 6582301/2/3/4  
Fax: 079-6587992  
E-mail: [bis@gujaratchamber.org](mailto:bis@gujaratchamber.org)
3. Jamnagar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hri Digvijaysinhji Chamber Building,  
Grain Market,  
Jamnagar-361001.  
Tel: 0288-2550250, 2550257
4. Porbandar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Near old fuvara,  
Porbandar-360575  
Tel: 0286-244454, 240454

- Fax: 0288-2554823  
E-mail : [nccimr@bsnl.in](mailto:nccimr@bsnl.in),  
[jccchamber@rediffmail.com](mailto:jccchamber@rediffmail.com),  
[www.ncciamnagar.org](http://www.ncciamnagar.org)
5. Saurashtr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315, Chamber Complex Nakubaug,  
Darbagadh  
Bhavanagar-364001.  
Tel:0278-424279  
Fax: 0278-430040  
E-mail: [sauchem@adi.vsnl.net.in](mailto:sauchem@adi.vsnl.net.in)
6. Southern Gujarat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amruddhi’ 4<sup>th</sup> floor, Annex Nanpura,  
Makkai bridge,  
P.B.No.51, Nanpura,  
Surat-395001.  
Tel:0261-3479431-5  
Fax: 0261-3472340  
E-mail: [sqcci@bom6.vsnl.net.in](mailto:sqcci@bom6.vsnl.net.in)
7. Shri Sorath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Opposite Port Office’ Vakhariy Bazar,  
Hotel Kaveri Lane, S.T.Road. Akar  
complex,  
Veraval,  
Gujarat-362265  
Tel:02876-20102  
Fax: 02876-44078  
E-mail: [elite@ad1.vsnl.net.in](mailto:elite@ad1.vsnl.net.in)
8. The Gandhidham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Plot No. 8, Sector-9, P.B.No. 58,  
Gandhidham (Kachchh)  
Tel: 20735, 56828, 20977  
Fax: 20888  
E-mail: [goci@wilnetonline.net.in](mailto:goci@wilnetonline.net.in)
9. Rajkot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Post Box 441, Centre Point,  
Karansinghi Road,  
Rajkot 360 001  
Tel: 0281- 227500/400  
Fax: 0281- 230824
10. Greater Rajkot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ies,  
308, J.P. Tower, Tagore Road,  
Rajkot-360002.  
TEL :0281-2466200  
FAX: 0281-2480196  
e-mail: [seico\\_ad1@sancharnet.in](mailto:seico_ad1@sancharnet.in)
11. Rajkot Engineering Association  
Bhakti Nagar Industrial Estate  
Rajkot – 360002  
Tele: 0281-2362235-36-37  
Fax: 0281-2362506  
e.mail: [rea\\_ad1@sancharnet.in](mailto:rea_ad1@sancharnet.in)  
URL: [www.reaindia.com](http://www.reaindia.com)
12. EXIM CLUB,  
Association of Exporters & Importers,  
2<sup>nd</sup> Floor, West Wing, Offitel Towers No.1,  
B/H,Stop-N-Shop, Plaza, R.C.Dutt  
Road,Vadodara-390007.  
Tel: 91-265-2326410, 3025129,  
Telefax: 91-265-2338659  
[e\\_mail\\_eximclub@eximclub.org](mailto:e_mail_eximclub@eximclub.org)  
Website: [www.eximclub.org](http://www.eximclub.org)

- |   |   |
|---|---|
| <p>1. Faridabad Industries Association<br/>Bata Chawk, Industrial area,<br/>Faridabad – 121001<br/>Tel: 0129-5432136/5176<br/>Fax: 0129-5435175<br/><a href="mailto:fiabd@ndf.vsnl.net.in">fiabd@ndf.vsnl.net.in</a></p>                            | <p>2. Gurgaon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Post Box No 2, Khandsa Road,<br/>Gurgaon – 122001<br/>Tel: 0124- 6370303/ 0404<br/>Fax: 0124-6373708<br/>E-Mail: <a href="mailto:gurgaonchamber@vsnl.com">gurgaonchamber@vsnl.com</a></p> |
| <p>3. Bahadurgarh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6, M.I.E. Bahadurgarh – 124507,<br/>Jhajjar, Haryana.<br/>Tele Fax: 268789,<br/>Tel: 268790,<br/>E-mail : <a href="mailto:bccibahadurgarh@yahoo.co.in">bccibahadurgarh@yahoo.co.in</a></p> |   |

**JAMMU & KASHMIR**

- |  |  |
|--|--|
| <p>1. J&amp;K Walnuts exporters Association<br/>102, 1<sup>st</sup> floor, Fruit market complex,<br/>Narwal<br/>Jammu-180006</p> | <p>2. The Kashmir Chamber of Commerce &amp;<br/>Industry,<br/>Residency Road,<br/>Srinagar-190001.<br/>Kashmir<br/>Tel: 455446<br/>Fax: 452517</p> |
|--|--|

**KARNATAKA**

- |   |  |
|---|--|
| <p>1. Belgaum Chamber of Commerce &amp;<br/>Industry,<br/>73, Raviwar Peth Belgaum- 590002<br/>(Udyambad), Khanpur Road,<br/>Plot No. 48-49,<br/>Belgaum- 590008<br/>Tel: 460101/440417</p>   | <p>2. Central Silk Board<br/>CSB complex, B.T.M.Layout,<br/>Madivala,<br/>Bangalore – 560068<br/>Tel: 080-6688831/0841/8957/9351<br/>Fax: 080-6681511<br/>E-mail: <a href="mailto:csb@bnesceo.ker.nic.in">csb@bnesceo.ker.nic.in</a></p>   |
| <p>3. Kanara Chamber of Commerce &amp;<br/>Industry<br/>Chamber Buildings, P.O.Box NO.116,<br/>Bunder, Mangalore –575001<br/>Tel: 0824-420126/669<br/>Fax: 0824-420669<br/>E-mail: <a href="mailto:chamber@bir.vsnl.net.in">chamber@bir.vsnl.net.in</a></p> | <p>4. Bangalore Chamber of Industry and<br/>Commerce<br/>Sheriff Chambers,<br/>14 Cunningham Road,<br/>Bangalore – 560 052<br/>Tel. No: 080- 2286080<br/>Fax No: 080- 2251475<br/>E-Mail: <a href="mailto:bcic@gmci.org.in">bcic@gmci.org.in</a><br/>Website: <a href="http://www.gmci.org.in">www.gmci.org.in</a></p> |

- |   |   |
|---|---|
| <p>5. Federation of Karnataka Chambers of Commerce &amp; Industry,<br/>P.O.Box 9996, Kempe Gowda Road,<br/>Bangalore- 560009<br/>Tel: 080-2262355/2157/2356<br/>Fax: 080-2251826/2385908<br/>E-Mail: <a href="mailto:info@fkcci.org">info@fkcci.org</a></p>                                 | <p>6. Karnataka Small Scale Industries Association<br/>2/106, 17th Cross, Magadi Chord Road<br/>Vijayanagar<br/>Bangalore-560040.<br/>Tel. +91-080-23358698<br/>Telefax: +91-080-23353250, Grams 'KASSIA'<br/>Fax: +91-080-23102865<br/>E-mail: <a href="mailto:kassia@blr.vsnl.net.in">kassia@blr.vsnl.net.in</a><br/>Website: <a href="http://www.kassia.com">http://www.kassia.com</a></p> |
| <p>7. Federation of Indian Micro and Small &amp; Medium Enterprises<br/>57/5, Family YMCA Building, Millers Road,<br/>Benson Town,<br/>Bengaluru - 560046.<br/>Tel: 080-23543589<br/>Fax : 080-41657607<br/>E-mail : <a href="mailto:bangalore@fisme.org.in">bangalore@fisme.org.in</a></p> |   |

#### KERALA

- |   |  |
|---|--|
| <p>1. Cashew Export Promotion Council of India,<br/>P.B.No.1709, Chittoor Road,<br/>Ernakulam South,<br/>Cochin-682016.</p>   | <p>2. Cochin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P.NB.No.503, Bristow Road,<br/>Wilmington Island,<br/>Cochin 682 003<br/>Tel:0484-666348/253<br/>Fax:0484-668651<br/>E-mail: <a href="mailto:chamber@nd2.vsnl.net.in">chamber@nd2.vsnl.net.in</a></p> |
| <p>3. Ernakulam Chamber of Commerce,<br/>P.B.No.2530, Chamber corner,<br/>Shanmugham road,<br/>Kochi -682 031<br/>Tel:0484-380950, 354885<br/>Fax: 0484-374253<br/>E-mail: <a href="mailto:ekmcos@satyam.net.in">ekmcos@satyam.net.in</a></p> | <p>4. Ind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br/>P.B.No. 236, Indian chamber Road,<br/>Cochin- 682 003<br/>Tel: 0484-225966, 224335<br/>Fax: 0484-224203<br/>E-mail: <a href="mailto:iccichn@nd2.vsnl.net.in">iccichn@nd2.vsnl.net.in</a></p>            |
| <p>5. The Malabar Chamber of Commerce<br/>Chamber house, Cherooty Road,<br/>P.B.No.1113, Calicut-673032<br/>Tel: 365282/92<br/>Fax: 0766191<br/>E-mail:<br/><a href="mailto:malabarchamber@zyberway.com">malabarchamber@zyberway.com</a></p>  | <p>6. The North Malabar Chamber of Commerce,<br/>Cannanore- Tellicherry Road,<br/>Cannanore-670002.<br/>Tel: 703399</p>  |
| <p>7. The South Ind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br/>Peniel Buildings, Muttambalam,</p>  | <p>8. The Chamber of Commerce,<br/>Chamber Building,TTC Road,<br/>Jawahar nagar, Kowdiar,</p>  |

Kottayam 4  
Tel No: 0481-2570745, 2584687;  
Fax: 0481-2302008  
Email: [sicci@sicci.net](mailto:sicci@sicci.net)

Thiruvananthapuram-695003,  
Kerala  
Tel:0091-0471-2317555  
Fax:0091-471-2319555  
E-mail:[chambertvm@gmail.com](mailto:chambertvm@gmail.com)

**MADHYA PRADESH/CHHATISGARH**

- |   |   |
|---|---|
| <p>1. Foreign Trade Development Association of India<br/>502, Silver Arc Plaza,<br/>20/1, New Palasia ,P.B.No. 591,<br/>Indore-452001<br/>Tel: 0731-270939, 264939<br/>E-mail: <a href="mailto:mpica@bom4.vsnl.net.in">mpica@bom4.vsnl.net.in</a></p> | <p>2. Federation of Madhya Prades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br/>Udyog Bhavan<br/>129-A, Malviya Nagar<br/>Bhopal-462003<br/>Tel: 0755-573612<br/>Fax: 0755-551441<br/>E-mail: <a href="mailto:fmccci@bom6.vsnl.net.in">fmccci@bom6.vsnl.net.in</a></p> |
| <p>3. Madhya Pradesh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Sanatan Dharam Mandir Marg,<br/>Chamber Bhavan, Gwalior-474009.<br/>Tel:0751-332916/7<br/>Fx: 0751-323844</p>   | <p>4. Devi Ahily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ies<br/>34, Jawahar Marg, Near Jhanda Chowk,<br/>Police Chowki, Indore – 452007<br/>Tel: 0731- 432524/ 543904<br/>Fax: 0731- 433859/ 475867</p>  |
| <p>5. The Soyabean Processors Association of India,<br/>Scheme No 53, Malviya Nagar, A.B.<br/>Road,<br/>Indore – 452008<br/>Tel: 0731-556530/532/533<br/>Fax: 0731- 556531<br/>E-Mail: <a href="mailto:sopa@sanchamet.in">sopa@sanchamet.in</a></p>   |   |

**MAHARASHTRA**

- |   |   |
|---|---|
| <p>1. All India Exporter Chamber,<br/>Janmabhoomi Chambers, Walchand<br/>Hirachand Marg, Mumbai-400001.<br/>Tel: 022-2611055/5430<br/>Fax: 022-2699179<br/>E-mail: <a href="mailto:chamber@bom3.vsnl.net.in">chamber@bom3.vsnl.net.in</a></p> | <p>2. Association of Merchants &amp; Manufacturers of Textile Stores and Machinery(India)<br/>Bhogital Hargovindas Building,<br/>18/20, K.D.Marg,<br/>Mumbai-400001.<br/>Tel: 022-2844350/401<br/>Fax: 2874060<br/>E-mail: <a href="mailto:ammtsmi@bom7.vsnl.net.in">ammtsmi@bom7.vsnl.net.in</a></p> |
|---|---|

- |  |  |
|--|--|
| <p>3. Basic Chemicals, Pharmaceuticals and Cosmetics Export Promotion Council, Jhansi Castle, 4th Floor, 7th Cooperage Road, Mumbai-400039.</p>  | <p>4. Bombay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 Mackinnon Mackenzie Building, 3rd Floor, Ballard Estate, Bombay-400038.<br/>Tel:022-2614681<br/>Fax:022-2621213<br/>E-mail: <a href="mailto:bcci@bombaychamber.com">bcci@bombaychamber.com</a></p>              |
| <p>5. Cotton Textiles Export Promotion Council, Engineering Centre, 5th Floor, 9, Mathew Road, Mumbai-400004<br/>Tel:022-2855859/5860<br/>Fax:022-3631213<br/>E-mail: <a href="mailto:exprocil@bom3.vsnl.net.in">exprocil@bom3.vsnl.net.in</a></p>   | <p>6. Hindustan Chamber of Commerce 342, Kalbadevi Road, Mumbai- 400002<br/>Tel:022-2083724/ 2061775<br/>Fax: 022-2071359<br/>E-mail: <a href="mailto:hcc@bol.net.in">hcc@bol.net.in</a></p>   |
| <p>7. Indian Merchants Chamber, IMC Building, P.B.No. 11211, Churchgate, Mumbai-400020.<br/>Tel:022-2046633<br/>Fax: 022-2048508<br/>E-mail: <a href="mailto:Inter-MinisterialCommittee@imcnet.org">Inter-MinisterialCommittee@imcnet.org</a></p>  | <p>8. Indo-Arab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ies, 16, Maker Arcade, Ground Floor, Cuffe Parade, Mumbai – 400 005<br/>Tel. No: 2183889/2182057<br/>Fax No: 2188221/2180848<br/>E-mail: <a href="mailto:jacci@bom3.vsnl.net.in">jacci@bom3.vsnl.net.in</a></p> |
| <p>9. Indian Chemical Council Sir Vithaldas Chambers, 16 Mumbai Samachar Marg, Mumbai- 400023<br/><br/>And its branches at<br/>a) Shantiniketan 8th Floor, 8 Camac Street,Kolkata-700017<br/>b) 332-A, Sant Nagar, Ground Floor East of Kailash, New Delhi-11-65<br/>c) Kurian Complex, III floor 140-A, Nelson Manickam Road, Chennai- 600029</p> | <p>10. Maharashtra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 Oricon House, 6th Floor,12K, Dubhash Marg, Fort, Mumbai-400001<br/>Tel:022-2855859/5860<br/>Fax: 022-2855861<br/>E-mail: <a href="mailto:maharashtrachamber@vsnl.com">maharashtrachamber@vsnl.com</a></p> |
| <p>11. Maharatta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ies,</p>   | <p>12. Memon Chamber of Commerce Patharia Palace, 75, Mohamedali Road,</p>   |

- P.B.No. 525, Tilak Road,  
Pune-411002.  
Tel:020-4440371/0472  
Fax:020-4447902  
E-mail: [mccipune@vsnl.com](mailto:mccipune@vsnl.com)
- Mumbai-400003.  
Tel:022-3421109  
Fax:022-3413661
13. Marathwada Industries Association,  
Bajaj Bhavan, P-2, MIDC, Station Road  
Aurangabad-431005  
Tel (0240)-324509/355090  
Fax (0240)333029  
E-mail: [mia-abd@satyam.net.in](mailto:mia-abd@satyam.net.in)
14. MVRDC World Trade Centre  
Centre-1, 31<sup>st</sup> floor, Cuffe Parade,  
Mumbai- 400005  
Tel:022-2184434  
Fax:022-2188385/0823  
E-mail : [wtcboim@vsnl.com](mailto:wtcboim@vsnl.com)
15. Nag-Vidarbha Chamber of Commerce  
Temple Road, Civil Lines,  
P.B.No. 33, Nagpur-440001  
[Tel:0712-522434](tel:0712-522434) Fax:0712-542422  
E-mail: [nveenag@nagpur.dot.net.in](mailto:nveenag@nagpur.dot.net.in)
16. Synthetic & Rayon Textiles Export Promotion  
Council,  
Resham Bhavan, 78 Veer Nariman Road,  
Mumbai-400020. [Tel:022-2048797/8690](tel:022-2048797/8690)  
Fax:2048358 E-mail: [SRTEPC@vsnl.com](mailto:SRTEPC@vsnl.com)
17. The All India Association of Industries,  
98, Mittal Chamber,  
Nariman Point,  
Mumbai – 400021  
Tel. No: 202 3390  
Fax: 022-2660992  
E-mail: [aijai@qiasbm01.vsnl.net.in](mailto:aijai@qiasbm01.vsnl.net.in)
18. The Solvent Extractors Association Of India,  
142, Jolly Maker Chambers No.2  
14<sup>th</sup> floor, 225, Nariman Point,  
Mumbai-400021  
Tel: 022-2021475  
Fax: 022-2021692  
E-mail: [solvent@vsnl.com](mailto:solvent@vsnl.com)
19. Indo German Chamber of Commerce  
Maker Tower "E" , 1st Floor, Cuffee  
Parade, Mumbai – 400 005  
and its branches as under:  
a) German House, 2 Nyaya  
Marg, Chanakya Puri, New Delhi –  
110021  
Tel:011-2687721/26111730  
Fax: 011-26118664  
b) 3A, Gurusaday Road, 1st Floor,  
Block A, Kolkata 700019  
Tel: 033-2247147/ 22405645,  
Fax: 033-2476165  
c) 177, G.N.Chetty Road, T.N.Nagar,  
Chennai-600017  
Tel: 044-28211835  
Fax: 044-28211837  
d) 403, Shah Sultan, P.O Box 144,
20. Bombay Industries Association  
Sahakar Bhavan, Narayan Nagar,  
Kurla Ind. Est. L.B.S. Marg,  
Ghatkopar (West),  
Mumbai – 400 086  
Tel. 022 – 2516 9663 / 2512 9580  
Fax: 022 – 2516 5303  
E-mail: [biaoffice@biaindia.org](mailto:biaoffice@biaindia.org)  
Website: [www.biaindia.org](http://www.biaindia.org)

- Cunningham Road, Bangalore-  
560059  
Tel: 080-22265650  
Fax: 080-22023797
- 21 Indian Oilseeds and Produce Export Promotion Council  
78-79, Bajaj Bhavan, Nariman Point, Mumbai-400021.  
Tel (91-22)2202 3225/2202 9295  
FAX : ( 91-22) 2202 9236  
E-mail: [info@iopea.org](mailto:info@iopea.org)  
Website:[www.iopea.org](http://www.iopea.org)
- 22 [M's Vidarbha Industries Association](#)  
[1 Floor, Udyog Bhawan, Civil Lines, Nagpur-440 001](#)  
[E-mail: via\\_ngp2sancharnet.in](mailto:via_ngp2sancharnet.in)  
[Web site: www.via-india.com](http://www.via-india.com)  
[Phone no: 0712 256 1211](tel:07122561211)  
[Fax: 0712 254 5190](tel:07122545190)
- 23 [The Cloth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902, Mahalaxmi Chambers](#)  
[22, Bhulabhai Desai Road](#)  
[Mumbai-400026.](#)  
[Tel.No.2353 8245, 2352 5168, 2353 8986](tel:0235382452352516823538986)  
[Fax: 91-22-2351 5908](tel:0912223515908)  
[E-Mail: cmait@hathway.com](mailto:cmait@hathway.com)  
[Website:www.cmait.info](http://www.cmait.info)
- 24 Decc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 Agriculture Pune  
305, Gulmohar Centre Point, Near Viman Nagar Junction, S. No. 34/A-5, Vadgaon Sheri, Nagar Road, Pune – 411014.  
Tel/Fax: 91-20-56029325, 56246798  
E-mail: [nria@vsnl.net](mailto:nria@vsnl.net)
- 25 Raigad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501 Kukreja Centre, Sector-11, Plot No.13, CBD Belapur, Navi Mumbai-400614  
Phone: 022-309953547 / 30997391  
Fax: 022-27579805  
E-mail: [mqmt@raigadchamber.com](mailto:mqmt@raigadchamber.com)  
Website: [www.raigadchamber.com](http://www.raigadchamber.com)
- 26 [Cotton Association of India](#)  
[2nd Floor, Cotton Exchange Bldg., Cotton Green](#)  
[Mumbai-400033](#)  
[Phone:022-23704401/02/03.23729438](tel:022-23704401020323729438)  
[Fax:022-23700337](tel:022-23700337)  
[E-mail:eicai@bom8.vsnl.net.in](mailto:eicai@bom8.vsnl.net.in)  
[Website:www.eicaindia.org](http://www.eicaindia.org)
- 27 Thane Small Scale Industries Association  
TSSIA House, Plot No. P-26  
Road 16/T, Wagle Industrial Estate  
Thane-400604.  
Phone 022-25820429, 25822493  
Fax-25823303  
E-mail:[tssia@bom3.vsnl.net.in](mailto:tssia@bom3.vsnl.net.in)  
Website:<http://www.tssia.com>
- 28 M's ASMECHEM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OF INDIA  
Readymoney Terrace, 167,  
Dr. Annie Besant Road, Worli,  
Mumbai – 400018,  
Tel.Nos.022-24938825/ 61233500,  
Fax No. : 022 2493 8826,  
Email:[asmechem@uniphos.com](mailto:asmechem@uniphos.com), [gandhep@uniphos.com](mailto:gandhep@uniphos.com)

**MANIPUR**

1. Associated Manipur Chamber of Commerce  
Imphal: 795001  
Tel: 221229
2. Federation of All Manipur Importers/Exporters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Indo-Myanmar Border Traders Union (IMBTU)  
Nagamapal Laimayum Leirak, Imphal -1  
E-mail: [imbtum@yahoo.com](mailto:imbtum@yahoo.com)
3. Border Trade Chamber of Commerce,  
Ward No.IV,Moreh,  
Chandel District,Manipur  
Contact person:Mr K.B.Subramaniam,  
Public Relation Secretary,  
[subramanichambermoreh@gmail.com](mailto:subramanichambermoreh@gmail.com)  
Mobile No. 09862064276

**MEGHALAYA**

1. Meghalaya Exporters chamber of Commerce  
Mongrim Hills, Opp. Nagaland House  
Shillong- 7903003
2. Meghalaya Mineral Exporters Chamber of Commerce  
Honeywood upper new colony, Iaitumkhrah,  
Shillong-793003
3. Meghalaya International Exporters Chamber of Commerce  
Dawki, Jaintia Hills
4. North East Federation on International Trade  
Wallang House, Three Pines colony,  
Laban, Shillong- 793004  
Tel: 0364-504387  
Fax: 0364- 505397  
E-mail: [neft@nehne.com](mailto:neft@nehne.com)

**PUDUCHERRY**

1. Chambre De Commerce  
1, Rue Suffren, P.B.No.39,  
Pondicherry - 605001  
Tel: 338615

**PUNJAB**

- |   |   |
|---|---|
| <p>1. Chamber of Industrial &amp; Commercial Undertaking,<br/>Gill road,<br/>Ludhiana – 141 003<br/>Tel:0161-530551/540551<br/>Fax:0161-530551</p>  | <p>2. Federation of Punjab Small Industries Association,<br/>Punjab Trade Centre Complex,<br/>Near State Bank of India, Miller Ganj,<br/>Ludhiana- 141 003<br/>Tel: 0161-532302<br/>Fax: 0161-671301</p>  |
| <p>3. Punjab Small Industries &amp; Export Corporation<br/>Sector 17, Chandigarh</p>  | <p>4. Northern India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20B, Textile Colony, Ludhiana – 141 003<br/>Tel: 0161 – 661819 / 609419<br/>Fax: 0161 – 661817<br/>E-mail: <a href="mailto:arvindforge@satyam.net.in">arvindforge@satyam.net.in</a></p> |
| <p>5. Apex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 (Punjab)<br/>Room No.212, 2<sup>nd</sup> Floor,<br/>Savitri Complex,<br/>Post Bag No.740, G.T. Road,<br/>Ludhiana – 141 003<br/>Tel: 0161-254 2749<br/>Fax: 0161-253 1797</p> |   |

#### RAJASTHAN

- |   |  |
|---|--|
| <p>1. Rajasthan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Rajasthan Chamber Bhawan,<br/>M.I.Road,<br/>Jaipur-302003<br/>Tel: 0141-565163/569899<br/>Fax: 0141-562610<br/>E-mail: <a href="mailto:raichem@ip1.net.in">raichem@ip1.net.in</a></p> | <p>2. Bhiwadi Manufacturer's Association<br/>S-56, BMA House, Industrial Area<br/>Bhiwadi-301019, Distt. Alwar<br/>Tel: 01493 – 21134/23800<br/>Fax: 21416/20228<br/>E-mail: <a href="mailto:bmalihu@ndb.vsnl.net.in">bmalihu@ndb.vsnl.net.in</a></p>  |
| <p>3. Marwar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5-Haider Building, Sojati Gate<br/>Jodhpur- 342001<br/>Tel: 0291-431157<br/>E-mail: <a href="mailto:marwar@datainfosys.net">marwar@datainfosys.net</a></p>                                | <p>4. M/s Federation of Rajasthan trade and Industry,<br/>302, Coral castle, subhash Marg,<br/>C-Scheme, Jaipur-302001<br/>Tel : 0141-2220207 Telefax : 0141 2221206<br/>Email : <a href="mailto:forti@forti-india.com">forti@forti-india.com</a>;<br/><a href="mailto:fortiindia@yahoo.com">fortiindia@yahoo.com</a><br/>Website : <a href="http://www.forti-india.com">www.forti-india.com</a></p> |

#### TAMILNADU

- |   |                                      |
|---|--------------------------------------|
| <p>1. All India Skin &amp; Hide Tanners &amp;</p> | <p>2. Andhra Chamber of Commerce</p> |
|---|--------------------------------------|

- Merchants Association,  
"Leather Centre",  
53, Raja Muthiah Road  
Periamet,  
Chennai -600003.  
Tel: 044-5389945/5274  
Fax: 044-5365292  
E-mail: [aishtma@vsnl.com](mailto:aishtma@vsnl.com)
- New No.23, Third Cross Street,  
West C.I.T. Nagar, Nandanam,  
Chennai – 600035.  
  
Tel:044-24315277-79  
e-mail:[andhrachamber@vsnl.net](mailto:andhrachamber@vsnl.net)
3. Hindustan Chamber of Commerce,  
Hindustan Chamber Building,  
15, Kondi Chetty Street,  
Madras-600001.  
Tel:044-5383134/6394
4.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hamber Tower, 8/732, Avanashi Road,  
Coimbatore-641018  
Tel:0422-214000/1,  
Fax: 5368063  
E-mail: [icci2nd3@vsnl.net.in](mailto:icci2nd3@vsnl.net.in)
5. The Madras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arumuttu Centre, 1st Floor,  
Dare House, North Beach Road,  
434, Annasalai, Nandanam,  
Chennai-600035.
6. The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NO.586, North Usman Road,  
2nd Floor, T.Nagar,  
Chennai-600108.  
Tel: 04408229113
7. Salem Dharnapuri Chamber of Commerce  
B-7, Fairlands  
Salem-636016  
Tel: 0427-447473/448466
8. The Tamil Chamber of Commerce  
\*174, Thambu Chetty Street,  
P.O.Box.No. 1661  
Chennai-600001.  
Tel: 044-5231930/5228419
9. Tamilnadu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4th Floor,  
178-B, Kamaraja Salai,  
Madurai-625009.  
Tel: 0452-626751/52  
Fax:0452-626750  
E-mail: [chamber@nd2.vsnl.net.in](mailto:chamber@nd2.vsnl.net.in)
10. Indo-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ies,  
Arjay Apex Centre, 3rd Floor,  
24, College Road,  
Nungambakkam, Chennai – 600 006  
Tel:044-8213231 Fax: 8225603  
E-mail: [indonut@vsnl.net.in](mailto:indonut@vsnl.net.in)
11. The Southern Indi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dian Chambers Building, P.B. No  
1208, Esplanade  
Chennai 600108.
12. Tirupur Exporters Association  
62, Appachi Nagar Main Road, Post Box No. 508, Tirupur-  
641607 Tel: 0421-2220500, 2220606  
Fax: 0421-2220505  
E-Mail: [teapri@md4.vsnl.net.in](mailto:teapri@md4.vsnl.net.in) / [teassn@eth.net](mailto:teassn@eth.net)
13. Ind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84-B, South Raja Street,  
Tuticorin – 628 001  
Tel. 0461 – 233 7405
14. [The Tirupu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47, Nehru street](#)  
[Tirupur-641 601](#)  
[Tamil Nadu](#)  
Tel: 0421-2201371, 2201372  
Fax: 0421-2201518

Fax: 0461-233 7405  
Email: [icci@sancharmet.in](mailto:icci@sancharmet.in)

Website: [www.tripurchamber.com](http://www.tripurchamber.com)  
e-mail: [admin@tripurchamber.com](mailto:admin@tripurchamber.com)

### TRIPURA

- |   |  |
|---|--|
| <p>1. Tripura Exporters-Importers Chamber of Commerce<br/>Kamarpukar Par, A.A.Road<br/>P.O.Agartala College<br/>Agartala (West) Pin- 799004</p> | <p>2. Purbachal Exim Chamber of Commerce<br/>Ichai Sonapur Dharm Nagar,<br/>North Tripura<br/>Tel:03822-20851<br/>E-mail: <a href="mailto:purbachal-com@rediffmail.com">purbachal-com@rediffmail.com</a></p> |
|---|--|

### UTTAR PRADESH/UTTARAKHAND

- |   |  |
|---|--|
| <p>1. Eastern U.P. Chambers of Commerce &amp; Industry<br/>29/27/1, C.Y.Chintamani Road,<br/>Darbhanga Colony,<br/>Allahabad-211001.<br/>Tel:0532-40758<br/>Fax: 0532-461812<br/>E-mail: <a href="mailto:adarbari@inda.vsnl.net.in">adarbari@inda.vsnl.net.in</a></p> | <p>2. Merchants Chamber of Uttar Pradesh,<br/>14/76, Civil Lines,<br/>Kanpur-208001<br/>Tel: 0512-291306<br/>Fax: 0512-210684<br/>E-mail: <a href="mailto:mercham@bol.net.in">mercham@bol.net.in</a></p>   |
| <p>3. Upper India Chamber of commerce,<br/>14/113, Civil Lines, P.B.No. 63,<br/>Kanpur-208001<br/>Tel: 0512-210684/543905<br/>Fax: 0512-210684</p>  | <p>4. Eastern UP Exporter's Association,<br/>B-2, Guru Kripa Colony,<br/>P.O.Box No.2040,<br/>Nadesar,<br/>Varanasi-221002<br/>Tel: 0542-345913<br/>E-mail: <a href="mailto:eupea@satyam.net.in">eupea@satyam.net.in</a></p>   |
| <p>5. Assistant Director (Handicrafts)<br/>Office of the Development<br/>Commissioner (Handicrafts)<br/>12/2189,near Darpan Cinema, Ambala<br/>road,<br/>Saharanpur-247001<br/>Tel:648530</p>   | <p>6. Associated Chamber of Commerce and<br/>Industry of Uttar Pradesh,<br/>3/465, Vishal Khand, P.O.Box.No.17<br/>Gomti Nagar, Lucknow – 226 010<br/>Tel.No: 301956-57<br/>Fax No: 301958<br/>E-mail: <a href="mailto:asochmup@lw1_sanchar.net.in">asochmup@lw1_sanchar.net.in</a> /<br/><a href="mailto:info@asochamup.org">info@asochamup.org</a></p> |
| <p>7. <a href="http://www.iiaindia.org">Indian Industries Association</a><br/>II A Bhawan, Vibhuti Khand,<br/>Phase-II, Gomati Nagar,<br/>Lucknow-226 010<br/>E-mail: <a href="mailto:iiaindia@sancharmet.in">iiaindia@sancharmet.in</a></p>                          |  |

Website: [www.indian-industries.org](http://www.indian-industries.org)  
 Phone: 91-522-2720090/2004350/3104257  
 Fax: 91-522-2720097

#### WEST BENGAL

- |   |  |
|---|--|
| <p>1. Bengal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         P.B.No.280, Royal Exchange,<br/>         6, Netaji Subhash Road<br/>         Kolkatta-700001<br/>         Tel:033-2203711/33146<br/>         Fax: 033-2201289<br/>         E-mail: <a href="mailto:benchem@cal3.vsnl.net.in">benchem@cal3.vsnl.net.in</a></p> | <p>2. Bengal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         23, R.N.Mukherjee Road,<br/>         Kolkatta-700001<br/>         Tel:033-2482951<br/>         Fax: 033-2487058/0387<br/>         E-mail: <a href="mailto:bncci@bncci.com">bncci@bncci.com</a></p>   |
| <p>3. Development Commissioner<br/>         Falta EPZ,<br/>         2nd MSO Building, Room No. 4,<br/>         Nizam Place, 234/4, AJC Bose Road,<br/>         Kolkatta</p>   | <p>4. Federation of Biri,<br/>         Biri Leaves &amp; Tobacco Merchants,<br/>         1, Rupchand Roy Street,<br/>         Kolkatta-700001<br/>         Tel:033-2384088</p>   |
| <p>5. Indian Chamber of Commerce<br/>         4, India Exchange Place<br/>         Kolkatta-700001<br/>         Tel: 033-2203242-44<br/>         Fax: 033-2204790<br/>         E-mail: <a href="mailto:icccal@qiascl01.vsnl.net.in">icccal@qiascl01.vsnl.net.in</a></p>   | <p>6. Oriental Chamber of Commerce<br/>         6A, Dr.Rajendra Prasad Sarani,<br/>         Kolkatta-700001.<br/>         Tel:033-2203609/2120<br/>         Fax:033-2203609</p>  |
| <p>7. Bharat Chamber of Commerce<br/>         9, Park Mansions, 2nd Floor,57A<br/>         Park Street,<br/>         Kolkata-16<br/>         Tel:033-2299591/9608<br/>         Fax:033-2204947<br/>         E-mail: <a href="mailto:bcc@cal2.vsnl.net.in">bcc@cal2.vsnl.net.in</a></p>                                      | <p>8. MCC Chamber of Commerce &amp; Industry<br/>         15-B, Hemanta Basu Sarani,<br/>         Kolkatta-1<br/>         Tel:033-2481502/6329/5912<br/>         Fax:033-2488657<br/>         E-mail: <a href="mailto:mercham@cal.vsnl.net.in">mercham@cal.vsnl.net.in</a></p>   |
| <p>9. Calcutta Chamber of Commerce<br/>         18-H, Park Street, Stephen Court,<br/>         Kolkata-700071<br/>         Tel: 033-2290758/2298236<br/>         Fax: 033-2298961<br/>         E-mail: <a href="mailto:calchamb@cal3.vsnl.net.in">calchamb@cal3.vsnl.net.in</a></p>   | <p>10. Malda Merchants' Chamber of Commerce<br/>         'Baniyya Bhavan'<br/>         Sankopara, Maheshmati<br/>         Malda-732101<br/>         Tel. No.: 03512-266028<br/>         Fax: 266174<br/>         E-Mail:<br/> <a href="mailto:maldamerchantschamber@rediffmail.com">maldamerchantschamber@rediffmail.com</a></p> |

**FOR EXPORT OF TEA ONLY****ANDHRA PRADESH**

- 1 M/s. Vimta Labs Ltd.  
142, IDA, Phase-II  
Cherlapally  
Hyderabad-500051.  
Tel. No.91-40-2726 4141, 4444  
Fax: 91-40-2726 3657  
E-Mail: vimtahq@vimta .com  
URL: www.vimta.com

**TAMILNADU**

- 2 M/s. Upasi Tea Research Foundation  
Nirar Dam PO  
Valparai-642127  
Coimbatore Distt.  
Tamilnadu.  
Tel. No.: 04253-235301, 235303  
Fax: +91-04253-235302  
E-mail: upasitri@satyammail.com  
Grams: UPASI, Valparai

**MAHARASHTRA**

- 3 M/s. Geo-Chem Laboratories (P) Ltd.  
294, Shahid Bhagat Singh Road  
Fort  
Mumbai-400001.  
Tel.No.(+91-22) 5638 3838  
Fax: (+91-22) 5638 3800  
E-Mail: mumbai@geochemgroup.com  
Telex: 011-83498 GEOC IN  
Cable: "GEOCHEMSUP"
- 4 M/s. Stewart Surveyors & Assayers Pvt. Ltd.  
3, Victoria Building, 27, S.A. Brelvi Road  
Fort, Mumbai-400001.  
Tel. Nos: 91-22-2266 0130, 2266 0069, 2265  
1887  
Fax: 91-22-2266 0427  
E-Mail: stewart@vsnl.com

Website: [www.stewartindia.com](http://www.stewartindia.com)

**DELHI**

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3<sup>rd</sup> Floor, NDYMCA Cultural Centre Building,  
1 Jai Singh Road,  
New Delhi – 110001  
Tel.No.011-23365540, 23748188, 23748189  
Fax: 011-23748024  
E-mail: [eic@eicindia.org](mailto:eic@eicindia.org)  
Website: [www.eicindia.org](http://www.eicindia.org)

**WEST BENGAL**

- 5 M/s. BSI Inspectorate India Pvt. Ltd.  
608, Central Plaza  
2/6, Sarat Bose Road  
Kolkata-700020.  
Tel No. +91 33 2485 2902/8823/8824/8825  
Fax +91 33 2485 8826/8827  
E-mail: [Calhq@bsi-inspectorate.co.in](mailto:Calhq@bsi-inspectorate.co.in)  
Website: [www.bsi-global.com/inspectorate](http://www.bsi-global.com/inspectorate)
- 6 M/s. Cargo Inspectors & Superintendence Co.  
Pvt. Ltd.  
P-165, C.I.T. Road  
Kolkata-700010  
Tel.No. (033) 2350-7001/2351-0050/2353-8403  
Fax: (033) 2373-3231, 2351-0215  
E-Mail: [cisco@cal3.vsnl.net.in](mailto:cisco@cal3.vsnl.net.in)/ [cisco@vsnl.com](mailto:cisco@vsnl.com)
- 7 M/s. Tea Research Association  
113, Park Street, 9th Floor  
Kolkata-700016.  
Tel.No.:2229-1815, 2229-3813 Fax: 91-33-  
2229 4271E-mail: [tearesearch@sify.com](mailto:tearesearch@sify.com)

## 8 인도의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양식

**Annexure I to Appendix – 2E**  
**Application Form For Enlistment Under Appendix 2E**  
**to Issue Certificate of Origin (Non-Preferential)**

1. Application for (please tick)

(A) Enlistment		(B) Modification in particulars of existing Enlisted Agency	
----------------	--	---	--

2.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 .....

(Registered Office in : .....

case of limited companies, : .....

and Head Office : .....

for others )

PIN 000000

3. Address of all the Branches/ Divisions/ Units/ 1. .... 3. ....  
 located in India if they also to be enlisted. PIN 000000 PIN 000000

2. .... 4. ....  
 PIN 000000 PIN 000000

4. In case the application is for modification in existing enlisted agency, give:

Nature of modification required : .....

and details thereof : .....

(In case the application is for modification, information in S.No.2 and 3 above will be as per pre.modified status)

5. Particulars of Fees Paid:

(i) Bank Receipt/Demand Draft No. : .....

(ii) Amount(in Rs.) : .....

(In. figures)

(in words) : .....

(iii) Name of Bank & Branch of Issue : .....

6.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 .....

Issuing authority : .....

## 9 인도의 수입금지 품목

Total Number of Exim Codes: 60 (Updated as on 14.08.2015)

S. No.	Exim Code	Item Description	Conditions relating to the policy
1.	0207 43 00	Fatty livers, fresh or chilled	Import of 'foie gras' is Prohibited.
2.	0208 90 10	Other meat and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	0209 10 00	Of pig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4.	0209 90 00	Other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	03057100	Shark fins	Prohibited.
6.	0410 00 10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7.	0504 00 31	Guts of other animals for natural food casings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8.	0504 00 41	Guts other than for natural food casings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9.	0504 00 51	Bladders & stomachs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10.	0505 10 10	Feathers of a kind used for stuffing; down of wild bird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11.	0505 90 21	Other feather (excluding for stuffing purpose): of wild bird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12.	0505 90 31	Powder and waste of feathers or parts of feathers: of wild bird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13.	0505 90 91	Skins and other parts : Of wild bird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14.	0506 10 11	Bones, including horn-cores, crushed: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15.	0506 10 21	Bone grist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16.	0506 10 31	Ossein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17.	0506 10 41	Bones, horn cones & parts thereof, not crushed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18.	0506 90 11	Bone meal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19.	0506 90 91	Other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20.	0507 10 10	Ivory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21.	0507 10 20	Ivory powder and waste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22.	0510 00 91	Ambergris, castoreum, civet and musk; cantharides; bile, whether or not dried; glands of wild ani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23.	0511 91 10	Fish nai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24.	0511 91 20	Fish tai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25.	0511 91 30	Other fish waste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26.	0511 99 21	Sinews and tendons Of wild life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27.	0511 99 92	Bovine embryo - Of wild life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28.	1501 10 10	Lard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29.	1501 20 00	Other pig fat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0.	1501 90 00	Other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1.	1502 10 10	Mutton Tallow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2.	1502 10 90	Other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3.	1502 90 10	Unrendered fat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4.	1502 90 20	Rendered fats or solvent extraction fact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5.	1502 90 90	Other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6.	1502 00 30	Rendered or solvent extraction fat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7.	1502 00 90	Other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8.	1503 00 00	Lard Stearin, Lard Oil, Oleostearin, Oleo-Oil and Tallow Oil, not emulsified or mixed or otherwise prepared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39.	1504 10 99	Other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r marine mammal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40.	1504 20 30	Sperm Oil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41.	1504 20 90	Other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42.	1504 30 00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 mammal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43.	1506 00 10	Neats Foot Oil and fats from bone or waste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44.	1506 00 90	Other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45.	1516 10 00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46.	1517 10 10	Margarine Of Animal Origin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47.	1517 90 30	Imitation lard of animal origin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48.	1518 00 40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boiled, oxidised, dehydrated, sulphurised, blown, polymerised by heat in Vacuum or in inert gas or otherwise chemically modifi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1516 : in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Other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49.	1522 00 10	Degra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0.	1522 00 20	Soap Stock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1.	1522 00 90	Other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2.	3507 10 11	Microbial rennet: Animal rennet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3.	3507 10 19	Other enzymes; prepared enzym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4.	3507 10 91	Animal rennet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5.	3507 10 99	Other animal rennet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6.	4302 19 40	Tiger-Cat skins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7.	4303 10 1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Of wild animals covered under Wild Life Protection Act,1972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8.	4303 90 10	other articles of fur skin Of wild animals covered under Wild Life Protection Act,1972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59.	8517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heading 8443, 8525, 8527 or 8528.	(i) Import of 'Mobile Handsets' (classified under ITC (HS) Code '8517') without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 No. or with all Zeroes IMEI is prohibited. (ii) Import of 'CDMA mobile phones' (classified under ITC (HS) Code '8517') without Electronic Serial Number (ESN) / Mobile Equipment Identifier (MEID) or with all Zeroes as ESN / MEID is prohibited.
60.	9601 10 00	Worked ivory and articles of ivory	Not permitted to be imported

**Country Specific Prohibition:**

01.	0401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The prohibition on import of milk and milk products (including chocolates and chocolate products and candies/ confectionary/ food preparations with milk or milk solids as an ingredient) from China is effective from 24.6.2015 till 23.6.2016 or until further orders.
02.	0402	milk and cream,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3.	0403	buttermilk, curdled milk and cream, yogurt, kephir and other fermented or acidified milk and cream,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or containing added fruit, nuts or cocoa	
04.	0405	butter and other fa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dairy spreads	
05.	0406	cheese and curd	
06.	1704	sugar confectionery (including white chocolate), not containing cocoa	
07.	1901	malt extract; food preparations of flour, groats, meal, starch or malt extract, not containing cocoa or containing less than 4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not containing cocoa or containing less than 5%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8.	1905	bread, pastry, cakes, biscuits and other bakers wares,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 communion wafers, empty cachets of a kind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 sealing	

## 10 AEO 공인기준 중 안전(보안)기준 상세<sup>242)</sup>

-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적절하게 식별·인가된 사람만이 화물에 접근할 수 있음
  - 화물은 항만의 감시를 받거나 안전하게 제한된 구역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보관되어야 함
  - 모든 컨테이너 인장은 고도의 보안을 위해 현재 적용중인 PAS/ISO 17712 표준을 충족해야 함
    - 해상화물을 제외하고, 항공화물 또는 택배 수송 물품에 대해 PAS/ ISO 17712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표준과 호환되는 국제 인장이 사용되어야 함
  - 컨테이너 인장의 완전성을 검사하고 인장의 고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보유해야 함
  - 지정된 인원만이 컨테이너 봉인을 해제하고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보호해야 함
  - 사용한 컨테이너 유형에 적합한 경우, 전면 벽, 좌측면, 우측면, 바닥, 천장 또는 지붕, 내·외부 문, 외벽·하부 구조 등 7가지의 검사를 이행해야 함(권장사항)
  - 비인가가 접근이나 조작이 발견되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와 절차를 규정해야 함
  - 감독할 수 없는 지역에 물품을 배송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함
  - 물품을 일정 구역에 일관된 표시 또는 보관해야 하며 운송 서류, 구매·판매 주문서 및 관세 서류에 대해 수치화 또는 집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해야 함
  - 불일치(오류) 또는 불규칙성을 시정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가 존재해야 함
  
- 화물처리절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국제물류체인에서 화물의 운송, 취급 및 보관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무결점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함
  - 화물 통관에 사용된 모든 문서는 이해하기 쉽고, 완전하며, 정확하고, 뒤바뀐에 대해 보호되고, 잘못된 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문서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함
  - 사업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정보는 세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확하고 적시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화물의 선하증권 또는 상업송장에 대한 다음의 절차를 마련해야 함

242) 본 <부록 VII>은 CBEC,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Customs Manual 2015*의 pp.209~233의 일부 내용을 연구자가 번역 및 의역한 것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견해와 무관함

- 수입화물은 선하증권에 명시된 정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수출입 화물의 중량, 라벨, 표시 및 개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수출입 화물은 구매 주문서와 비교하여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화물을 인도하거나 수령하는 운송인은 화물을 인도 또는 수령하기 전에 확실히 확인해야 함
- 모든 과부족 및 중요한 불일치 사항은 해결되어야 하며 이유를 적절히 조사하여야 함

□ 운송절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가능한 하나의 국제물류 체인망의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 수단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가능한 하나의 화물 운송에 사용된 모든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훈련되어 있음을 보장해야 함
- 운송업자는 실제 발생한 사고 또는 의심스러운 사건을 발견시 AEO 프로그램 팀 및 세관의 지정된 보안 부서에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함
- 운송절차 중 불법적인 물품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장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함
- 운송인은 화물을 수출입 지점으로 운송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동안 추적(tracking) 또는 내부통제시스템 항목 중 모니터링 활동 기록을 활용하여 운송의 무결점을 유지하여야 함
- 사전 결정된 경로가 발송자에 의해 확인되고, 운송절차는 문서화 및 적재 시점 또는 트레일러(trailer) 픽업과 목적지 사이의 배송 시간의 확인과 무작위로 배송 경로를 점검하도록 구성해야 함
- 운송인은 날씨, 교통 상황 또는 경로 변경으로 인해 운송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발송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 운송 추적시스템 및 모니터링 절차를 준수하고 시행하기 위해 운송인 관리를 문서화하며 정기적으로 무작위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함

□ 건물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음

- 건물은 불법침입으로부터 안전해야 함
- 내·외부 창문, 출입문 및 울타리는 잠금 장치를 하거나 대체 접근 감시 또는 제어 조치로 고정해야 함

- 관리 또는 보안 요원은 자물쇠 및 열쇠 불출을 통제해야 함
  - 출입구, 화물 취급 및 보관 구역, 울타리(펜스) 라인 및 주차 구역을 위해 적절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해야 함
  - 제한 구역에 접근하는 차량은 승인된 지역에 주차되어야 하며, 요청시 세관에서 제공한 면허번호가 있어야 하는 등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하는 게이트는 감시 또는 통제되어야 함
  - 확인 및 인가된 사람·차량·화물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해야 함
  - 문서 또는 화물 보관 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함
  - 도난방지 또는 출입통제를 위해 적절한 보안 시스템을 보유해야 함
  - 제한구역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구조물과 시스템의 무결점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함
  - 주변 울타리(펜스)는 화물 취급 및 보관시설 주변을 둘러싸야 함
  - 국내, 국외, 고가 및 위험화물을 각각 취급하는 장소를 분리하기 위해 내부 울타리(펜스)를 사용해야 함
  - 모든 울타리(펜스)는 청결과 손상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함
  - 출입구의 수는 적절한 접근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함
  - 개인 승용차는 화물 취급 및 보관 구역 내에 또는 인접하여 주차할 수 없음
- 인적자원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임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과거에 보안관련 세관 또는 형사 범죄로 처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고도의 안전·보안직을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직원의 전반적인 배경을 점검해야 함
  - 모든 임직원이 신분증을 지참하게 하여 근로자인지 여부와 그들의 소속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출입구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과 방문객 기록과 같은 절차를 두어 출입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식별, 기록 및 처리하여야 함
  - 퇴사한 임직원에 대한 정보 및 건물출입기능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거래처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음
- AEO 신청자는 사업 거래처 선정시 안전 및 보안기준에 결함이 있는지 탐지하고 이

를 정정할 수 있는 서면 검증 절차를 갖추어야 함

- AEO 신청자는 AEO 공인을 획득한 거래처에게서 AEO 사본을 수령해야 함
- 만약 거래처가 AEO 비공인자라면 AEO 공인과 동등한 보안기준을 준수한다는 서면확인서로써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수령해야 함
  - 계약 서류
  - AEO 신청자가 작성한 자기 평가 보안 설문지(self assessment security questionnaire)
  - 거래처에서 AEO 공인에 상응하는 보안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 진술서
  - 보안기준 준수를 증명하는 거래처 임원의 서면확인서
  - 거래처가 외국 세관에서 AEO와 동등한 화물관리 안전 프로그램에 가입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공인을 입증하는 서류
- AEO 신청자는 거래처의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시설물의 위험에 기초하여 정기적 검토를 수행하고 거래처는 AEO 신청자가 요구하는 안전·보안기준을 준수해야 함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인도 편 -

---

발 행 2017년 12월 29일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 쇄 (주)정인애드  
I S B N 978-89-8191-912-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